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



대한근대5종연맹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5 정기이사회 결과보고

1. 관련 : 대한근대5종연맹-659호(2025. 3. 5.)
2. 위와 관련, 연맹 『이사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개요

회의명	일정	장소	인원
2025 정기이사회	2025. 3. 6. 11:00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24인(참 14, 미 10)

□ 내용

구분	안건	결과
보고 사항	1. 전차 회의 결과	원안 접수
	2. 자산(생물, 장비 등) 처분 보고	원안 접수
심의 사항	1. 2024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원안 승인
	2.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원안 승인
	3.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안) 승인	원안 승인
	4. 각종 규정 제·개정 승인(안)	원안 승인
	5. 2024 정기유공 포상 대상 선정(안)	원안 승인
	6. 근대5종 명예의 전당 헌액 영웅 선정(안)	원안 승인
	7. 2025 전국대회 유치시·도 선정(안)	원안 승인
	8. 경기위원회 임기 임시 연장 승인(안)	원안 승인
	9. 2025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안)	원안 승인

□ 주문사항

- 국제대회 종료 후, 경기력 분석을 위한 결과보고회 자리를 마련

□ 전 결 : 상임부회장 인사명령(2025. 3. 7.)으로 인해 사무처장 대결

붙임 안건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대리

이원재

부장

여상경

사무처장

전결 03/10
강태영

협조자

시행 대한근대5종연맹-710 (2025.03.10.) 접수 ()

우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층 / <http://www.pentathlon.or.kr/>

전화 02)423-3056 /전송 02)416-8091 / how0461@gmail.com / 비공개(1,5,6,7)

2025년 정기이사회 안건

2025. 3. 6.(목)



대한근대5종연맹

- 목 차 -

I. 보고사항

1. 전차 회의 결과 1
2. 자산(생물, 장비 등) 처분 보고 1

II. 심의사항

1.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3
2.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9
3.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안) 승인 15
4. 각종 규정 제·개정 승인(안) 16
5. 2024년 정기유공 포상 대상 선정(안) 17
6. 근대5종 명예의 전당 헌액 영웅 선정(안) 18
7. 2025년 전국대회 유치시·도 선정(안) 20
8. 경기위원회 임기 임시 연장 승인(안) 21
9.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안) 22

III. 기타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보고_제1호	2025. 3. 6.	운 영

1. 전차 회의 결과

□ 제3차 임시이사회

- (일 시) 2025. 2.11.(화) / 14:00
- (방 법)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인원) 24인중 15인 참석
- (부의안건) 보고사항 1건, 심의사항 1건
- (회의결과)
 - (보고사항) 전차 회의 결과(원안접수)
 - (심의사항)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 선발(안)(원안승인)
 - (기타사항) 신규 연맹 로고 제작 시, 시·도연맹 로고 제작 요청
 ☞ 2025 정기이사회에서 로고 승인 후, 제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보고_제2호	2025. 3. 6.	운 영

2. 자산(생물, 장비 등) 처분 보고

□ 배 경

2024 파리올림픽 이후, 근대5종 승마 경기가 장애물 경기로 대체되어 연맹 자산(생물, 장비 등)을 입찰(유찰 등) 및 수의 계약을 통해 처분 완료

□ 자산(생물, 장비 등) 처분

- (자 산) 생물(마필) 13두, 장비 등(소대, 횡목 등)
- (방 법) 개별 입찰(유찰 등) 및 수의 계약
- (금 액)

(금액단위 : 원)

계	개별 입찰	수의 계약	비 고
138,410,000	18,410,000	120,000,000	

○ 판매내역

- (개별입찰) 2025. 1. 7. ~ 1. 8. /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No	대 상	낙찰 물품	금 액(원)	비 고
1	이○○	마필(카르센)	2,610,000	
2	김해승마클럽 (양재동)	장비 등(알루미늄소대, 젓가락소대C, 횡목A,B,C)	11,700,000	
3	진○○	목재소대, 젓가락소대D, 차단기, 번호판	3,280,000	
4	권○○	벽돌 장애물	820,000	
계			18,410,000	

- (수의계약) 더블유홀스랜드 / (인도일) 2025. 1. 22.

(금액단위 : 천원)

No	마 명	품 종	출 생	성 별	색 상	금 액
1	처칠	웬블러드	2005. 1. 1.	거세	청회색	9,100
2	체키	웬블러드	2004. 1. 1.	거세	회색	9,100
3	루이스르바우	웬블러드	2005. 1. 1.	거세	적갈색	9,100
4	칼루아	웬블러드	2006. 1. 1.	암말	회색	9,100
5	촉퍼	웬블러드	2005. 1. 1.	거세	갈색	9,100
6	인터내셔널	웬블러드	2006. 1. 1.	암말	갈색	9,100
7	더블루	웬블러드	2005. 1. 1.	거세	갈색	9,100
8	시르칸	웬블러드	2011. 3.20.	거세	갈색	9,100
9	펠센스 삼페인샤워	웬블러드	2008. 4.11.	거세	청회색	9,100
10	디바엘	웬블러드	2011. 3.16.	암말	회색	9,100
11	크리스트만	웬블러드	2011. 5. 4.	거세	밤색	9,100
12	크린테라 2	웬블러드	2010. 6.16.	암말	밤색	9,100
13	트랙터 등					10,800
계						120,000

□ 국고보조금 활용 구입 마필 대금 반납 ※ 2025 하반기 반납 예정

- (반납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및 반납액) 마필구입시 기금 80% 사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마 필	판매가	반납액
생 물	디바엘	9,100	6,552
”	크리스트만	9,100	6,552
”	크린테라 2	9,100	6,552
계		27,300	19,656

심의사항	안전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1호	2025. 3. 6.	운영

1.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 첨부 1. 2024 사업결과 및 결산서)

1) 파리올림픽 및 국제대회 파견 결과

가.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 획득

- 파리올림픽 근대5종 경기
 - (일정·장소) 2024. 8. 8. ~ 8. 11. / 프랑스, 파리
 - (참가규모) 25개국 선수 72명 ※ 메달수 : 2개(남·여 개인)
 - (파견) 11명(지도자 6, 선수 4<남2, 여2>) ※ 국가별 남·여 2명
 - (결과) 여자 개인 동(성승민, 한국체대) ※ 대한민국 및 아시아 최초

- 골드프로젝트 사업
 - (기간) 2024. 1. ~ 2024. 9. / 8개월
 - (지원내역)
 - 전략 및 영상분석팀 스포츠과학 전문 인력 국제대회 파견
 - 다양한 경기와 마필 경험을 위한 승마 훈련 등

나. 국제대회 파견 결과 (금 14, 은 11, 동 5)

구분	기간	장소	금	은	동	비고
*제1차 월드컵	3.04. ~ 3.10.	이집트		1	1	여 개인 2위 혼성계주 3위
*제2차 월드컵	4.15. ~ 4.21.	튀르키예	1	1		남 개인 1위, 여 개인 2위
*제3차 월드컵	4.23. ~ 4.28.	헝가리		1		여 개인 2위
*제4차 월드컵	5.07. ~ 5.13.	불가리아				
*월드컵 결승	5.21. ~ 5.27.	튀르키예			1	혼성계주 3위
**세계선수권대회	6.05. ~ 6.15.	중국	4	2	1	남 개인 3위, 단체 2위, 계주 1위, 여 개인 1위, 단체 2위, 계주 1위, 혼성계주 1위
파리올림픽	8.08. ~ 8.11.	프랑스			1	여 개인 3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21세 이하)	6.24. ~ 6.30.	리투아니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17세 미만)	9. 9. ~ 9.16.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19세 미만)	9.21. ~ 9.27.	리투아니아	1	1		남 개인 1위, 단체2위
아시아선수권대회	9.20. ~ 9.30.	한국	8	5	1	금 8개(개인3, 단체4, 계주1) 은 5개(개인4, 단체1) 동 1개(개인1)

2) 국내대회 개최(4건), 지원(5건) 및 학교·생활체육 육성 현황

가. 국내대회 개최·지원현황

구 분	기간 및 장소	참가인원			비 고	
		'24	'23	증감		
연맹주최 (4)	제41회 회장배대회	3.14. - 3.19. (경북, 문경)	917	658	259	종목신설
	제35회 문체부장관기대회	6.13. - 6.18. (전남, 해남)	1,039	916	123	회원국초청
	제43회 전국선수권대회	7.25. - 7.31. (강원, 홍천)	802	552	250	종목신설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대회	8.22. - 8.31. (강원, 인제)	1,002	835	167	"
체육회주최 (2)	제53회 전국소년체전	5.27. - 5.29. (울산광역시)	185	169	16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0.13. - 10.19. (전남, 해남)	370	379	▼ 9	
기 타 (3)	제26회 학생연맹회장배	5. 5. - 5.10. (전남, 해남)	513	488	25	
	제11회 실업연맹회장배	5.10. - 5.14. (전남, 해남)	108	194	▼ 86	미참가팀
	제38회 체고대항	4.03. - 4.06. (경북체고)	251	238	13	
계		5,187	4,429	758		

나. 여학생스포츠교실 : 초·중·고 여학생 대상으로 실시

구 분	참여시도	교실운영	강사운용	참여학생
2024	7	18	7	6,725
2023	6	21	5	7,722
증 감	▼ 1	▼ 3	2	▼ 997

※ 대한체육회 기금 지원 감액으로 교실운영 축소, 참여학생 감소

다. 생활체육(이벤트) 대회 개최 지원

구 분	내 용	인 원
2024 고프로포레스트 레이저런	-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근대5종 레이저런 경기	총 192명 (초청 15, 남 104, 여 73)

3) 우수선수 육성 기반 조성

가. 체계적인 국가대표(국가대표 이하 포함) 육성

구 분	인 원 (지도자/선수)	훈련 계획	훈련일수	증 감
국가대표	26명 (10/16 <남 8, 여 8>)	220 일	250 일	30
후보선수	17명 (2/15 <남 8, 여 7>)	30	57	27
청소년대표	19명 (4/15 <남 8, 여 7>)	14	43	29
꿈나무선수	24명 (4/20 <남10, 여10>)	24	38	14

나. 2024 파리올림픽 대비 파트너 훈련

구 분	일 정	장 소	인 원
파트너훈련(1차)	2024. 7. 1. ~ 7. 13.	국군체육부대	54명
파트너훈련(2차)	2024. 7. 21. ~ 7. 26.		
사전훈련캠프	2024. 7. 29. ~ 8. 5.	프랑스, 파리	6명

다. 장애물 경기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 훈련 및 지도 방법 지원

○ 지도자 초청 강습회

행 사 명	일 정	장 소	인 원
2024 지도자 강습회	2024. 3. 2. ~ 3. 3.	경북, 문경	48명

○ 주요 내용

- 장애물 경기 트레이닝 및 코칭론 등
- 장애물 경기 시연 및 실습(해외 지도자 직접 보조) 등
- 2024 사업계획 공유 등

□ 경기 시설 구축 및 지원 (2.2억원)

구 분	제작 및 지원	금 액	비 고
경기 교보재 영상 제작	1식	5,830천원	외국지도자 교보재 영상
경기 시설물 구축	8 Set	70,000천원	경기규정에 의거, 제작
훈련 시설물 지원	Set(3개)/시·도당	144,920천원	16개 시·도연맹 지원

※ 2024년 연맹 주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승마 제외, 장애물경기 시행

4)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 및 지원 현황

가.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연맹 운영

- 임·직원 행정 능력 향상 교육 : 체육회 및 정부 교육 파견 강화
- 시·도연맹 및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소통 및 협력관계 강화
 - 공문,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
 - 간담회 : 행정 및 회계 업무 교육

나. 육성 지원 사업 (116 백만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액	비 고
시·도연맹지원비	16개 시·도연맹	64,000	시·도당 400만원
	제주연맹(추가)	4,000	도서지역(대회출전비: 항공료 등)
실업·학생연맹지원비	육성지원비	8,000	연맹별 400만원
	대회개최비	6,000	연맹별 300만원
연맹 주최대회출전비	초등부 육성	34,070	각 대회 15개팀, 팀당 50만원
계		116,070	

다. 초등부 대회출전 지원에 따른 참가현황 ※ 최근 5년

년도	참가현황				증 감				비 고
	남		여		남		여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팀	선수	
2024	76	210	64	151	31	82	27	80	육성 지원금 지원
2023	48	149	50	125	3	21	13	54	"
2022	45	128	37	71	10	40	13	11	"
2021	35	88	24	60	17	51	4	29	"
2020	18	37	20	31	-	-	-	-	코로나19 감소

5) 근대5종 마케팅 및 홍보 활동 현황

가. 연맹 마케팅 현황 - 공식 후원사 및 공급사

업 체	품 목	사 용 처	후원 현황	
			2024	2023
우리금융그룹	후원금	훈련 및 파견 등 사업비	150백만원	50백만원
		아시아선수권대회비	150백만원	-
(주)링 티	스포츠음료	국가대표 훈련 연맹 주최대회	50백만원 (현물)	좌 등
(주)파르마인터내셔널	변색 레즈 (선글라스)	국가대표 훈련 (국가대표 이하 포함)	50백만원 (현물)	좌 등
르 꼬 꼬	스포츠의류	"	27백만원	20백만원
계			427백만원	170백만원

나. 국가대표와 함께 하는 참여형 콘텐츠 개발, 국민 참여 유도

□ 미디어 콘텐츠 강화

구 분	평 가	비 고
유튜브	- 업로드, 구독자의 증가에 반해 조회 및 시청 감소	
SNS 등	- 콘텐츠 부족, 팔로워 증가	
국대마스터즈	- 근대5종 홍보 기여 및 성과 도출 - 연맹 마케팅 활동 대행으로 효율성 확대	
보도자료 등	- 파리올림픽 성과 및 관심을 통한 업로드 증가 - 대회 및 소속 보도 시의성 부족으로 보도율 저조	
방 송	- 근대5종 방송 노출 증가 - 이례적인 올림픽 실시간 중계	

다. 이벤트 행사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근대5종 레이저런 챌린지	‘을지대학교’ 을지축전내 레이저런 홍보 부스 (참가자 : 4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50명 증가)	현장 이벤트
2024 파리올림픽 응원이벤트	2024 파리올림픽 응원 및 직관 이벤트 (참가자 : 58명, 조회수 5897, 반응 257)	SNS 이벤트

6) 결산(안) ※ 별첨 2 : 2024 수입·지출총괄(결산<안>)

※ 예산범위내에서 적정 운영, 회계감사(이지세무회계법인) 적정 의견

가. 재원

(금액단위 : 백만원)

계	체육기금 등	LH 지원비 등	비고
6,498	4,308	2,190	파리올림픽 포상비 LH 추가지원(1.1억)

나. 지출

(단위 : 백만원)

계	경상비	국내사업비	국제사업비	아시아연맹 지원비	특별사업비	적립금	이월금
6,498	925	3,655	894	50	1,054	-	-80

4. 평가 및 반성

- 가. 골드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고의 성과를 비롯하여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초 여자선수 (동)메달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 근대5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나. 국제연맹 임원선출 총회에서 부회장, 기술위원 선출과 집행위원 지명, 아시아연맹 회장 당선으로 한국 근대5종의 국제 스포츠 위상이 강화되는 한 해였습니다.
- 다. 승마경기 대체종목인 장애물경기 국내대회 도입 및 신규종목(혼성계주) 시행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68개) 체육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으나,
- 라. 연맹 사무처와 일선 시·도연맹 및 국가대표와 소통이 부족하여 연맹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의결(안) : 202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2호	2025. 3. 6.	운영

2.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첨부 2.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서)

비 전

더불어 함께, 영광의 비상, 스포츠의 완성 근대5종

5대 전략과제

- 지속 가능한 발전
- 조직의 신뢰 및 역량 강화
-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 가치제고 및 위상정립

세 부 과 제

- 지속 가능한 발전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전력 강화
 - 전문 및 생활 체육 상생 발전 도모
 - 우수선수 육성 기반 강화
- 조직의 신뢰 및 역량 강화
 -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 스포츠인권보호 및 승부조작,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조직의 역량 강화
-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 레이저런 및 장애물경기를 활용한 근대5종 저변확대
 -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근대5종 인지도 개선
- 국제스포츠 위상 정립
 - 국제기구 임원 활동 및 지원을 통한 근대5종 위상강화

1) 지속 가능한 발전

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전력 강화

- 아이치·나고야 근대5종경기
 - (일정.장소) 2026. 9.16. ~ 9.20. / 일본, 나고야시 인근
 - (메 달 수) 4개 ※ 남.여 개인 및 단체

- 장애물경기 도입 첫 종합대회로, 이에 대응한 전략 수립
 -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스포츠과학 및 영양.컨디셔닝 지원 등) 입촌
 - 다양한 장애물경기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코치 영입
 - 국제대회(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파견, 경험 축적

나. 국제대회 파견

대 회 명	기 간(안)	장 소	비 고
제1차 월드컵	2.25. ~ 3. 1.	이집트, 카이로	미 참 가
제2차 월드컵	4.22. ~ 4.26.	헝가리, 부다페스트	13명(지도자 5, 선수 8) (30개국, 200여명 참가)
제3차 월드컵	5. 7. ~ 5.11.	불가리아, 소피아	"
세계청소년선수권(U21)	6.25. ~ 6.29.	헝가리, 세케슈페헤르바	11명(지도자 3, 선수 8) (25개국, 250여명)
월드컵 결승	7. 4. ~ 7. 6.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3명(지도자 5, 선수 8) (30개국, 200여명 참가)
세계선수권(릴레이)	7. 8. ~ 7.13.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3명(지도자 5, 선수 8) (30개국, 200여명 참가)
세계청소년선수권(U17)	7.17. ~ 7.2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11명(지도자 3, 선수 8) (25개국, 250여명)
세계청소년선수권(U15)	8.13. ~ 8.1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1명(지도자 3, 선수 8) (25개국, 250여명)
세계청소년선수권(U19)	8.21. ~ 8.24.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11명(지도자 3, 선수 8) (25개국, 250여명)
세계선수권	8.27. ~ 8. 31.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13명(지도자 5, 선수 8) (30개국, 200여명 참가)
아시아선수권대회 (U19 & Senior)	11. 9. ~ 11.16.	일본, 안조	

※ 개최 11건, 파견 10건

다. 전문 및 생활체육 상생 발전 도모

□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대회의 성공적 개최

대 회 명		기 간(안)	장 소	비 고
연맹주최 (4)	제44회 전국선수권대회	3.14. ~ 3.19.	강원(홍천)	팀대항
	제36회 문체부장관기대회	6.13. ~ 6.18.	전남(해남)	시·도대항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대회	8. 1. ~ 8. 6.	강원(인제)	시·도대항
	제42회 회장배대회	8.25. ~ 8.30.	경북(문경)	팀대항
체육회주최 (2)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24. ~ 5.27.	경상남도	시·도대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17. ~10.23.	부산광역시	시·도대항
기 타 (3)	제27회 학생연맹회장배	5. 6. ~ 5.10.	강원(홍천)	팀대항
	제12회 실업연맹회장배	5.12. ~ 5.16.	미 정	팀대항
	제39회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 2. ~ 4. 5.	대구체고	팀대항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크루 대회 개최

대 회 명	일정 및 장소	비 고
동호인 및 크루 대회	후원사 섭외 후 결정	레이저 런 및 장애물경기를 활용한 이벤트 대회
레이저런 대회	”	여학생스포츠클럽 참여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행
왕중왕전 개최	”	전문 및 일반인 최강자 선발 이벤트 대회

라. 우수선수 육성 기반 조성

구 분	인 원 (지도자/선수)	훈련일수	비 고
국가대표	22명 (8/14 <남 7, 여 7>)	220일	국외 50일
후보선수	17명 (2/15 <남 8, 여 7>)	동.하계 40일 (방학기간)	국외 10일
청 소년 대표	19명 (4/15 <남 8, 여 7>)	하계 20일 (방학기간)	국외 10일
꿈 나 무 선수	24명 (4/20 <남10, 여10>)	동.하계 24일 (방학기간)	국외 10일

2) 조직의 신뢰 및 역량 강화

□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

- (간담회)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으로 연맹 주최대회를 통해 연맹 사업 및 각종 정보 전달
- (SNS 등 다양한 채널) 근대5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접수 창구 개설, 신속한 답변으로 소통 강화
- (강습회 및 워크샵 등)
 - (성)폭력 및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스포츠 인권 교육
 - 규정 강습을 통한 심판의 오심 방지 및 스포츠 정신 고취

□ 조직의 자체 역량 강화

- (현실태) 비인기종목인 근대5종의 인지도 부족, 후원사 모집 한계
 - ※ 3.2억(우리은행 2억, 르꼬끄 0.7억, 루디선글라스 0.5억)
- (자체역량강화) 인지도 개선(스타선수 활용 미디어 노출 및 콘텐츠 개발)
 - (홍 보) 경기 중계시 광고 후원사 섭외 및 유치시도 지역기업 후원 모집
 - (마케팅) 동호인 및 일반인 참여 이벤트 대회 개최를 통한 후원사 모집
 - (수익창출 콘텐츠 제작) AR, VR 장비를 활용한 근대5종 확장성 강화

□ 회원단체 등 육성 지원 (146백만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액	비 고
시.도연맹지원비	16개 시.도연맹	64,000	시.도당 400만원
	제주연맹(추가)	4,000	도서지역(대회출전비: 항공료 등)
실업.학생연맹지원비	육성지원비	8,000	연맹별 400만원
	대회개최비	6,000	연맹별 300만원
연맹 주최대회출전비	초등부 육성	32,000	각 대회 15개팀, 팀당 50만원
전국소년체전 지원비		32,000	16개 시.도, 시도당 200만원

3)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 레이저런 및 장애물경기를 활용한 근대5종 저변확대
 - 여학생스포츠교실 참여 대상을 활용한 이벤트 대회 개최
 - 동호인 및 크루를 대상을 한 이벤트 대회 개최

-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근대5종 인지도 개선
 - 국제대회 입상 및 각종 국내대회 개최 및 결과 언론 보도
 - 연맹 주최대회 방송(유튜브 및 네이버 TV 등) 중계
 - 국대스마터즈 통한 근대5종 홍보 : 대회사진, 영상 제작 활용
 - 마케팅 대행업체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이벤트 행사 개최

4) 국제스포츠 위상 정립

- 국제기구 임원 활동 및 지원

계	아시아연맹		국제연맹	
	집행위원회	총 회	집행위원회	총 회
3	1	-	2	-

- 아시아연맹 지원

계	예산지원(LH)	초청사업	비 고
92백만원	50	42	초청사업 국고지원사업

열악한 아시아 회원국 지원을 통한 아시아지역 근대5종 활성화로
 아시안게임 참여국 및 국제연맹에서의 아시아 지역 역량 확대와
 대한연맹의 스포츠 외교 위상 강화

5) 예산 계획

□ 수입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A]	'24 예산안 ^[B]	증감 ^[A-B]	증감 사유
계	5,009	6,251	▼ 1,242	
국고보조등	3,240	4,061	▼ 821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입촌, 아시아선수권대회 미개최
L H 공 사	1,769	2,190	▼ 421	골드프로젝트사업종료 올림픽포상금 감액 등

□ 집행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안 ^[A]	'24 예산안 ^[B]	증감 ^[A-B]	증감 사유
계	5,009	6,251	▼ 1,242	
경 상 비	1,160	981	179	직원 2명 대리 승진, 인건비(공무원 2.5%)인상 및 퇴직적립금 총당 등
국 내 사 업	2,991	3,604	▼ 613	오픈대회 미개최, 골드프로젝트 사업 종료,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입촌
국 제 사 업	734	754	▼ 20	월드컵(4→2회) 파견계획 수정 감액
아시아연맹지원	50	50	0	
예 비 비	20	20	0	
특 별 사 업	54	842	▼ 788	아시아선수권대회 미개최, 장애물 지원사업 종료 파리올림픽포상비 감액

□ 세부내역

- (경 상 비) 인건비(156_국고지원 자체변경, 퇴직적립금 총당 등), 운영비(23)
- (국내사업) 국내대회비(▼ 163), 학교.생활체육비(33), 훈련비 등(▼ 609 -진천선수촌입촌, 승마장 폐쇄), 육성.포상비(58), 홍보.전산비(23) 등
- (국제사업) 국제대회.국외훈련비(▼ 76), 개도국초청(54) 등
- (특별사업비) 아시아선수권대회비(▼ 572), 장애물경기지원비(▼ 160), 파리올림픽포상비(▼ 110), 국제경쟁력 강화TF팀비(54)

※ 경기력지원비(체육기금)를 포함한 각 재원별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내부결재로 변경·시행하고 추후 결산이사회(차기년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의결(안) : 202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3호	2025. 3. 6.	운영

3.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안) 승인

□ 근거규정 및 관련조항

-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관리지침 제4조(과실금 사용)
 - ① 회원종목단체에서는 법인기금 및 적립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한 과실금에 대하여는 재적립하여 원금화하거나 또는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수입금으로써 이사회(서면불가)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② 과실금을 사용할 경우,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 경비
 - 2. 국고보조사업 수행 부족 경비
 - 3. 선수훈련 및 경기운영에 소요되는 용구·용품, 장비 구입비 등
 - ③ 질권 설정 해당년도의 과실금의 사용은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집행 잔액은 원금에 적립한다.

□ 과실금 사용금액 (88,499천원)

(금액단위 : 원)

구 분	금 액	연이율	연간이자	비 고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1,422,435,526	3.66%	44,043,725	만기수령
"	369,022,858	3.70%	11,551,154	"
법인화 기금	1,051,177,736	3.70%	32,903,965	"
합 계	2,842,636,120		88,498,844	

□ (사용용도) 단체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 검토의견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 승인,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 향상지원비 적립금 과실금의 예산 변경에 대해 내부결재 후 사용, 차기년도 정기이사회 보고

3) 의결(안) :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4호	2025. 3. 6.	운 영

4. 각종 규정 제·개정 승인(안)

□ 근 거

대한체육회 지침 및 정관에 의거하여 개정 및 기타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코자 함.

□ 규정 제·개정 내용 ※ 붙임 : 각종 규정 대조표

구 분	주 요 내 용
스포츠공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가 결정된 이후 효력이 언제부터 발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 추가 ▷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결정 시, 즉시 통보 ▷ 재징계 상황에서 징계 효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 반영 ▷ 기타 자구 수정 등
국가대표 선발 규정	▷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시, 서류 및 면접심사 총점 60점 미만인 지원자 미선발 내용 추가
인사규정	▷ 승마장 폐쇄에 따른 기능직 문구 삭제
취업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구 수정 ▷ 미사용 서식 삭제 등
여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선거 회의 회의비 기준 추가 ▷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에 개최하는 회의로 별도의 회의비가 필요할 경우 내부결재로 회의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 교통비 지급 기준표에서 거리측정은 왕복으로 하며, 광역시·도로 측정하도록 명시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제정)	▷ 근대5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 선정

□ 검토의견

대한체육회 지침 및 연맹 정관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규정과 근대5종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를 근대5종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자 제정한 규정에 대해 원안 승인 건의

4) 의결(안) : 각종 규정 제·개정(안)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5호	2025. 3. 6.	운 영

5. 2024년도 정기 유공 포상 대상 선정(안)

(목 적) 근대5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근 거)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및 포상심의기준

추천 현황 ※ 2024년 제9차 스포츠공정위원회_2024. 12. 17.

계	경기상	지도자상	심판상	공로상	연구상	체육장학생	특별표창
35명, 11팀	7명, 10팀	2명	3명	10명	-	2명	11명, 1팀

시 상(안) ※ 붙임 : 추천 대상 참조

구 분	내 용	비 고
정기대의원총회	공로상	
회장배대회 개최식	경기상, 지도자상, 체육장학생상, 특별표창	

검토의견

2024년 근대5종 발전을 위해 수고한 인사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심의대상을 추천한 만큼, 그 공을 인정하여 2024년 정기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5) 의결(안) : 2024년도 정기유공포상 대상자 선정(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6호	2025. 3. 6.	운 영

6. 근대5종 명예의 전당 헌액 영웅 선정(안)

- (목 적) 근대5종 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인사를 명예의 전당 헌액 영웅으로 선정하여 그 공을 기리고, 근대5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근 거)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 (명예의 전당 헌액) 연맹 홈페이지 사이버 명예의 전당 설치
- 영웅 선정(안)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비 고
최귀승	1941.05.13.	<p>1964년 동경올림픽에 대한민국 최초의 선수로 근대5종 경기에 출전하여 한국 근대 5종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근대5종 국가대표 및 국군체육부대 근대5종 감독을 역임하며, 근대5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근대5종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곧 우리 연맹 고문으로 재임 시절, 2017년 대한민국 근대5종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밑바탕이 되었다.</p> <p>아울러 1982년 대한근대5종연맹 창립과 1988년 서울올림픽(근대5종경기)과 같은 국제대회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바가 크며, 특히 다년간 국제근대5종연맹 부회장 및 아시아근대5종연맹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근대5종 발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추천합니다.</p> <p><주요공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년 동경올림픽 근대5종경기 출전(한국최초) - '81~'84 근대5종 국가대표팀 감독 - '82~'01 대한근대5종연맹 전무이사 - '97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01~'13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 '13~'15 대한근대5종연맹 수석 부회장 - '97~'16 국제근대5종연맹 부회장 	

성명	생년월일	공적	비고
정진성	1951.01.01.	<p>상기 인은 대전광역시근대5종연맹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본 연맹의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함은 물론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에 솔선 참여하여 제 8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도 종합우승을 차지하기였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김덕봉, 정태남 선수가 금메달을 2010아시안게임에서 김인홍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고 또한 2025년 현재까지 대전근대5종연맹에 봉고차3대(1996년, 2006년, 2013년)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p> <p><주요공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5종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1996년~ 2025년 1월) 근대5종의 저변확대 및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스포츠를 위해 평생 헌신.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단체1위(김덕봉), 릴레이1위(정태남) -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개인3위(김인홍), 단체1위 - 2024년 대전시청 이진식(국가대표) - 2025년 대전시청 이종현(국가대표) 	

□ 검토의견

- (최귀승) 한국 최초 올림픽(1964년 도쿄) 출전과 국제근대5종연맹 부회장(5선)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한국 근대5종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신 최귀승 전 부회장을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
- (정진성) 대전근대5종연맹 회장으로 30년간 재직하며, 대전을 넘어 전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근대5종 선수로써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 섰을 뿐 아니라, 타계하기 전까지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남기며, 근대5종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

6) 의결(안) : 근대5종 명예의 전당 헌액 영웅 선정(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6호	2025. 3. 6.	운 영

7. 2025 전국대회 유치 시도 선정(안)

□ 유치의의

전국규모대회를 지방에서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근대5종 경기 저변확대는 물론 시도 지부활성화에 기여

□ 심의기준

- (예산지원) 대회개최 지원비
- (장 소) 각 경기장 위치(동일 장소 또는 인접 거리)
- (시 설) 각 종목별 장비 설치 여부 및 설치 가능 여부
 - ※ 펜싱(빠스트, 심판기), 수영(터치패드), 레이저런(사격+육상장)

□ 유치 신청 현황

구 분	회장배 대회	선수권대회	문체부 대회	체육회장배
유치신청	문경시(경북)	홍천군(강원)	해남군(전남)	인제군(강원)
경 기 장	종합운동장 일원 국군체육부대	종합운동장 일원	우슬체육공원	인제잔디구장 일원
이동 유무	차량이동(15분)	없음	없음	없음
시설	펜싱	8 Pist	8 Pist	8 Pist
	수영	50m, 8레인	25m, 6레인	25m, 8레인
규모	레이저런	400m 트랙	400m 트랙	400m 트랙
	장애물	80m(8개 장애물)	80m(8개 장애물)	80m(8개 장애물)
유치 지원비	8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소 요 예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검토의견

연맹 주최 4개 대회에 각 지자체에서 단독 신청함과 아울러 심의 기준을 충족한 만큼, 개최를 승인 요청

가 의결(안) : 2025 전국대회 유치시·도 선정(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8호	2025. 3. 6.	운영

8. 경기위원회 임기 임시 연장 승인(안)

□ (배 경)

- 원활한 제44회 전국선수권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위원회의 임기를 첫 대회(제44회 전국선수권대회<2025. 3. 14. ~ 3. 19.>) 까지 근대5종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을 위해 임시 연장코자 함.

□ (근 거) 정관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 제2항제4호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기위원회 임기 임시 연장(안) ※ 제44회 전국선수권대회 종료일까지

구 분	임 기	임시 연장
경기위원회	2021. 8. 27. ~ 2025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2021. 8. 27. ~ 2025. 3. 19. 까지

□ 경기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김명건	경산시청, 감독	
부위원장	강동윤	전남도청, 감독	
위원	신승일	울산광역시체육회, 감독	
	안창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	
	곽동윤	대구광역시청, 감독	
	송주식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감독	
	조보성	BNK 저축은행, 감독	
	오형일	대전광역시청, 감독	
	최재근	국군체육부대, 감독	
	임성택	완주군청, 감독	
	홍금표	충남체육고등학교, 지도자	
	유승찬	경상남도체육회, 감독	
	윤일모	광주광역시청, 감독	

8) 의결(안) : 경기위원회 임기 임시 연장(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심의_제9호	2025. 3. 6.	운 영

9.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안)

(근 거) 정관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9항

부의안건

○ 보고사항(4건)

- 전차회의결과보고, 감사결과보고, 회장선거 경과 및 결과 보고
2025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 심의사항(4건)

- 2024 사업결과 및 결산(업무보고)
- 정관 개정
- 임원 선임 ※ 총회 의결로 선임권한 회장 위임
-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 선임 ※ 총회 의결로 선임권한 회장 위임

검토의견

- 정관에 의거, 소집 요청
- 정기이사회 부의안건 외 상정안건에 대해 정기대의원총회 참석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상정, 심의. 의결

9) 의결(안) :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안) 승인

기타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1차 정기이사회-기타사항	2025. 3. 6.	운 영

붙임 1.

각종 규정 개정 대조표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목 차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1
2. 국가대표 선발 규정	-----	47
3. 인사 규정	-----	68
4. 취업 규칙	-----	80
5. 여비 규정	-----	117
6.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	127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대조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개정 2021. 7. 9., 2022. 1. 24.> <p>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9.>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대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 <p style="margin-left: 20px;">가.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설치근거) 대한근대5종연맹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연맹”) 2. 본 연맹, 시·도종목단체 및 산하단체 (이하 “본연맹 관계단체”라 한다)<개정 2022. 2. 9.> 3. 본 연맹의 관계단체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개정 2022. 2. 9.>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개정 2022. 2. 9.> 5. 본 연맹, 본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개정 2022. 2. 9.> <p>[전문 및 제목개정 2022. 2. 9.]</p> <p>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 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 연맹 표창에 관한 사항 4. 대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2. 9.>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9.><개정 2024. 7. 29.><개정 2025. 3. 6.> <p style="margin-left: 20px;">가. 본 연맹 및 본 연맹의 관계단체 임원</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 style="text-align: right;">- 징계가 결정된 이후 효력이 언제 발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p> <p>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p> <p>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p> <p>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p> <p>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p> <p>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p> <p>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 1. 24.></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개정 2019. 1. 31.,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나. 본 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p> <p>다. 본 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p> <p>7. 근대5종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p> <p>8.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p> <p>9. 본 연맹과 본 연맹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p> <p>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p> <p>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맹 및 본 연맹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본 연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2. 2. 9.></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개정 2022. 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2. 2. 9.>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0., 2022. 1. 24.></p> <p>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1., 개정 2020. 2. 11.></p> <p>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0.></p> <p>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4.></p> <p>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19. 1. 31.></p> <p>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p> <p>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p>	<p>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정관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p> <p>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p> <p>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2. 9.></p> <p>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p> <p>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의사를 밝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p>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p> <p>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전·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p>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전·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2019. 12. 20.></p>	<p>의사를 밝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p>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p> <p>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전·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8조의2(경비의 지급) 본 연맹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p>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전·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이 기명날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제11조(제척 · 회피 · 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p>[본조신설 2019. 1. 31.]</p>	<p>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2. 9.></p> <p>제11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법제 및 포상</p> <p>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p> <p>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 <신설 2022. 1. 24.></p> <p>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p> <p>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p> <p>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p> <p>제15조(체육회 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p> <p>② 체육회 표창은 체육상, 창립기념 표창 등이 있다. <개정 2020. 7. 29., 2022. 1. 24.></p> <p>③ 체육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7.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8. 연구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법제 및 포상</p> <p>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연맹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p> <p>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본 연맹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본 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본 연맹의 최종 결정이다. <신설 2022. 2. 9.></p> <p>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p> <p>제14조(포상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 포상 및 체육회 포상, 본 연맹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p> <p>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하며, 체육회 표창은 체육회 표창 수여절차에 따라 추천한다.</p> <p>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 연맹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개정 2022. 2. 9.></p> <p>② 본 연맹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로상 2. 연구상 3. 지도상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4. 경기상 (최우수단체(선수)상, 우수단체(선수)상, 발전상)<개정 2022. 2. 9.> 5. 표 창 (최우수시·도상, 감사패, 우수직원상) 6. 심판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9. 스포츠가치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p> <p>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전문체육·학교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체육회·회원종목단체·회원시·도체육회·시·도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4. 해외동포체육 진흥 <p>⑤ 그 외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 <p>⑥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회원시·도체육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p> <p>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회원시·도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천과 이 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그 외의 체육회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7. 체육장학생상</p> <p>8. 국제대회 입상 포상(본 연맹 포상심의기준에 의거 지급. 단, 회장의 결정으로 변경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26.></p> <p>③ 그 외 국내 근대5종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 <p>④ 연맹 표창 수여 세부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본 연맹 회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본 연맹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2. 2. 9.><2024. 7. 29.></p> <p>② 체육회 체육상은 본 연맹 회장, 관계단체의 장, 본 연맹이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체육회에 추천한다.<개정 2022. 2. 9.></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⑤ 체육회는 체육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심의</p> <p>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의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체육회 임원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3.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2022. 1. 24.> <p>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체육회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p>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③ 위원회는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위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p>	<p>⑤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표창’ 중 우수직원상 대상자의 선정은 연맹 사무처에 위임한다.</p> <p>⑥ 본 연맹은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심의</p> <p>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의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의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규모연맹체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 및 회장 후보자 2.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신설 2022. 2. 9.> <p>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p>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연맹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p> <p>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p>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 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재심의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p> <p>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징계</p> <p>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p>④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 연맹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p> <p>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본 연맹은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재심의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본 연맹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재심의 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서가 본 연맹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징계</p> <p>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본 연맹 산하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한다) 및 관계단체는 본 연맹 정관 제38조 및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31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 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 24.]</p> <p>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① 체육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p> <p>② 체육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p>[본조신설 2022. 12. 26.]</p> <p>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2. 1. 24.></p> <p>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2024.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p>[제목개정 2022. 2. 9.]</p> <p>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본 연맹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체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2. 9.]</p> <p>제23조의2(징계 의결의 요구) ① 본 연맹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 .></p> <p>②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 중에서 징계 사유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록 2.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3.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징계 근거자료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 <p>[본조신설 2023. 2. 3.]</p> <p>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과제3항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2. 2. 9.></p> <p>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p style="text-align: center;">- 자구 수정</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p> <p>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p> <p>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p> <p>8. 인권 침해, 괴롭힘</p> <p>9. 선거 관련 비위행위</p> <p>10.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p> <p>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개정 2024. 12. 26.></p> <p>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p> <p>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p> <p>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p> <p>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3.></p> <p>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 	<p>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p> <p>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p> <p>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p> <p>8. 인권 침해, 괴롭힘<신설 2022. 2 9.><2024. 7. 29.></p> <p>9. 선거 관련 비위행위<신설 2022. 2 9.><2024. 7. 29.></p> <p>10. 징계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신설 2024. 7. 29.></p> <p>11. 기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건<개정 2024. 7. 29.><개정 2025. 3. 6.></p> <p>② 본 연맹 정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본 연맹 임원, 본 연맹 관계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p> <p>③ 본 연맹 및 본 연맹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 연맹 또는 관계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p> <p>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p> <p>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p>⑥ 관계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관계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관계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신설 2022. 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본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 	<p>- 자구 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 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p> <p>1.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 24.]</p> <p>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2. 12. 26.></p> <p>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p> <p>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6.></p> <p>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p>	<p>한 비위 사건</p> <p>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신설 2022. 2. 9.><개정 2023. 2. 3.></p> <p>1. 본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⑧ 제7항에 따른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의 위반행위) 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단체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2. 3.>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2. 9.]</p> <p>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3. 2. 3.></p> <p>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p> <p>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3. 2. 3.></p> <p>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연맹체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개정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신설 2019. 12. 20., 개정 2022. 1. 24.></p> <p>④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시·도종목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2. 12. 26.></p> <p>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삭제 2022. 1. 24.> ③ <삭제 2022. 1. 24.> ④ <삭제 2022. 1. 24.> ⑤ <삭제 2022. 1. 24.> ⑥ <삭제 2022. 1. 24.> <p>[전문개정 2022. 1. 24.]</p> <p>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p>	<p>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본 연맹, 시·도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개정 2022. 2. 9.></p> <p>④ 시·도연맹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연맹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본 연맹이 시·도연맹으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연맹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 연맹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23. 2. 3.></p> <p>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삭제 2022. 2. 9.> ③ <삭제 2022. 2. 9.> ④ <삭제 2022. 2. 9.> ⑤ <삭제 2022. 2. 9.> ⑥ <삭제 2022. 2. 9.> <p>[전문개정 2022. 2. 9.]</p> <p>제28조(징계요구) ① 본 연맹은 징계혐의자와 징계수</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2019. 12. 20.></p> <p>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p> <p>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p> <p>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p>	<p>위를 정하여 본 연맹 관계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체육회 위원회에서 징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본 연맹은 연맹체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단, 시·도연맹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2. 3.></p> <p>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p> <p>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사건,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2022. 1. 24., 2022. 12. 26., 2024.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p>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p> <p>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 행정, 뇌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사건,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개정 2024.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② 위원회(중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7. 29., 2022. 1. 24.></p> <p>③ 위원회(중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7. 29.></p> <p>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2024. 5. 31.></p> <p>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24.></p> <p>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2. 1. 24.> 2. <삭제 2022. 1. 24.>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p> <p>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p>	<p>② 위원회(관계단체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u>제8호부터 제11호</u>(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개정 2022. 2. 9.><개정 2025. . .></p> <p>③ 위원회는(관계단체위원회를 포함한다.)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p> <p>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22. 2. 9.><개정 2024. 7. 29.></p> <p>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2. 9.></p> <p>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2. 2. 9.> 2. <삭제 2022. 2. 9.>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 2. 9.></p> <p>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p>	<p>- 자구 수정</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p> <p>④ <삭제 2022. 12. 26.> ⑤ <삭제 2022. 12. 26.>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⑦ <삭제 2022. 12. 26.> [전문개정 2022. 1. 24.]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12. 26.]</p> <p>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2. 1. 24.></p> <p>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p> <p>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p>	<p>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p> <p>④ <삭제 2023. 2. 3.> ⑤ <삭제 2023. 2. 3.>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연맹체위원회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23. 2. 3.> ⑦ <삭제 2023. 2. 3.>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2. 3.]</p> <p>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 연맹은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개정 2025. 3. 6.></p> <p>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p> <p>③ 본 연맹은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6.></p> <p>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p>	<p>- 자구 수정</p> <p>- 징계 관련 소속단체장 및 팀에 즉시 통보 - 2차 피해 방지</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에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4.></p> <p>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을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2. 1. 24.></p> <p>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p> <p>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3.></p> <p>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p>	<p>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④ 연맹체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p> <p>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2. 2. 9.></p> <p>⑥ 위원회는 연맹체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을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9.></p> <p>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 연맹 또는 본 연맹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다.</p> <p>④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⑤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p> <p>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p> <p>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2. 1. 24.></p>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24., 2022. 12. 26.></p> <p>② 징계의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p>	<p>④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⑤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p> <p>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2. 2. 9.></p> <p>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p> <p>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22. 2. 9.></p>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 연맹체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34조제2항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2. 9.> <개정 2023. 2. 3.></p> <p><u>② 징계의 취소·무효 결정이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u></p>	<p>- 재징계 상황에서 징계 효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 반영</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개정 2022. 12. 26.></p> <p>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p> <p>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p> <p>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p> <p>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2. 1. 24.></p> <p>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중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p>	<p>③ 징계혐의자가 연맹체육위원회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개정 2023. 2. 3.></p> <p>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p> <p>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본 연맹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p> <p>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p> <p>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신설 2022. 2. 9.></p> <p>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본 연맹 관계단체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p> <p>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p> <p>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p> <p>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p> <p>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 <개정 2022. 1. 24.>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022. 12.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삭제 <2021. 2. 4.>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p>	<p>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p> <p>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p> <p>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p> <p>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p> <p>제38조(징계의 보고) ① 제33조에 따라 연맹체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연맹체는 지체없이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단체 위원회가 보고한다<개정 2022. 2. 9.>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023. 2. 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0조(행정처리) ① <삭제 2022. 2. 9.> ② 위원회, 연맹체위원회 및 관계단체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2. 2.</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2021. 2. 4., 2022. 1. 24.> [제목개정 2021. 2. 4.]</p> <p>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체육회는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p> <p>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건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본조신설 2021. 2. 4.]</p> <p>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제목개정 2022. 1. 24.]</p> <p>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p> <p>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개정 2022. 12. 26.>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p>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p>	<p>9.></p> <p>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본 연맹은 위원회, 관계단체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 관계단체는 각 위원회의 건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본조신설 2022. 2. 9.]</p> <p>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 2. 9.]</p> <p>제43조(규정 제·개정) ① 본 연맹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 해야하며,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p> <p>②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본 연맹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관계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본 연맹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p>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1. 24.]</p>	<p>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본 연맹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신설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1990. 4. 26 ~ 2016. 1.28)</p> <p>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199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2. 18)</p> <p>제3조(경과조치) 본 연맹 산하단체인 한국중고근대5종연맹은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야 한다. (2006. 2. 16.)</p> <p>제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2. 8.)</p> <p>제5조(경과조치) 본 연맹 산하단체인 한국중고근대5종연맹은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야 한다. (2007. 2. 8.)</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6. 3. 21.)</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2 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구)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 (구)국민생활체육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6. 4. 28.)</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경과조치) (구)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p>	<p>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7조(경과조치) 본 연맹 산하단체인 전국규모연맹체는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상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야 한다. (2014. 2.13.)</p> <p>제8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3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2014. 2.13)</p> <p>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4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4년 9월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6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6. 7.19.)</p> <p>제 1 조(시행일) 본 연맹은 제2차 임시이사회(2016년 4월 11일)에서 대한체육회의 지침으로 추후 추가 개정되는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개정일인 2016. 7.19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경과조치) ① (구)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와 선수위원회, (구)국민생활체육회, (구)경기단체 법제상벌위원회, (구)대한체육회 시·도지부의 법제상벌위원회 등이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부 칙(2016. 6.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제7항의 개정사항은 동 규정 시행일 기준 징계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p> <p>부 칙(2016. 7.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16. 9.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17. 2. 1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p> <p>부 칙(2017. 4. 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p>	<p>원회와 선수위원회, (구)국민생활체육회, (구)경기단체 법제상벌위원회, (구)대한체육회 시·도지부의 법제상벌위원회 등이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이 규정 시행은 2016 신집행부 임원구성 이후로 하며, 신집행부 구성 이후에는 중전의 상벌위원회 규정은 폐지하고, 선수위원회 규정의 스포츠인권 침해(성폭력 및 폭력)에 대한 징계 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p> <p>부 칙(2017. 3. 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으로 본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은 구제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p> <p>② 구제신청대상은 2014. 11. 6.(양 단체 통합 합의문 서명일)부터 2016. 12. 31.까지 1차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32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 감경할 수 있다. 단,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경우 감경에 한하여 적용한다.</p> <p>③ 제1항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25조 제3항과 「인사규정」의 제81조 제2항에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직원에 관하여도 적용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세부 구제방안은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 5. 15.)</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8. 10. 4.)</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10.16.)</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8.10.4.)</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제24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8.12.5.)</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9. 1. 31.)</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9. 12. 20.)</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0. 2. 11.)</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0. 7. 29.)</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0. 10. 23.)</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 2. 4.)</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 7. 9.)</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 1.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0월 4일에</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 10. 4.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8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경과규정) 제24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9. 2. 21.)</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년도 대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0. 2. 7.)</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0. 11. 27.)</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1. 1. 28.)</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1. 5. 31.)</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1. 8. 27.)</p> <p>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 2.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0월 4일에</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p> <p>부 칙(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3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1.24.)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부 칙 (2024. 05. 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4.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부 칙 (2024.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5. 1.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p> <p>부 칙(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3조의2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과 관련, 부칙(2022. 2. 9.) 제2조(부칙 경과규정) 시행에 따른 구제 신청대상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월 24일 이전에 징계가 확정된 사람 중에 당시 혐의가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부 칙 (2024. 7.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4. 11.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5. 3. 6.) <u>제1조(시행일)</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u>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종목위원회 및</p>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1. 23.)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u>본 연맹 관계단체 및 연맹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u>	

별표 제1호 <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입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입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입원 선수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입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입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건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 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p>※ 비고</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별표 제4호 <신설 2022. 2. 9.><개정 2023. 2. 3.>

징계의 감경기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관련)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추 천 부 문		공 적 기 간 ^{주 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소 속		직 위 (직 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뒷면)

공적 관련 경력 ^{주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별지 제2호

표 창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 혐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문			
⑤ 이 유			
<p>년 월 일</p> <p>대한근대5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p> <p>위 원 장 인</p>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근대5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인

서 약 서

본인은 대한근대5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근대5종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①

국가대표 선발전 규정 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국가대표선발 규정 개정 대조표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 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본 연맹이 국제 종합경기대회(이하“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친선국제대회는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시리즈(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이하“국제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본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 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본 연맹이 국제 종합경기대회(이하“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근대5종 국제대회(친선국제대회는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시리즈(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이하“국제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본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본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또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p> <p>제4조(위원회 설치) 본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사항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명, 지도자 1명, 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 외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여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개 위원회 범위내에서</p>	<p>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또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p> <p>제4조(위원회 설치) 본연맹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사항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명, 지도자 1명, 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 외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여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개 위원회 범위내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p> <p>②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③ 근대5종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 국가대표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본 연맹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0%를 초과하지 않게 동일대학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③ 연맹 정관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④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 사건에 대해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p> <p>⑥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 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p>	<p>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p> <p>②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③ 근대5종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 국가대표 지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본 연맹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0%를 초과하지 않게 동일대학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③ 연맹 정관 제15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④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 사건에 대해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p> <p>⑥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 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연맹 사무국에서 담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도자</p> <p>제11조(국가대표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경향위”라 한다.)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트레이너는 본 연맹의 경향위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트레이너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국가대표이하 우수선수(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포함)는 기선발된 선수 중 다수 선수 선발 지도자, 성적 상위 선수의 지도자 순으로 결과에 따라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⑤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 	<p>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10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연맹 사무국에서 담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도자</p> <p>제11조(국가대표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경향위”라 한다.)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트레이너는 본 연맹의 경향위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트레이너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국가대표이하 우수선수(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포함)는 기선발된 선수 중 다수 선수 선발 지도자, 성적 상위 선수의 지도자 순으로 결과에 따라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⑤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다.</p> <p>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지도경력 5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p>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지도경력 2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p>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다.</p> <p>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지도경력 5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p>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지도경력 2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근대5종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p> <p>6. 세부종목코치는 해당 종목에서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p> <p>④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p> <p>③ 우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시 임상경력에 20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p> <p>제14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본 연맹 경향위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한다.</p> <p>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2.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p>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근대5종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p> <p>6. 세부종목코치는 해당 종목에서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p> <p>④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p> <p>③ 우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올림픽대회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개인)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시 임상경력에 20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p> <p>제14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본 연맹 경향위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한다.</p> <p>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2.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3.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p> <p>④ 본 연맹 경향위가 제3항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p> <p>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p> <p>⑥ 근대5종 국제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p> <p>제1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인원) ①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체육회의 강화훈련 계획에 의거 선발 인원을 정한다.</p> <p>제16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기준) ①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제1호, 제2호로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 실적(국내.외대회 입상 실적) : 10점 단, 국가대표 선수 입상 실적, 국가대표 지도자 및 소속 지도자 동일하게 적용 2. 지도 경력(지도 기간) : 10점 3. 경기지도자 자격증 : 10점 (1급, 2급) 단, 심의기준은 1급을 기준으로 함. 4. 국가대표 선수 경력(본인) : 10점 5. 국제.국내대회 입상 경력(본인) : 10점 6. 직전 소속 단체장 (시.도연맹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추천서(10점) 7. 면 접 : 40점 (해당 종목 평판 조사 가능) ㉠ 지도력 및 리더쉽(10점) ㉡ 자질 및 가치관(10점) ㉢ 팀 운영능력(20점) ※ 운영계획서 PPT 발표 <p>8.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서</p>	<p>3.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p> <p>④ 본 연맹 경향위가 제3항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p> <p>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본 연맹 경향위의 심의를 거쳐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p> <p>⑥ 근대5종 국제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추천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p> <p>제1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인원) ① 본 연맹 사업계획 및 체육회의 강화훈련 계획에 의거 선발 인원을 정한다.</p> <p>제16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기준) ① 국가대표지도자(총감독,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제1호, 제2호로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 실적(국내.외대회 입상 실적) : 10점 단, 국가대표 선수 입상 실적, 국가대표 지도자 및 소속 지도자 동일하게 적용 2. 지도 경력(지도 기간) : 10점 3. 경기지도자 자격증 : 10점 (1급, 2급) 단, 심의기준은 1급을 기준으로 함. 4. 국가대표 선수 경력(본인) : 10점 5. 국제.국내대회 입상 경력(본인) : 10점 6. 직전 소속 단체장 (시.도연맹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추천서(10점) 7. 면 접 : 40점 (해당 종목 평판 조사 가능) ㉠ 지도력 및 리더쉽(10점) ㉡ 자질 및 가치관(10점) ㉢ 팀 운영능력(20점) ※ 운영계획서 PPT 발표 <p>8.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서</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류 및 면접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전담지도자(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기준은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1항으로 하되, 선수.지도자 경력은 근대5종 경력만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는 제11조제4항을 따른다.</p> <p>제17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맹의 경향위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p> <p>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 누적 순위 등 근대5종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p> <p>③ 본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국제근대5종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와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④ 본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본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p> <p>⑥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p>	<p>류 및 면접위원의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p> <p><u>9.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은 서류심사(60) 및 면접심사(40)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 지원자는 선발하지 않는다.<신설 2025. 3. 6.></u></p> <p>② 전담지도자(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기준은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1항으로 하되, 선수.지도자 경력은 근대5종 경력만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전문지도자(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는 제11조제4항을 따른다.</p> <p>제17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맹의 경향위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p> <p>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 누적 순위 등 근대5종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p> <p>③ 본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국제근대5종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와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④ 본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본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근대5종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p> <p>⑥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p>	<p>-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시, 서류 및 면접심사 총점 60점 미만인 지원자 미선발 내용 추가</p>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없이 국가대표 선발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다만, 차순위가 동률일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p> <p>⑦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육성이 요구될 경우, 기량 향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선수에 한해 선발전과 상관없이 경향위에서 추천하며 이사회 심의.추천으로 본 연맹의 장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p> <p>⑧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경향위의 심의후 이사회의 의결로 프로젝트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p> <p>⑨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본 연맹의 경향위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 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국가대표 선발) ① 국가대표 선발전은 최소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한 선발전은 별도로 정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경향위 위원의 추천 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7조제7항과 최근 1년 이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결승 포함)대회에서 개인 3위 이내 입상 선수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선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향상도, 지도자 평가보고서, 경향위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선발전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하며, 세부종목 적용과 선발방식, 선발인원을 경향위에서 정한다. 2. 각 종목별 세부사항은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 	<p>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없이 국가대표 선발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다만, 차순위가 동률일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p> <p>⑦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우수선수 육성이 요구될 경우, 기량 향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선수에 한해 선발전과 상관없이 경향위에서 추천하며 이사회 심의.추천으로 본 연맹의 장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p> <p>⑧ 국가대표 강화훈련 외에 특수 목적으로 별도 프로젝트팀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경향위의 심의후 이사회의 의결로 프로젝트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p> <p>⑨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본 연맹의 경향위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 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국가대표 선발) ① 국가대표 선발전은 최소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한 선발전은 별도로 정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경향위 위원의 추천 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7조제7항과 최근 1년 이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결승 포함)대회에서 개인 3위 이내 입상 선수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선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향상도, 지도자 평가보고서, 경향위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선발전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으로 선발함을 원칙하며, 세부종목 적용과 선발방식, 선발인원을 경향위에서 정한다. 2. 각 종목별 세부사항은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25명이 이상일 경우에는 예선전을 거쳐 18명을 선발하여 결승전을 실시하며, 결승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p> <p>⑤ 경기기록분석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p>1. 최근 1년간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및 연맹 주최대회(회장배, 문체부, 선수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체전 성적을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 세계랭킹(PWR) 적용하되, 국제대회 기록은 레벨 1, 국내대회 레벨 2(근대4종 레벨 3)를 적용하여 국가대표 선발 경향위 개최 전 최근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기록으로 경향위에서 선발 심의하여 본 연맹 장이 정한다. 다만,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은 국내대회 기록을 근대5종 레벨 1, 근대4종 레벨 2, 근대3종 레벨 3, 근대2종 레벨 4을 적용하며, 각 대회 부문별(근대2종, 근대3종, 근대4종) 참가선수 인원 에 따라 1위의 점수를 달리 적용한다.</p> <p>⑥ 부상 선수에 교체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p> <p>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 ① 제17조제1항 따라 올림픽대회(아시아지역예선전)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선발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p> <p>1. 국가대표 선발전은 2회를 실시하되, 제1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선발전을 실시하며, 국제대회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성적 순위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 기간동안 국가대표 강화훈련은 현 국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제2차 선발전 개최 전일까지 실시한다.</p> <p>2.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p> <p>3. 제2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18명으로 제한한다.</p>	<p>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인원이 25명이 이상일 경우에는 예선전을 거쳐 18명을 선발하여 결승전을 실시하며, 결승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p> <p>⑤ 경기기록분석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다음과 같다.</p> <p>1. 최근 1년간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및 연맹 주최대회(회장배, 문체부, 선수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체전 성적을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 세계랭킹(PWR) 적용하되, 국제대회 기록은 레벨 1, 국내대회 레벨 2(근대4종 레벨 3)를 적용하여 국가대표 선발 경향위 개최 전 최근 1년간 출전한 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기록으로 경향위에서 선발 심의하여 본 연맹 장이 정한다. 다만,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선발은 국내대회 기록을 근대5종 레벨 1, 근대4종 레벨 2, 근대3종 레벨 3, 근대2종 레벨 4을 적용하며, 각 대회 부문별(근대2종, 근대3종, 근대4종) 참가선수 인원 에 따라 1위의 점수를 달리 적용한다.</p> <p>⑥ 부상 선수에 교체는 제17조제6항에 따른다.</p> <p>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 ① 제17조제1항 따라 올림픽대회(아시아지역예선전)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선발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p> <p>1. 국가대표 선발전은 2회를 실시하되, 제1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선발전을 실시하며, 국제대회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성적 순위로 하여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전 기간동안 국가대표 강화훈련은 현 국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제2차 선발전 개최 전일까지 실시한다.</p> <p>2.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p> <p>3. 제2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18명으로 제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②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 랭킹(PWR) 순위 2. 올림픽 당해년도 및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결승포함) 1 ~ 3위 입상 상위자, 단, 월드컵 입상 순위가 동일일 경우 월드컵 결승이 우선한다. 3. 아시아 지역 예선전 순위 4. 올림픽 엔트리 제출 기한까지 파견선수를 최종 선발하며, 파견 대상자 중 부상 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기 제1호내지 제4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p>③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아시아지역예선전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순 2.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제1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p>④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림픽대회 출전권 및 랭킹포인트 부여대회 파견은 제17조제7항과 제8항을 우선 적용하여 파견하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대상을 파견한다. 2. 제3항을 제외한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으로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3. (청소년, 유소년, 트라이애슬, 비아틀)세계선수권대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4. 아시아(청소년, 유소년 등)선수권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전임.전담지도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5.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6. 국가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7.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및 기타 국제 	<p>②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 랭킹(PWR) 순위 2. 올림픽 당해년도 및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결승포함) 1 ~ 3위 입상 상위자, 단, 월드컵 입상 순위가 동일일 경우 월드컵 결승이 우선한다. 3. 아시아 지역 예선전 순위 4. 올림픽 엔트리 제출 기한까지 파견선수를 최종 선발하며, 파견 대상자 중 부상 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따라 상기 제1호내지 제4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p>③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아시아지역예선전 파견선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순 2.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제1호에 따라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p>④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결승 포함),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림픽대회 출전권 및 랭킹포인트 부여대회 파견은 제17조제7항과 제8항을 우선 적용하여 파견하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대상을 파견한다. 2. 제3항을 제외한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으로 경향위에서 심의 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3. (청소년, 유소년, 트라이애슬, 비아틀)세계선수권대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 4. 아시아(청소년, 유소년 등)선수권대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전임.전담지도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후 본 연맹 장이 정한다. 5. 파견 대상 중 부상등으로 파견선수 교체시에는 제17조제6항에 의거하여 차순위 선수를 파견한다. 6. 국가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향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7.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및 기타 국제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대회 파견에 대해 일반선수가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회 출전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국제종합대회(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경기입원 파견은 제14조에 따라 파견하며, 국제대회(UIPM, AMPC 주최대회) 경기입원 파견시에는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p> <p>⑥ 국외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체육진흥공단 포함) 지원 및 연맹 사업계획에 따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p> <p>제20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p>대회 파견에 대해 일반선수가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회 출전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국제종합대회(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경기입원 파견은 제14조에 따라 파견하며, 국제대회(UIPM, AMPC 주최대회) 경기입원 파견시에는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의 장이 정한다.</p> <p>⑥ 국외전지훈련은 대한체육회(체육진흥공단 포함) 지원 및 연맹 사업계획에 따라 경향위의 심의 후 본 연맹 장의 정한다.</p> <p>제20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국가대표 선수는 본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한 사람.</p> <p>5.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행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p> <p>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p> <p>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p> <p>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p> <p>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p> <p>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p> <p>가. 1천만원 초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11. 이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p> <p>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p> <p>13.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p>	<p>한 사람.</p> <p>5.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행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p> <p>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p> <p>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p> <p>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p> <p>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p> <p>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p> <p>가. 1천만원 초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11. 이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p> <p>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p> <p>13.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1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2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본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p> <p>제23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p>	<p>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1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2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본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p> <p>제23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대회의 국</p>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가대표로 확정된 날로부터 대회 종료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임기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 2년 주기의 임기를 보장하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나 감염병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2.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여 개인·단체·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3개 이상, 남·여 개인·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2개 이상, 남·여 개인전만 개최될 경우 1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p>④ 국가대표 선발전(기록분석 선발 포함)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p> <p>제25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의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의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p>가대표로 확정된 날로부터 대회 종료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임기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 2년 주기의 임기를 보장하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나 감염병으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2.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여 개인·단체·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3개 이상, 남·여 개인·혼성계주가 실시될 경우 2개 이상, 남·여 개인전만 개최될 경우 1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우 <p>④ 국가대표 선발전(기록분석 선발 포함)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는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p> <p>제25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의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의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력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p>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p>제2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7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p>제28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연맹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 	<p>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력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p>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p>제2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7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본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p>제28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연맹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9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부 칙 부 칙<2011. 2. 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1. 2.23.)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3. 5. 21></p> <p>제1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2013. 5.21.)</p> <p>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21.)</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5. 2.24></p> <p>제1조(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삭제되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운영한다. (2015. 2.24.)</p> <p>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4.)</p> <p>제3조(경과조치)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015. 2.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 3.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정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9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부 칙 부 칙<2011. 2. 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1. 2.23.)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3. 5. 21></p> <p>제1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2013. 5.21.)</p> <p>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3. 5.21.)</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5. 2.24></p> <p>제1조(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삭제되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운영한다. (2015. 2.24.)</p> <p>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4.)</p> <p>제3조(경과조치)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015. 2.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 3.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10.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제19조(국가대표선발)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 후 제1차 선발전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나, 제2차 및 제3차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일 3개월 후에 개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8.12. 5></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1.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21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2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p> <p>② 이 규정 제21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 8.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이 개정된 후 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제2항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재평가에 따른 재임용 적용은 2022년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 등 포함)로 선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7.10.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제19조(국가대표선발)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 후 제1차 선발전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나, 제2차 및 제3차 선발전은 동 규정 개정일 3개월 후에 개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8.12. 5></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1.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21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2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p> <p>② 이 규정 제21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 8.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이 개정된 후 제24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제2항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재평가에 따른 재임용 적용은 2022년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 등 포함)로 선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 3.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한 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제1항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전을 개최한다.</p> <p>1. 국가대표 선발전은 3회를 실시하되,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불참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3회를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은 제1차 선발전부터 신청하여야 하고,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선발 성적 결과로 경향위 심의의결로 실시한다.</p> <p>2. 상기 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되 3차에 걸쳐 실시된 선발전 중 상위 2개 선발전에 각각 50%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p> <p>3. 제2차 선발전 및 제3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24명으로 제한하되, 불가항력적인 일로 참가하지 못한 선수를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10.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연맹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소집) 제7항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동 규정 제7조(위원회운영)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통신 수단 등으로 동 규정 개정 전에 개최된 위원회는 연맹 정관과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된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02.03.></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4.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 3.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한 제19조(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 기준)제1항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전을 개최한다.</p> <p>1. 국가대표 선발전은 3회를 실시하되,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불참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3회를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은 제1차 선발전부터 신청하여야 하고, 파견 선수와 강화훈련은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선발 성적 결과로 경향위 심의의결로 실시한다.</p> <p>2. 상기 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전 성적 순위는 세계랭킹(PWR) 레벨 1을 적용하되 3차에 걸쳐 실시된 선발전 중 상위 2개 선발전에 각각 50%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p> <p>3. 제2차 선발전 및 제3차 선발전 참가선수는 제1차 선발전 성적 결과로 24명으로 제한하되, 불가항력적인 일로 참가하지 못한 선수를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10.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연맹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소집) 제7항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동 규정 제7조(위원회운영)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통신 수단 등으로 동 규정 개정 전에 개최된 위원회는 연맹 정관과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하여 개최된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02.03.></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4. 11. 26.></p>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2024. 11. 26.)	본 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6.>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인사 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인사 규정 대조표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채용</p> <p>제3조(임면)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p> <p>제4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후보자가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일 때 2. 업무의 성격상 공개경쟁 시험이 부적합할 때 <p>②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 시험과목, 방법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③ 계약직(1년 이상) 직원 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1년 미만의 단기인력 또는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계획은 그렇지 아니하다.<신설 2024. 7. 29.></p> <p>④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계약조건 등을 정한 필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채용한다.<신설 2024. 7. 29.></p> <p>제5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채용</p> <p>제3조(임면)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p> <p>제4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후보자가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일 때 2. 업무의 성격상 공개경쟁 시험이 부적합할 때 <p>②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 시험과목, 방법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③ 계약직(1년 이상) 직원 채용 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1년 미만의 단기인력 또는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계획은 그렇지 아니하다.<신설 2024. 7. 29.></p> <p>④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계약조건 등을 정한 필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채용한다.<신설 2024. 7. 29.></p> <p>제5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서(소정양식) 2. 이력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4. 가족관계 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경력증명서 (필요시) 7. 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필요시) 9. 기타 본 연맹이 정하는 서류</p> <p>② 필요한 경우 학력 및 경력, 병역, 신원관계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정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11.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12. 기타 위에 준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p>제7조(수습)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③ 수습기간의 만료 또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p>	<p>4. 가족관계 증명서 5. 신원증명서 6. 경력증명서 (필요시) 7. 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필요시) 9. 기타 본 연맹이 정하는 서류</p> <p>② 필요한 경우 학력 및 경력, 병역, 신원관계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정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11.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12. 기타 위에 준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p>제7조(수습)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③ 수습기간의 만료 또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적성,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력, 근무태도, 적성, 근무성적 및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 직</p> <p>제8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능력등을 참작하여, 본 연맹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본 연맹의 보직명령에 따른다.</p> <p>제9조(직위해제 및 권고사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가. 동일 회계연도에 시말서 등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나. 별표 1로 하여 인사고과평가 시 2년 이상 50점 이하 평가자 4. 채용비리 연류 또는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3호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제10조(출장) ① 직원이 본 연맹의 업무 (이하 ‘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용무변경에 의한 당초 목적지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 직</p> <p>제8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능력등을 참작하여, 본 연맹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본 연맹의 보직명령에 따른다.</p> <p>제9조(직위해제 및 권고사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가. 동일 회계연도에 시말서 등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나. 별표 1로 하여 인사고과평가 시 2년 이상 50점 이하 평가자 4. 채용비리 연류 또는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3호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직을 권고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p> <p>제10조(출장) ① 직원이 본 연맹의 업무 (이하 ‘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용무변경에 의한 당초 목적지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이내(특</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이내 (특별히 정해진 기일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봉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승진 및 평가</p> <p>제11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12조를 근거로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회장이 정한다. 단, 과장(직위승진) 및 4급(직급) 승진은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상임부회장이 정한다.</p> <p>② 제1항중 대리(직위승진) 및 5급(직급) 승진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중 인사위원회의 결격사유 심사로 진급을 정한다.</p> <p>제12조(고과평가) ① 직원은 연 1회 별표 제1호의 인사고과평가표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일로 하여 인사고과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는 승진 및 승급, 교육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p> <p>② 인사고과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1차 평가자는 위임전결내규 직상위자로 하며, 2차 평가자는 차상위자로 한다.</p> <p>제13조(정기승진, 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1개 호봉 승급 소요기간은 12개월로 한다.</p> <p>② 직원은 직급승진시 승급과 그 해당하는 호봉의 1호봉을 승급한다.</p> <p>③ 승진, 승급 심사는 매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기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4조(특별승진, 진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승진, 진급 외에 특별승진 및 진급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 연맹의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p>② 특별승진 및 승급시에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여</p>	<p>별히 정해진 기일이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봉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승진 및 평가</p> <p>제11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12조를 근거로 상임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회장이 정한다. 단, 과장(직위승진) 및 4급(직급) 승진은 위임전결내규에 따라 상임부회장이 정한다.</p> <p>② 제1항중 대리(직위승진) 및 5급(직급) 승진은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중 인사위원회의 결격사유 심사로 진급을 정한다.</p> <p>제12조(고과평가) ① 직원은 연 1회 별표 제1호의 인사고과평가표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일로 하여 인사고과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는 승진 및 승급, 교육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p> <p>② 인사고과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1차 평가자는 위임전결내규 직상위자로 하며, 2차 평가자는 차상위자로 한다.</p> <p>제13조(정기승진, 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1개 호봉 승급 소요기간은 12개월로 한다.</p> <p>② 직원은 직급승진시 승급과 그 해당하는 호봉의 1호봉을 승급한다.</p> <p>③ 승진, 승급 심사는 매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기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4조(특별승진, 진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승진, 진급 외에 특별승진 및 진급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 연맹의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p>② 특별승진 및 승급시에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여 1호봉 승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호봉 승급한다.</p> <p>제15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책된지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봉된지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지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제16조(교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한다.</p> <p>②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기간이 계속 1 주일 이상 일 때에는 인사기록 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회장은 근무성적이 낮은 자에 대하여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직 제</p> <p>제17조(직능분류) ①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직 2. 사무직 3. 기능직 <p>② 별정직은 본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채용, 보직, 급여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p> <p>③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8조(기구) ① 본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에 부,과를 둘 수 있다.</p> <p>③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p> <p>제19조(정원) ① 사무처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p> <p>② 본 연맹의 정원은 별표 제4호와 같다.</p> <p>제20조(분장업무 및 전결사항) ① 각 부서의 분장업</p>	<p>제15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책된지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봉된지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직된 자로 복직된지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제16조(교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한다.</p> <p>②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기간이 계속 1 주일 이상 일 때에는 인사기록 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회장은 근무성적이 낮은 자에 대하여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직 제</p> <p>제17조(직능분류) ① 직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직 2. 사무직 3. <삭제 2025. 3. 6.> <p>② 별정직은 본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채용, 보직, 급여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p> <p>③ 사무직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3. 6.></p> <p>제18조(기구) ① 본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에 부,과를 둘 수 있다.</p> <p>③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p> <p>제19조(정원) ① 사무처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p> <p>② 본 연맹의 정원은 별표 제4호와 같다.</p> <p>제20조(분장업무 및 전결사항) ① 각 부서의 분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승마장 폐쇄에 따른 기능직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인사위원회</p> <p>제2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부회장 중 1인), 부위원장(전무이사),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본 위원회의 운영은 제2항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장 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0. 1. 28. 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00. 1. 28.)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장 직제에 관한 사항 중 조직, 정원, 직제 관련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5. 6. 27. 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05. 6. 27.)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9. 2. 12. 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09. 2. 12.)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0. 2. 2. 개정)</p>	<p>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인사위원회</p> <p>제2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부회장 중 1인), 부위원장(전무이사),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본 위원회의 운영은 제2항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장 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0. 1. 28. 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00. 1. 28.)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장 직제에 관한 사항 중 조직, 정원, 직제 관련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5. 6. 27. 개정)</p> <p>이 규정은 이사회(2005. 6. 27.)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09. 2. 12. 개정)</p> <p>이 규정은 이사회(2009. 2. 12.)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0. 2. 2. 개정)</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0. 2. 2.)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1. 2. 23.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1. 2. 2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2. 2. 6.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2. 2. 6.)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4. 2. 13.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4. 2. 1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4. 9. 16.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4. 9. 16.)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5. 2.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8. 12.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0. 11.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1.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5.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p>	<p>이 규정은 이사회(2010. 2. 2.)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1. 2. 23.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2011. 2. 2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2. 2. 6.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2012. 2. 6.)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4. 2. 13.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2014. 2. 13.)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4. 9. 16.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2014. 9. 16.)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5. 2. 24.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18. 12. 5.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0. 11. 27.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1. 28.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5. 31.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8.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2. 2.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 전 인사.복무규정은 2022년 정기이사회 의결 후 인사규정과 징계규정, 취업규칙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 제13조(정기승진, 승급)제2항은 2023년 승진, 승급 대상부터 적용하며, 2022년 승진, 승급 대상은 승진 시 1호봉 하락을 적용한다.</p> <p>부 칙 (2024. 7.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1. 8. 27.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2. 2.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 전 인사.복무규정은 2022년 정기이사회 의결 후 인사규정과 징계규정, 취업규칙으로 하여 시행한다. ② 제13조(정기승진, 승급)제2항은 2023년 승진, 승급 대상부터 적용하며, 2022년 승진, 승급 대상은 승진 시 1호봉 하락을 적용한다.</p> <p>부 칙 (2024. 7. 29.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25. 3. 6.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표 제1호 매년 시행</p> <table border="1" data-bbox="797 1050 1406 1246"> <thead> <tr> <th colspan="2">대한근대5총연맹 (사무처)인사고과평가표</th> <th>차 장</th> <th>부 장</th> <th>처 장</th> <th>부회장</th> </tr> </thead> <tbody> <tr> <td>성 명</td> <td></td> <td colspan="4">고과기간 : 20 . . . ~ 20 . . . 까지</td> </tr> <tr> <td>부서/직급</td> <td></td> <td colspan="4">주요업무</td> </tr> <tr> <td>입사/승진</td> <td></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p>	대한근대5총연맹 (사무처)인사고과평가표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성 명		고과기간 : 20 . . . ~ 20 . . . 까지				부서/직급		주요업무				입사/승진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대한근대5총연맹 (사무처)인사고과평가표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성 명		고과기간 : 20 . . . ~ 20 . . . 까지																								
부서/직급		주요업무																								
입사/승진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구분	요 소	요 소 내 용	배점	1차	2차	평균
사무수행능력	직무이행	담당직무를 기간 내에 확실하고 순서 있게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	10			
	수행능력	업무의 정확성이 뛰어나고 업무의 내용도 충실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0			
	이해판단력	담당직무나 상사의 지시에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판단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업무속도	업무속도가 뛰어나고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0			
	책임적극성	업무수행에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하는 자세와 맡은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가?	10			
	조직기여도	상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능력 및 동료나 상하간 또는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10			
근무태도	성실성	담당직무에 충실한 복무규율 및 제반 근무상황은 어떠한가?	10			
	책임감	맡은 바 주어진 일은 어떠한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마무리 짓는다.	10			
	적극성	솔선수범하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10			
	창의성	업무추진 방법에 대해 연구,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높인다.	10			
	신뢰성	담당 업무를 성실히 끝까지 수행하여 신뢰와 믿음을 준다.	10			
	원가절감	작업개선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절감에 노력한다.	10			
합 계			120			
조정점수(평가점수/120점×100)			100			

종합평가

구 분	종합의견	직 급	성 명
1차 평가자		직상위	
2차 평가자		차상위자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별표 제2호

출장봉명서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출 장 자	부 서		성 명	
	직 위			
기 간				
출장목적				
수행사항				
특기사항				

위와 같이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복 명 자 : (서명)

별표 제3호<개정 2025. 3. 6.>

▷ 사무처 : 직위 및 직급 승진

직위 승진 (인사명령)	년차	직책 수당	직급 승진 (진급)	년차	호봉 등급
직원 → 대리	2년 이상	-	6급 → 5급	2년 이상	1등급 승진
대리 → 과장	4년 이상	-	5급 → 4급	4년 이상	"
과장 → 차장	5년 이상	-	4급 → 3급	5년 이상	"
차장 → 부장	5년 이상	지급	3급 → 2급	5년 이상	"
부장 → 국장 및 처장	-	"	2급 → 1급	3년 이상	"

본 연맹 인사 규정 (2024. 7. 29.)	본 연맹 인사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별표 제4호<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data-bbox="824 427 1126 459">구 분</th> <th data-bbox="1131 427 1435 459">인 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24 462 1126 491">사 무 직</td> <td data-bbox="1131 462 1435 491">10</td> </tr> </tbody> </table> <p>※ 정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10명 : 사무처장 1, 직원 9 (국제, 운영, 훈련, 홍보·마케팅, 경리 등) ○ 부별 중간관리자(과장, 차장, 부장, 단장, 국장) <p>1인을 둘 수 있다.</p>	구 분	인 원	사 무 직	10	
구 분	인 원					
사 무 직	10					

취업 규칙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취업 규칙 대조표

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	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연맹’이라한다.)의 정관 제 9장 규정에 의거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다르게 정의하는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p> <p>제3조(근로조건외의 시간비례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복 무</p> <p>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연맹의 사명을 깊게 인식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 2.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할 것 3. 본 연맹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직원간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 것 5.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본 연맹의 비밀 및 경영상 모든 자료가 업무 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6. 본 연맹의 허가 없이 사내에 업무상 관계없는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지 말 것 7. 본 연맹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집회나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말 것. 단 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근대5종연맹(이하‘본연맹’이라한다.)의 정관 제 9장 규정에 의거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 또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다르게 정의하는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p> <p>제3조(근로조건외의 시간비례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복 무</p> <p>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연맹의 사명을 깊게 인식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 2. 신의를 숭상하고 품성을 도야할 것 3. 본 연맹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직원간의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 것 5.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본 연맹의 비밀 및 경영상 모든 자료가 업무 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 6. 본 연맹의 허가 없이 사내에 업무상 관계없는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지 말 것 7. 본 연맹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집회나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지 말 것. 단 특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p> <p>8. 본 연맹의 허가 없이 본 연맹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p> <p>9.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p> <p>10. 본 연맹의 시설, 장비, 제품 기타의 비품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을 기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1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12. 이 규칙 이외의 본 연맹의 규정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지 말 것</p> <p>제5조(신고) 직원은 주소가 변경되거나 개명을 하는 등 개인 신상 및 기타 이력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사출입) ① 직원은 지정 출입구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경비 원의 업무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정의 출입절차에 불응하는 자 2. 소속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 3.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4.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안전 또는 위생상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근 태</p> <p>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한다. 단, 개별 근로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②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p>	<p>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p> <p>8. 본 연맹의 허가 없이 본 연맹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p> <p>9.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p> <p>10. 본 연맹의 시설, 장비, 제품 기타의 비품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을 기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1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p> <p>12. 이 규칙 이외의 본 연맹의 규정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지 말 것</p> <p>제5조(신고) 직원은 주소가 변경되거나 개명을 하는 등 개인 신상 및 기타 이력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사출입) ① 직원은 지정 출입구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경비 원의 업무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정의 출입절차에 불응하는 자 2. 소속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 3.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4.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안전 또는 위생상 유해하거나 유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근 태</p> <p>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 까지로 한다. 단, 개별 근로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②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할 수 있으나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통상근무자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기준 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p>③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부여한다. 단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업 및 종업시간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의무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및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선택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p>할 수 있으나 회사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통상근무자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기준 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p>③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부여한다. 단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업 및 종업시간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의무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및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선택근로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p> <p>제11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본 연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p> <p>제13조(근태) ① 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근무장소에 도착하여 시업시각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외 사유로 외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4조(재택근무) ① 본 연맹은 필요한 경우 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업무외 상병자가 근로가 가능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병가 대신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15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본 연맹에 알리고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본 연맹은 전 항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종료 시각</p> <p>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p> <p>제11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p> <p>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본 연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p> <p>제13조(근태) ① 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근무장소에 도착하여 시업시각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외 사유로 외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4조(재택근무) ① 본 연맹은 필요한 경우 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업무외 상병자가 근로가 가능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병가 대신자택에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15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본 연맹에 알리고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본 연맹은 전 항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휴일 및 휴가</p> <p>제16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일요일 제외) 3. 본 연맹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 본 연맹이 정한 휴일 <p>②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다. 단,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p> <p>제17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 <p>② 휴가시 연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한다.</p> <p>제18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3년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휴일 및 휴가</p> <p>제16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일요일 제외) 3. 본 연맹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 본 연맹이 정한 휴일 <p>②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다. 단,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한다.</p> <p>제17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특별휴가 <p>② 휴가시 연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한다.</p> <p>제18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3년이상 계속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보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p>⑥ 다음 각 호로 인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을 산정 시 근무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무 기간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p>⑦ 제2항의 연가일수의 가산은 당해 직원의 최초 임용일이 당해연도 1월 3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1월 4일이후인 경우에는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 연차일수의 계산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른다.</p> <p>⑧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전 반차 : 09:00~14:00(12:00~13:00 휴게) 2. 오후 반차 : 14:00~18:00 <p>제1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병가는 3일이상 신청하는 자와 연간 누계 3일이상인 자는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p>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병가를 부여한다.</p> <p>제2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p>	<p>신청이 있을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보수 규정에 의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기간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p>⑥ 다음 각 호로 인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을 산정 시 근무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무 기간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p>⑦ 제2항의 연가일수의 가산은 당해 직원의 최초 임용일이 당해연도 1월 3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부터, 1월 4일이후인 경우에는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 연차일수의 계산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른다.</p> <p>⑧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전 반차 : 09:00~14:00(12:00~13:00 휴게) 2. 오후 반차 : 14:00~18:00 <p>제1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병가는 3일이상 신청하는 자와 연간 누계 3일이상인 자는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p>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병가를 부여한다.</p> <p>제2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p>제21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직원이 인사규정에 의거 표창을 받는 경우(회장 이상)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명예·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장기근속자 10년 3일, 20년 5일 <p>제22조(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본 연맹은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휴가의 허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제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휴 직</p> <p>제24조(휴직사유, 기간 및 제출서류) 직원이 일정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사유, 각 사유별 기간 및 제출</p>	<p>서 본 연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p>제21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직원이 인사규정에 의거 표창을 받는 경우(회장 이상) 3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명예·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장기근속자 10년 3일, 20년 5일 <p>제22조(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본 연맹은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휴가의 허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제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휴 직</p> <p>제24조(휴직사유, 기간 및 제출서류) 직원이 일정 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p>	

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	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	비 고
<p>서류는 별표 제2호와 같다.</p> <p>제25조(휴직의 신청 및 승인) ①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개시 7일 전까지 <u>총무</u>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u>총무</u>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p>④ 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며 미 복귀 시 결근처리한다.</p> <p>제26조(휴직의 연장) 복직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제25조와 같다.</p> <p>제27조(복직신청) ① 복직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복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 혹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복직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업무 외 부상 등으로 인한 신병휴직 시 :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교통사고로 인한 신병휴직 시 :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본인진술서, 진료비 영수증, 손해보험 가입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3. 징집 소집으로 인한 휴직시 : 징소집해제 증명서 4. 민형사 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소시 : 출소증명서 <p>제28조(복직의 승인) <u>총무</u>부서는 복직가능 여부를</p>	<p>을 명할 수 있다. 휴직사유, 각 사유별 기간 및 제출 서류는 별표 제2호와 같다.</p> <p>제25조(휴직의 신청 및 승인) ①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개시 7일 전까지 <u>운영</u>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6.></p> <p>② <u>운영</u>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25. 3.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p>④ 휴직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며 미 복귀 시 결근처리한다.</p> <p>제26조(휴직의 연장) 복직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휴직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제25조와 같다.</p> <p>제27조(복직신청) ① 복직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복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 혹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복직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업무 외 부상 등으로 인한 신병휴직 시 :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교통사고로 인한 신병휴직 시 :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본인진술서, 진료비 영수증, 손해보험 가입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3. 징집 소집으로 인한 휴직시 : 징소집해제 증명서 4. 민형사 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소시 : 출소증명서 <p>제28조(복직의 승인) <u>운영</u>부서는 복직가능 여부를</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충분히 확인한 후에 복직을 승인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치여부, 재취업가능여부를 기입한 의사의 진단서, 휴직사유인 질환의 전염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제29조(미복직자의 처리) ① 휴직기간 만료 후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내에 휴직연장 또는 복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처리할 수 있다. ② 미복직자에 대한 퇴직처리 시 퇴직일은 퇴직명령일로 하며, 퇴직명령일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제30조(휴직기간 중 급여) ①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상 이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며,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까지 기본연봉 월액의 50%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휴직자의 신분 및 의무) 휴직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지만 직원으로서 신 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휴직 중이라도 취업규칙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2조(허위신고지 제재조치) 직원이 허위로 휴·복직사유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였거나, 허위사실을 묵인·동조한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지급받은 휴직급여는 전액 회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p> <p>제33조(출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p>	<p>충분히 확인한 후에 복직을 승인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치여부, 재취업가능여부를 기입한 의사의 진단서, 휴직사유인 질환의 전염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제29조(미복직자의 처리) ① 휴직기간 만료 후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내에 휴직연장 또는 복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처리할 수 있다. ② 미복직자에 대한 퇴직처리 시 퇴직일은 퇴직명령일로 하며, 퇴직명령일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제30조(휴직기간 중 급여) ①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상 이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며,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까지 기본연봉 월액의 50%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휴직자의 신분 및 의무) 휴직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지만 직원으로서 신 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휴직 중이라도 취업규칙 및 제반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2조(허위신고지 제재조치) 직원이 허위로 휴·복직사유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였거나, 허위사실을 묵인·동조한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지급받은 휴직급여는 전액 회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p> <p>제33조(출산전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p>	

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	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	비 고
<p>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는 사유로 전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 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본 조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직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p>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는 사유로 전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 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본 조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직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제35조(난임치료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p> <p>제36조(배우자출산휴가) ①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에게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p> <p>제37조(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p> <p>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8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p>	<p>제35조(난임치료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p> <p>제36조(배우자출산휴가) ①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에게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p> <p>제37조(가족돌봄휴가) ①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p> <p>③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8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p> <p>④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제4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p>	<p>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p> <p>④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제4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전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2조(태아검진시간)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신부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 횟수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임신 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부여 ② 본 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p> <p>제44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p> <p>제45조(임신 중인 직원의 시간외근로)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배치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급 여</p> <p>제46조(급여구분)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전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2조(태아검진시간)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신부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 횟수 및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임신 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부여 ② 본 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p> <p>제44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p> <p>제45조(임신 중인 직원의 시간외근로)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배치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급 여</p> <p>제46조(급여구분)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	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	비 고
<p>1. 기본급여 (본봉)</p> <p>2. 각종수당 가. 상여금 나. 년차수당 다. 중식비 라. 직책수당 마. 자기개발수당 바. 통신비</p> <p>3. 특별수당 사무처 직원이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입상 및 사업에 있어 연맹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4.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성과급 사무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7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퇴직 등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p> <p>제48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49조(호봉책정) ① 신규채용인 경우의 호봉책정은 직능 및 직급별로 규정된 최초의 호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 채용시에는 별표 제3호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하고, 승진(급)시 호봉 책정은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 초임호봉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잔여기간의 산정에 있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p> <p>제50조(기본급여) 직원의 기본급여 및 지급기준은</p>	<p>1. 기본급여 (본봉)</p> <p>2. 각종수당 가. 상여금 나. 년차수당 다. 중식비 라. 직책수당 마. 자기개발수당 바. 통신비</p> <p>3. 특별수당 사무처 직원이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입상 및 사업에 있어 연맹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4.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성과급 사무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7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퇴직 등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p> <p>제48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49조(호봉책정) ① 신규채용인 경우의 호봉책정은 직능 및 직급별로 규정된 최초의 호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 채용시에는 별표 제3호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하고, 승진(급)시 호봉 책정은 별표 제4호에 의한다. ② 초임호봉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잔여기간의 산정에 있어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p> <p>제50조(기본급여) 직원의 기본급여 및 지급기준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별표 제4호와 같다.</p> <p>제51조(상여금)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p> <p>제52조(직책수당)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한다.</p> <p>제53조(중식비) ①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중식비를 지급한다.</p> <p>제54조(자기개발수당 및 통신비) ① 직원에게는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개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맹 임.직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5조(임원의 보수 및 업무활동비) ① 상근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상 별</p> <p>제56조(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본 연맹의 예산절감과 업무수행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②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제57조(징계) ① 본 연맹은 직원이 이 규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반한 경우, 업무 저해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 징계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예방</p> <p>제58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별표 제4호와 같다.</p> <p>제51조(상여금)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p> <p>제52조(직책수당)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한다.</p> <p>제53조(중식비) ① 직원에게는 별표 제5호의 중식비를 지급한다.</p> <p>제54조(자기개발수당 및 통신비) ① 직원에게는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개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맹 임.직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5조(임원의 보수 및 업무활동비) ① 상근임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상 별</p> <p>제56조(표창)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본 연맹의 예산절감과 업무수행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②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제57조(징계) ① 본 연맹은 직원이 이 규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반한 경우, 업무 저해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 징계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예방</p> <p>제58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② 본 연맹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p> <p>제59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본 연맹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 내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p> <p>② 누구든지 다른 직원에 대하여 전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본 연맹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본 연맹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p>	<p>② 본 연맹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p> <p>제59조(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본 연맹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 내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p> <p>② 누구든지 다른 직원에 대하여 전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본 연맹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본 연맹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본 연맹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퇴 직</p> <p>제62조(퇴직) 퇴직은 의원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경영상 해고, 징계해고로 구분한다.</p> <p>제63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퇴직을 원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고 본 연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의원퇴직으로 한다.</p> <p>②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직원</p>	<p>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본 연맹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퇴 직</p> <p>제62조(퇴직) 퇴직은 의원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경영상 해고, 징계해고로 구분한다.</p> <p>제63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퇴직을 원하여 퇴직원을 제출하고 본 연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의원퇴직으로 한다.</p> <p>②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퇴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제64조(당연퇴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원의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2. 계약기간의 만료 3. 정년의 도래 <p>②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일이 6월 이전인 자는 만 60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6월30일 2. 생일이 7월 이후인 자는 만 60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12월31일 <p>제65조(직권면직) ① 본 연맹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허약, 노쇠, 질병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 한 자 3.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자 4.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5. 행방불명(법률상 사망 간주 의제 시점) 되었을 때 6.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7.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를 받은 때 8. 대기발령(직위해제) 중인 자가 3개월을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때 9. 기타 위에 준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p>② 전 항에 의해 직권면직된 자의 퇴직일은 직권면직이 결정되어 통보된 해고 일로 한다.</p> <p>제66조(징계해고)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로 본다.</p> <p>제67조(퇴직금)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p>	<p>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제64조(당연퇴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원의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2. 계약기간의 만료 3. 정년의 도래 <p>②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일이 6월 이전인 자는 만 60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6월30일 2. 생일이 7월 이후인 자는 만 60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12월31일 <p>제65조(직권면직) ① 본 연맹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허약, 노쇠, 질병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 한 자 3.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자 4.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지 않거나 규정된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5. 행방불명(법률상 사망 간주 의제 시점) 되었을 때 6.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7.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를 받은 때 8. 대기발령(직위해제) 중인 자가 3개월을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때 9. 기타 위에 준하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p>② 전 항에 의해 직권면직된 자의 퇴직일은 직권면직이 결정되어 통보된 해고 일로 한다.</p> <p>제66조(징계해고)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로 본다.</p> <p>제67조(퇴직금)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제68조(퇴직적립금)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에서 출연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p> <p>② 본 연맹은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금액은 직원 정원의 총급여 예산의 1개월분 평균급여로 한다.</p> <p>제69조(지급율) ①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로 한다.</p> <p>②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p> <p>제70조(근속연한 계정)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월수는 근무 월수만큼 계정한다.</p> <p>제71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p> <p>제72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p> <p>제73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단, 본 연맹과 직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4조(명예퇴직) 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p> <p>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명예퇴직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p>제68조(퇴직적립금)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에서 출연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p> <p>② 본 연맹은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금액은 직원 정원의 총급여 예산의 1개월분 평균급여로 한다.</p> <p>제69조(지급율) ①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로 한다.</p> <p>②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p> <p>제70조(근속연한 계정)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 월수는 근무 월수만큼 계정한다.</p> <p>제71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p> <p>제72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p> <p>제73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단, 본 연맹과 직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4조(명예퇴직) 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p> <p>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명예퇴직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④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p> <p>제75조(명예퇴직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5월 및 11월 각 1일부터 15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퇴직일은 명예퇴직이 결정된 당월 말일자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명예퇴직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76조(심사결정) ① 회장은 제75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p>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제6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p> <p>제77조(희망퇴직) 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p> <p>② 회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할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8조(희망퇴직신청 및 지급) ①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77조에 의한 기간 내에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희망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p> <p>③ 희망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79조(대상자통지) 회장은 제75조 및 제78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p>	<p>④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p> <p>제75조(명예퇴직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5월 및 11월 각 1일부터 15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퇴직일은 명예퇴직이 결정된 당월 말일자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명예퇴직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76조(심사·결정) ① 회장은 제75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p>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제6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p> <p>제77조(희망퇴직) 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p> <p>② 회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할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78조(희망퇴직신청 및 지급) ①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77조에 의한 기간 내에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희망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을 거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희망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p> <p>③ 희망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79조(대상자통지) 회장은 제75조 및 제78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여 비</p> <p>제80조(여비) ① 본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안전보건</p> <p>제81조(안전 및 보건) 본 연맹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직원은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2조(건강진단) ① 본 연맹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진단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④ 본 연맹은 건강진단결과 요주의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종전 환, 취업장소의 변경 또는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킬 수 있다.</p> <p>제83조(결과조치) 본 연맹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에 대하여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p> <p>제84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질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5조(안전보건교육) 본 연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 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p> <p>제86조(위험방호조치) ① 본 연맹은 법령에 따라 보건안전상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유해 위험작업</p>	<p>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여 비</p> <p>제80조(여비) ① 본 연맹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안전보건</p> <p>제81조(안전 및 보건) 본 연맹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직원은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2조(건강진단) ① 본 연맹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진단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④ 본 연맹은 건강진단결과 요주의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종전 환, 취업장소의 변경 또는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킬 수 있다.</p> <p>제83조(결과조치) 본 연맹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에 대하여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p> <p>제84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질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5조(안전보건교육) 본 연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 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p> <p>제86조(위험방호조치) ① 본 연맹은 법령에 따라 보건안전상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유해 위험작업</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한다. 보호구를 지급받은 직원은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직원은 위험한 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할 것 <p>제87조(작업환경 측정) ① 본 연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p> <p>② 본 연맹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재해보상</p> <p>제88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 직원 정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년 예산의 1개월분 평균 급여의 10분의 2를 계상하여 퇴직금 계정에 합산,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보 칙</p> <p>제89조(규정제정 및 준용) ① 본 연맹의 사무처리, 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처무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 2. 9. 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 전 인사.복무규정은 2022년 정기이사회 의결 후 인사규정과 징계규정, 취업규칙으로 하여 시행한다.</p>	<p>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한다. 보호구를 지급받은 직원은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직원은 위험한 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할 것 <p>제87조(작업환경 측정) ① 본 연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p> <p>② 본 연맹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재해보상</p> <p>제88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본 연맹 직원 정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년 예산의 1개월분 평균 급여의 10분의 2를 계상하여 퇴직금 계정에 합산,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보 칙</p> <p>제89조(규정제정 및 준용) ① 본 연맹의 사무처리, 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처무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 2. 9. 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 전 인사.복무규정은 2022년 정기이사회 의결 후 인사규정과 징계규정, 취업규칙으로 하여 시행한다.</p>	

본 연맹 취업 규칙 (2022. 2. 9.)	본 연맹 취업 규칙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5. 3. 6. 개정)</p> <p>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별표 제1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제2호

휴직사유별 기간 및 제출서류

휴 직 사 유	최 장 기 간	제 출 서 류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1년(각 3개월 이내로 2회 연장가능) * 각 부상(질병)별로 최장 1년6개월 사용가능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취업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3. 병역법, 전시동원령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징소집시	징소집기간	징소집 통지서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	자녀당 3년(2회 분할 사용 가능) * 단, 타 회사에서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생증명서 및 관련증빙서류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22조의 2에 의한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분할 사용 가능, 1회 분할 사용 시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증빙서류
6. 민·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소시(취업규칙 제3장에 의한 징계 가능)	형 확정 판결후 석방시 까지	재감확인서
7.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2개월 (1개월 이내로 1회 연장 가능)	소속팀장의 면담의견서 및 관련서류
8. 기타 회사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별표 제3호<개정 2025. 3. 6.>

경력 환산 기준표

구분	경력 내용	환산율
사무직	1.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임시직 공무원 제외) 2.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경력 3.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경력	50%

별표 제4호<삭제 2025. 3. 6.>

급여 지급 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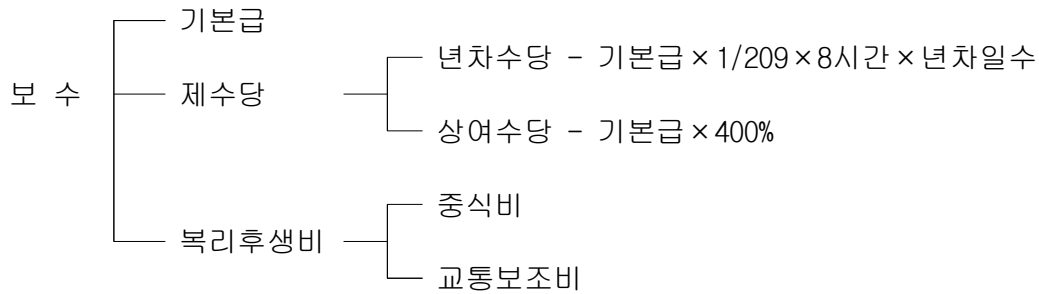
기본급 (본봉)

호봉	상임부회장	사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주1) 취업규칙 별표 제4호 급여기준표 개정은 이사회 예산 승인으로 개정

□ 보수체계 및 기준

▷ 보수=기본급+제수당+직책수당+복리후생비



- 기본급 : 본봉
 - 별정직 : 상임부회장 (회장 지명자)
 - 사무직 : 1급(사무처장 및 국장), 2급(부장),3급(차장),4급(과장),5급(대리),6급(직원)
 - * 초임 : 6급(1호봉)
- 제수당 : 년차수당 - 기본급 x1/209x8시간x년차일수(10+근무년수-1)
상여수당 - 기본급 x 400%
- 직책수당 : 처장 및 국장, 부장 지급
- 복리후생비 : 중식비 - 200,000원

별표 제4호<개정 2025. 3. 6.>

각종 수당 지급 기준표

1. 상여수당

구 분	지 급 내 역
전 직 원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간 400%

2. 근무시간외 수당 : 기본급과 그 기본급의 100분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직책수당

구 분	처 장 및 국 장	부 장
직책수당(월)	200,000	150,000

4. 중 식 비

구 분	금 액
전 직 원	월 200,000원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정년잔여개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left[\text{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times \left(60 + \frac{\text{정년잔여개월수} - 60}{2} \right) \right]$
3.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 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한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

휴 가 신 청 서	작 성 자	
	작성일자	20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 회 장
결					
재	/	/	/	/	/

성 명	
직 위	
휴가 종류	<input type="checkbox"/> 년차휴가 <input type="checkbox"/> 공가 <input type="checkbox"/> 병가 <input type="checkbox"/> 특별휴가 (비 고 :)
휴가 기간	20 년 월 일 부터 (일간) 20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 단
법 인 대 한 근 대 5 종 연 맹

휴 직 신 청 서	작 성 자	
	작성일자	20 . . .

결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 회 장
재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휴직기간	20 . . . ~ 20 . . .		
휴직사유			
업 무 인수인계			
인 계 자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 단
법 인 **대 한 근 대 5종 연 맹**

복직신청서	작성일자	20
	작성일자	20

결	담당	차장	부장	처장	부회장
재	/	/	/	/	/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복직희망일	20		
휴직기간	20 ~ 20		
휴직사유			
복직사유			
부서장 의견			

위와 같이 복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근대5중연맹**

퇴 직 신 청 서	작 성 자	
	작성일자	20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 회 장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입 사 일		퇴 직 예 정 일	

퇴 직 사 유

위와 같이 퇴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 단 법 인 **대 한 근 대 5 종 연 맹**

명 예 퇴 직 원	작 성 자	
	작성일자	20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입 사 일		명예퇴직일	

내 용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대한근대5중연맹회장 귀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자	
	작성일자	20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처장	부회장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내
용**

대한근대5종연맹 취업규칙 제75조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대한근대5종연맹회장 귀하

희 망 퇴 직 원	작 성 자	
	작성일자	20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입 사 일		희망퇴직일	

내 용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희망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대한근대5중연맹회장 귀하

희망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자	
	작성일자	20

결	담 당	차 장	부 장	처 장	부회장
재	/	/	/	/	/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근대5종연맹 취업규칙 제78조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 신청인 (서명)</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대한근대5종연맹회장 귀하</p>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여비 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여비 규정 대조표

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	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연맹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p> <p>제4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p> <p>제5조(신분 등 변경) 출장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p> <p>제6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p> <p>제7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이라 한다.) 사업비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연맹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p> <p>제4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p> <p>제5조(신분 등 변경) 출장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p> <p>제6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p> <p>제7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이라 한다.) 사업비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p> <p>③ 본연맹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본연맹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다.</p> <p>제9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국내 출장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p> <p>제11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p> <p>제13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p>	<p>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p> <p>③ 본연맹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본연맹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다.</p> <p>제9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국내 출장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p> <p>제11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p> <p>제13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내여비</p> <p>제14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의 국내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p> <p>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없는 경우 2.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p>④ 제3항에 의해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p>	<p>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내여비</p> <p>제14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의 국내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p> <p>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없는 경우 2.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p>④ 제3항에 의해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p> <p>⑦ 대회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한 출장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⑧ 교육출장 여비는 별도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내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p> <p>제15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p> <p>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서울시내 출장 중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p> <p>제17조(근거리 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국외여비</p> <p>제1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p>	<p>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p> <p>⑦ 대회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한 출장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⑧ 교육출장 여비는 별도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내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p> <p>제15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p> <p>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서울시내 출장 중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p> <p>제17조(근거리 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국외여비</p> <p>제1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3. 6.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3. 6. 27.> 2. <삭제 2023. 6. 27.> 3. <삭제 2023. 6. 27.> 4. <삭제 2023. 6. 27.> 5. <삭제 2023. 6. 27.> <p>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6. 27.]</p> <p>제19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p> <p>제21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p>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3. 6.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3. 6. 27.> 2. <삭제 2023. 6. 27.> 3. <삭제 2023. 6. 27.> 4. <삭제 2023. 6. 27.> 5. <삭제 2023. 6. 27.> <p>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6. 27.]</p> <p>제19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p> <p>제21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5. 그 밖의 수속 부대비</p> <p>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여행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본 연맹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목 및 전문개정 2023. 6. 27.]</p> <p>제23조(사후관리) <삭제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여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p>[제목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1. 2.23.)</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1. 2.2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4. 9.16.)</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4. 9.16)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7. 3. 9.)</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공정한 사무업무를 위해 전면 개정하며, 이사회(2017. 3. 9)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3. 2. 3.)</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23. 2. 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23. 2. 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3호, 제4호는 매년 사무처에서 내부결재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p>	<p>5. 그 밖의 수속 부대비</p> <p>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여행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본 연맹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목 및 전문개정 2023. 6. 27.]</p> <p>제23조(사후관리) <삭제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여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p>[제목개정 2023. 6.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1. 2. 23.)</p> <p>이 규정은 이사회(2011. 2.2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4. 9. 16.)</p> <p>이 규정은 이사회(2014. 9.16)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7. 3. 9.)</p> <p>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공정한 사무업무를 위해 전면 개정하며, 이사회(2017. 3. 9)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3. 2. 3.)</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23. 2. 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23. 2. 3.)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3호, 제4호는 매년 사무처에서 내부결재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본 연맹 여비 규정 (2023. 6. 27.)	본 연맹 여비 규정 개정 (2025. 3. 6.)	비 고
<p>다.</p> <p>부 칙(2023.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p> <p>부 칙(2023. 6.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25. 3.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 부칙 내 조항이 1개일 경우 조, 항 명시하지 않음</p>

별표 제1호<개정 2023. 2. 3.><개정 2023. 6. 27.>

국 내 여 비 정 액 표

(단위 : 원)

구분	종류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체 재 비			비고
						일 비	숙박비	식 비	
회 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숙박시설 실정에 따라 상한액 예외 인정	
상임부회 장 및 임원	실비 (특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전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지역 70,000)			

주 : 1) 자동차,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요금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개정 2023. 6. 27.>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US\$)

구 분	항공운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비 고
회 장	비즈니스 정 액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제1호의 나목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상임부회장	2등 정액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제1호의 다목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임원, 사무처장, 협력단장	2등 정액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제1호 라목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부장, 과장, 대리, 직원 등	2등 정액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제2호의 가목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 1)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2) 체재비의 가, 나, 다, 라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른다.
- 3)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2)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제3호<신설 2023. 2. 3.><개정 2025. 3. 6.>

각종 회의비 및 교통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회의비	교통비	비 고
대의원총회	100,000	별표 제4호 기준	
이사회	100,000	"	
회장 선거 회의	200,000	"	
연맹 분과위원회 등 (한시적 위원회 포함)	100,000	"	※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내부결재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지 실사 등	100,000 (회의진행시 지급)	"	

별표 제4호<신설 2023. 2. 3.><개정 2023. 6. 27.><개정 2025. 3. 6.>

교통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교통비	비 고
시내 교통비	30,000	※ 100km 이내
200km 미만	40,000	
300km 미만	50,000	
400km 미만	60,000	
400km 초과	70,000	

※ 거리측정(왕복) : 회의 또는 실사 등 개최하는 장소 기준으로 하나, 시·도로 기준을 정리한다.

ex) 서울특별시(출발) → 대구광역시(도착)

※ 차량 이동의 경우 상기 교통비 지급 기준표 적용

※ 실비 : 영수증 제출

※ 도서지역(제주)의 경우 항공료(실비)와 시내 교통비를 지급

※ 단, 대회참관 임원(부회장 이상<무직자>)에 대해 왕복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사)대한근대5종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대조표

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	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비 고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근대5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를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명예의 전당에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현액함으로써 근대5종 영웅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스포츠인의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근대5종 영웅선정위원회) ① 연맹은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에 대해 식견이 높은 스포츠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근대5종 영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7조 및 제39조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연맹의 상벌을 다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운영을 대신할 수 있다.</p> <p>제3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담당부서장으로 한다.</p> <p>제4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의 근대5종 영웅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근대5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사를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명예의 전당에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현액함으로써 근대5종 영웅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스포츠인의 사기진작 및 성취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근대5종 영웅선정위원회) ① 연맹은 대한민국 근대5종 영웅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스포츠 전반에 대해 식견이 높은 스포츠계, 학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근대5종 영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37조 및 제39조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연맹의 상벌을 다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운영을 대신할 수 있다.</p> <p>제3조(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담당부서장으로 한다.</p> <p>제4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의 근대5종 영웅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p> <p>제6조(근대5종 영웅 선정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수, 스포츠 공헌자(지도자, 스포츠행정가, 스포츠언론인, 스포츠외교가 등)중 1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7조(근대5종 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선양을 했거나 한국 근대5종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근대5종인들의 귀감이 되고 근대5종인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 3.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 모델 기여도가 높은 사람 4. 선수는 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9조제2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p>제8조(근대5종 영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p>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p> <p>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p> <p>제6조(근대5종 영웅 선정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수, 스포츠 공헌자(지도자, 스포츠행정가, 스포츠언론인, 스포츠외교가 등)중 1명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7조(근대5종 영웅 후보 자격)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위선양을 했거나 한국 근대5종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근대5종인들의 귀감이 되고 근대5종인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 3.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 모델 기여도가 높은 사람 4. 선수는 공식 은퇴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제9조제2항의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인사, 스포츠 공헌자는 후보자 추천서 제출 마감일 기준 20년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만 60세 이전에 사망한 인사는 예외로 한다. <p>제8조(근대5종 영웅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근대5종 영웅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	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비 고
<p>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p> <p>제9조(근대5종 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연맹은 해당 연도 근대5종 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2. 추천단체: 각 시·도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3.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p>②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맹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10조(후보자 공고) ① 연맹 회장은 후보자 명단 및 업적자료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제11조(이의제기) ① 공고된 후보자 업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고일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p> <p>② 연맹은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로 후보자 제외 등 필요한 조치</p>	<p>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p> <p>제9조(근대5종 영웅 후보자 추천권자) ① 연맹은 해당 연도 근대5종 영웅 선정계획을 상반기 중 선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천권: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2. 추천단체: 각 시·도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3.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p>② 제1항의 각 추천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맹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10조(후보자 공고) ① 연맹 회장은 후보자 명단 및 업적자료를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제11조(이의제기) ① 공고된 후보자 업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고일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p> <p>② 연맹은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로 후보자 제외 등 필요한 조치</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를 할 수 있다.</p> <p>제12조(후보자 평가)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후보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후보자 명단을 선정위원회에 제공한다.</p> <p>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국위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근대5종인의 ‘지지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다.</p> <p>④ 연맹은 제3항의 지지도 평가를 위하여 연맹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을 활용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p> <p>1. 정성평가(70퍼센트):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p> <p>2. 정량평가(30퍼센트): 지지도 조사 점수</p> <p>제13조(근대5종 영웅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제12조제5항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p> <p>1.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정한다.</p> <p>2.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p> <p>② 연맹은 근대5종 영웅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③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지지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제14조(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 등) ① 선정위원회는 근대5종 영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후 스포츠</p>	<p>를 할 수 있다.</p> <p>제12조(후보자 평가)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후보자 추천 사유가 포함된 후보자 명단을 선정위원회에 제공한다.</p> <p>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국위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근대5종인의 ‘지지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다.</p> <p>④ 연맹은 제3항의 지지도 평가를 위하여 연맹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을 활용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p> <p>1. 정성평가(70퍼센트): 선정위원회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p> <p>2. 정량평가(30퍼센트): 지지도 조사 점수</p> <p>제13조(근대5종 영웅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제12조제5항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평가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근대5종 영웅으로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다.</p> <p>1.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정한다.</p> <p>2. 다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p> <p>② 연맹은 근대5종 영웅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영웅의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③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 선정위원회 평가점수, 지지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제14조(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 등) ① 선정위원회는 근대5종 영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후 스포츠</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즉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 선정위원회는 취소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청문 참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단서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④ 근대5종 영웅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근대5종 영웅 자격을 상실한다.</p> <p>제15조(사업) 연맹은 영웅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영웅을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영웅 명예의 전당(홈페이지) 운영 2. 근대5종 영웅 홍보 및 연수활동 3. 그 밖에 근대5종 영웅을 기리기 위한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5. 2.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5. 2. 28.)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의 영웅의 명예의 전당은 연맹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로 운영하고, 영웅의 명예의 전당 현액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게시한다.</p> <p>② 2025년 정기이사회에서 동 규정 승인과 함께 금번에 한해 정성평가(7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영웅을 선정, 명예의 전당에 현액하며, 이사회 심의·의결로 2인 이상을 영웅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대5종 영웅 선정 취소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즉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 선정위원회는 취소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청문 참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단서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④ 근대5종 영웅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근대5종 영웅 자격을 상실한다.</p> <p>제15조(사업) 연맹은 영웅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영웅을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대5종 영웅 명예의 전당(홈페이지) 운영 2. 근대5종 영웅 홍보 및 연수활동 3. 그 밖에 근대5종 영웅을 기리기 위한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5. 3. 6.)</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5. 3. 6.)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의 영웅의 명예의 전당은 연맹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로 운영하고, 영웅의 명예의 전당 현액 선정사유 및 업적자료 등을 게시한다.</p> <p>② 2025년 정기이사회에서 동 규정 승인과 함께 금번에 한해 정성평가(7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영웅을 선정, 명예의 전당에 현액하며, 이사회 심의·의결로 2인 이상을 영웅으로 선정할 수 있다.</p>	

**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

**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비 고

[별표 1]

[별표 1]

정성평가(업적평가)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정성평가(업적평가)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성평가 (70%)	①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후진양성 및 교육, 사회발전 기여도 경기력 향상 및 행정, 재정기여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5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25점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② 국위선양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활약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스포츠 위상 기여도 한국 체육사의 국가 위상 기여도 국내 스포츠인들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③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헌신도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상징성 사회적 모범 인물로서의 지속적인 품위 유지 및 영향력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④ 환경적 제약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적 제약 극복을 통한 본인 및 해당 종목(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기여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문화 형성 기여도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역사 개척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소계			70점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배점												
정성평가 (70%)	① 국내 근대5종 발전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활성화 및 대중화 기여도 후진양성 및 교육, 사회발전 기여도 경기력 향상 및 행정, 재정기여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5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25점
	배점척도	S	A	B	C	D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② 국위선양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활약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스포츠 위상 기여도 한국 체육사의 국가 위상 기여도 국내 스포츠인들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③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헌신도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상징성 사회적 모범 인물로서의 지속적인 품위 유지 및 영향력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④ 환경적 제약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적 제약 극복을 통한 본인 및 해당 종목(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기여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문화 형성 기여도 해당 종목(분야)에서의 역사 개척도 <table border="1"> <tr> <td>배점척도</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배점척도	S	A	B	C	D										
	15점	12점	9점	6점	3점										
소계			70점												

본 연맹 근대5종 영웅 선정 규정 (2025. . .)				본 연맹 영웅 선정 규정 (2025. 3. 6.)				비 고										
[별표 2] 정량평가(지지도 조사)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2] 정량평가(지지도 조사)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평가 항목	중점 사항	평가 고려사항				
정량평가 (30%)	인지도	○ 지지도		정량평가 (30%)	인지도	○ 지지도		정량평가 (30%)	인지도	○ 지지도		정량평가 (30%)	인지도	○ 지지도				
		배점 척도	100명 이상 참여 30점			참여자 수 100명	배점 척도			100명 이상 참여 30점	참여자 수 100명			배점 척도	100명 이상 참여 30점	참여자 수 100명		
[별표 3] 근대5종 영웅 선정				[별표 3] 근대5종 영웅 선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추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권자 :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 체육단체 : 시도 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추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권자 :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 체육단체 : 시도 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추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권자 :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 체육단체 : 시도 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추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권자 :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수위원회 위원 ○ 체육단체 : 시도 연맹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회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권자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권자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권자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		(서면) 추천권자			
	후보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 : 선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30%) : 지지도 조사(홈페이지 및 SNS)		선정 절차	후보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 : 선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30%) : 지지도 조사(홈페이지 및 SNS)	선정 절차	후보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 : 선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30%) : 지지도 조사(홈페이지 및 SNS)	선정 절차	후보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 : 선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30%) : 지지도 조사(홈페이지 및 SNS)	
	근대5종 영웅 추천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합산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근대5종 영웅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				선정 절차	근대5종 영웅 추천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합산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근대5종 영웅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		선정 절차		근대5종 영웅 추천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합산점수(70점 이상)를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근대5종 영웅 이사회 추천 대상으로 선정		선정 절차	근대5종 영웅 추천대상 선정

2024년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사단
법인 대한근대5종연맹

목 차

사 업 보 고 서	1
○ 국 내 대 회	2
○ 국 제 대 회	2
○ 훈 련 사 업	3
○ 국 내.외 회 의	5
○ 국 내.외 대 회 개 인 별 팀 별 성 적 내 역	17
결 산 서	87
○ 재 무 상 태 표	88
○ 손 익 계 산 서	91
기 금 적 립 현 황	118
자 산 관 리 대 장	122

2024년

사업보고서

2024 사업 보고서

구 분	번호	사 업 명	기 간	장 소	주 최	참가규모	비 고
국내대회	1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 13. ~ 6. 18.	전남, 해남	본 연 맹	16개시.도 / 1,039명	
	2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3. 14. ~ 3. 19.	경북, 문경	본 연 맹	16개시.도 / 917명	
	3	제43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	7. 26. ~ 7. 31.	강원, 홍천	본 연 맹	16개시.도 / 802명	
	4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8. 23. ~ 8. 28.	강원, 인제	본 연 맹	16개시.도 / 1,002명	
	5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0. 11. ~ 10. 17.	경상남도	대한체육회	16개시.도 / 370명	
	6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 24. ~ 5. 26.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16개시.도 / 185명	
	기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4. 28. ~ 5. 3.	전북, 완주	한국실업연맹	16개시.도 / 108명	팀 대 항 (지 원 사 업)
	기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4. 24. ~ 4. 28.	전북, 완주	한국학생연맹	16개시.도 / 513명	팀 대 항 (지 원 사 업)
	기타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 1. ~ 4. 4.	울산스포츠과학고	체육고등학교협의회	16개시.도 / 251명	팀 대 항 (지 원 사 업)
국제대회	1	제1차 월드컵	3. 5. ~ 3. 10.	이집트 (카 이 로)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5 선수 7(남 3, 여 4)
	2	제2차 월드컵	4. 15. ~ 4. 21.	튀르키예 (앙 카 라)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6 선수 8(남 4, 여 4)
	3	제3차 월드컵	4. 23. ~ 4. 28.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6 선수 8(남 4, 여 4)
	4	제4차 월드컵	5. 7. ~ 5. 13.	불가리아 (소 피 아)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5 선수 6(남 3, 여 3)
	5	월드컵 결승	5. 21. ~ 5. 26.	튀르키예 (앙 카 라)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6 선수 5(남 2, 여 3)
	6	세계선수권	6. 8. ~ 6. 16.	중국 (정 저 우)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9 선수 8(남 4, 여 4)
	7	세계청소년(U21)	6. 25. ~ 6. 30.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3 선수 8(남 4, 여 4)
	8	파리올림픽	8. 8. ~ 8. 11.	프랑스 (파 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206개국 / 10,500명	지도자 7 선수 4(남 2, 여 2)

2024 사업보고서

구분	번호	사업명	기간	장소	주최	참가규모	비고	
	9	세계청소년(U17)	9. 10. ~ 9. 15.	포르투갈 (칼다스 다 하이냐)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3 선수 8(남 4, 여 4)	
	10	세계청소년(U19)	9. 23. ~ 9. 29.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국제연맹 (UIPM)	30개국 / 150명	지도자 3 선수 8(남 4, 여 4)	
	11	아시아선수권대회(U19)	4. 10. ~ 4. 15.	대한민국 (화성)	아시아연맹 (AMPC)	14개국 / 203명	지도자 5 선수 16(남 8, 여 8)	
	12	아시아선수권대회	4. 10. ~ 4. 15.	대한민국 (화성)	아시아연맹 (AMPC)	14개국 / 203명	지도자 5 선수 16(남 8, 여 8)	
훈련사업	1	국가대표 국내훈련	1. 1. ~ 12. 31. (250일)	국군체육부대	본연맹	26명 (지도자 10, 선수 16)	체육기금	
	2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1차	4. 12. ~ 4. 29. (17일)	튀르키예, 헝가리	"	14명 (지도자 5, 트레이너 1, 선수 8)	"	
	3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2차	5. 5. ~ 5. 28. (23일)	불가리아, 프랑스, 튀르키예	"	11명 (지도자 4, 트레이너 1, 선수 6)	"	
	4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3차	4. 17. ~ 5. 2.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	13명 (지도자 4, 트레이너 1, 선수 8)	"	
	6	국가대표 파트너선수 합동훈련	7. 1. ~ 7. 26. (19일)	국군체육부대	"	64명 (지도자 10, 선수 54)	체육기금 및 자체	
	7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8. 1. ~ 8. 14. (14일)	국군체육부대	본연맹	16명 (지도자 2, 트레이너 1, 선수 13)	체육기금	
	8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2. 14. ~ 2. 27. (14일)	국군체육부대	본연맹	18명 (지도자 3, 선수 15)	"	
	9	청소년대표 하계합숙훈련	7. 31. ~ 8. 23. (14일)	충남체육고등학교	본연맹	19명 (지도자 3, 트레이너 1, 선수 15)	"	
	11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8. 1. ~ 8. 14. (14일)	전남, 해남	본연맹	25명 (지도자 4, 트레이너 1, 선수 20)	"	
	12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1. 11. ~ 24. (14일)	전남, 해남	본연맹	24명 (지도자 5, 선수 19)	"	
	육성 지원사업	1	시.도 지부 및 산하연맹체	1. 1. ~ 12. 31.	-	본연맹	산하지부	16개 시.도지부 및 산하연맹체 예산지원
		2	꿈나무 및 선수 육성	1. 1. ~ 12. 31.	-	"	남.여 초등부 및 여자부 선수	
	3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	6. 1. ~ 12. 31.	-	"	청소년 체육활동	전문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2024 사업 보고서

구 분	번호	사 업 명	기 간	장 소	주 최	참가규모	비 고
		(여학생스포츠교실)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 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대의원총회	1	정기대의원총회	2024. 2. 2.	올림픽파크텔	본 연맹	18인(14/4)	<input type="checkbox"/> 2023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가. 원안 승인																																																																																																															
이사회	1	정기이사회	2024. 2. 1.	올림픽파크텔	본 연맹	26인(15/11)	<input type="checkbox"/> 2023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과실금 사용(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3 정기유공 포상자 추천 심의(안) 가. 아래와 같이 의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5%;">기분</th> <th style="width: 5%;">인원</th> <th style="width: 5%;">성별</th> <th style="width: 40%;">추천명단</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경기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최우수선수</td> <td>1</td> <td>1</td> <td>남자</td> <td>전용태(광주시청)</td> <td></td> </tr> <tr> <td rowspan="2">우수선수</td> <td rowspan="2">6</td> <td rowspan="2">3</td> <td>남자</td> <td>박세찬(경기체중), 이주찬(서울체고), 서창완(전남도청)</td> <td></td> </tr> <tr> <td>여자</td> <td>민소윤(서울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td> <td></td> </tr> <tr> <td>최우수단체</td> <td>1</td> <td>1</td> <td>남자</td> <td>한국체육대학교</td> <td></td> </tr> <tr> <td rowspan="2">우수단체</td> <td rowspan="2">6</td> <td rowspan="2">3</td> <td>남자</td> <td>경북체중, 경기체고, 국군체육부대</td> <td></td> </tr> <tr> <td>여자</td> <td>서울체중, 대전체고, 강원체육회</td> <td></td> </tr> <tr> <td>발전상</td> <td>각 부별 1팀</td> <td>3</td> <td></td> <td>부산체중, 대구체고, 대구시청</td> <td></td> </tr> <tr> <td>특별상</td> <td>-</td> <td>-</td> <td>여자</td> <td>성승민(한국체대)</td> <td></td> </tr> <tr> <td>지도자상</td> <td>3</td> <td>3</td> <td>남자</td> <td>정창순(한국체대, 지도자), 광동윤(대구시청, 감독), 이승현(전남도청, 지도자)</td> <td></td> </tr> <tr> <td>심판상</td> <td>3</td> <td>3</td> <td>남자</td> <td>장경훈(대전체중.고), 양선수(울산스포츠클럽), 임의택(광주체고)</td> <td></td> </tr> <tr> <td rowspan="4">공로상</td> <td rowspan="4">약 간 명</td> <td rowspan="4">11</td> <td rowspan="4">남자</td> <td>손영훈(서울연맹, 회장), 윤강(부산체고, 교감)</td> <td></td> </tr> <tr> <td>이상욱(대구체중.고, 교장), 이승환(광주연맹, 이사)</td> <td></td> </tr> <tr> <td>조창호(대전연맹, 이사), 이종우(충남연맹, 부회장)</td> <td></td> </tr> <tr> <td>전희섭(전남연맹, 부회장), 송창익(제주연맹, 이사)</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조용한(학생연맹, 부회장)</td> <td></td> </tr> <tr> <td>연구상</td> <td>-</td> <td>1</td> <td>여자</td> <td>양수진(LH, 과장)</td> <td></td> </tr> <tr> <td rowspan="2">체육장학생</td> <td rowspan="2">6</td> <td rowspan="2">1</td> <td>남자</td> <td>김태현(대전체중, 선수)</td> <td></td> </tr> <tr> <td>여자</td> <td>연주현(서울체중, 선수), 박유민(광주체중, 선수)</td> <td></td> </tr> <tr> <td>특별표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최우수시.도)</td> <td>1</td> <td>-</td> <td>-</td> <td>경기도근대5종연맹</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분	인원	성별	추천명단	비고	경기상						최우수선수	1	1	남자	전용태(광주시청)		우수선수	6	3	남자	박세찬(경기체중), 이주찬(서울체고), 서창완(전남도청)		여자	민소윤(서울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		최우수단체	1	1	남자	한국체육대학교		우수단체	6	3	남자	경북체중, 경기체고, 국군체육부대		여자	서울체중, 대전체고, 강원체육회		발전상	각 부별 1팀	3		부산체중, 대구체고, 대구시청		특별상	-	-	여자	성승민(한국체대)		지도자상	3	3	남자	정창순(한국체대, 지도자), 광동윤(대구시청, 감독), 이승현(전남도청, 지도자)		심판상	3	3	남자	장경훈(대전체중.고), 양선수(울산스포츠클럽), 임의택(광주체고)		공로상	약 간 명	11	남자	손영훈(서울연맹, 회장), 윤강(부산체고, 교감)		이상욱(대구체중.고, 교장), 이승환(광주연맹, 이사)		조창호(대전연맹, 이사), 이종우(충남연맹, 부회장)		전희섭(전남연맹, 부회장), 송창익(제주연맹, 이사)						조용한(학생연맹, 부회장)		연구상	-	1	여자	양수진(LH, 과장)		체육장학생	6	1	남자	김태현(대전체중, 선수)		여자	연주현(서울체중, 선수), 박유민(광주체중, 선수)		특별표장						(최우수시.도)	1	-	-	경기도근대5종연맹	
구분	기분	인원	성별	추천명단	비고																																																																																																																	
경기상																																																																																																																						
최우수선수	1	1	남자	전용태(광주시청)																																																																																																																		
우수선수	6	3	남자	박세찬(경기체중), 이주찬(서울체고), 서창완(전남도청)																																																																																																																		
			여자	민소윤(서울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																																																																																																																		
최우수단체	1	1	남자	한국체육대학교																																																																																																																		
우수단체	6	3	남자	경북체중, 경기체고, 국군체육부대																																																																																																																		
			여자	서울체중, 대전체고, 강원체육회																																																																																																																		
발전상	각 부별 1팀	3		부산체중, 대구체고, 대구시청																																																																																																																		
특별상	-	-	여자	성승민(한국체대)																																																																																																																		
지도자상	3	3	남자	정창순(한국체대, 지도자), 광동윤(대구시청, 감독), 이승현(전남도청, 지도자)																																																																																																																		
심판상	3	3	남자	장경훈(대전체중.고), 양선수(울산스포츠클럽), 임의택(광주체고)																																																																																																																		
공로상	약 간 명	11	남자	손영훈(서울연맹, 회장), 윤강(부산체고, 교감)																																																																																																																		
				이상욱(대구체중.고, 교장), 이승환(광주연맹, 이사)																																																																																																																		
				조창호(대전연맹, 이사), 이종우(충남연맹, 부회장)																																																																																																																		
				전희섭(전남연맹, 부회장), 송창익(제주연맹, 이사)																																																																																																																		
				조용한(학생연맹, 부회장)																																																																																																																		
연구상	-	1	여자	양수진(LH, 과장)																																																																																																																		
체육장학생	6	1	남자	김태현(대전체중, 선수)																																																																																																																		
			여자	연주현(서울체중, 선수), 박유민(광주체중, 선수)																																																																																																																		
특별표장																																																																																																																						
(최우수시.도)	1	-	-	경기도근대5종연맹																																																																																																																		
							<input type="checkbox"/> 2024 전국대회 유치시도 선정(안)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 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안) 가. 원안 승인																														
이사회	2	제2차 임시이사회	2024. 3. 8.	화상회의	본 연맹	26인(17/9)	<input type="checkbox"/> 2024 국가대표 지도자 추가 선발(안) 가. 원안 승인																														
이사회	3	제3차 임시이사회	2024. 7. 29.	홍천 종합체육관	본 연맹	25인(15/10)	<input type="checkbox"/> 국제연맹 임원 출마 후보자 추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승마장 자산 처리(안) 가. 수정 의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성명</th> <th style="width: 40%;">소속 및 직위</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외부위원</td> <td>김일홍</td> <td>㈜연호스, 대표</td> <td></td> </tr> <tr> <td>이대연</td> <td>태흥교역, 대표</td> <td></td> </tr> <tr> <td>박철규</td> <td>J&C 동물병원, 원장</td> <td></td> </tr> <tr> <td>전재식</td> <td>前 한국마사회, 감독</td> <td></td> </tr> <tr> <td>이재훈</td> <td>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td> <td></td> </tr> <tr> <td rowspan="3">내부위원</td> <td>김영선</td> <td>본 연맹, 부회장</td> <td></td> </tr> <tr> <td>최재근</td> <td>국군체육부대, 감독</td> <td></td> </tr> <tr> <td>추 천</td> <td>미 정</td> <td>시·도연맹 관계자</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장애물 구조물 처리(안) 가. 1안(한국체대 기준) 의결 <input type="checkbox"/> 국군체육부대 훈련용 구조물 지원 검토(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외부위원	김일홍	㈜연호스, 대표		이대연	태흥교역, 대표		박철규	J&C 동물병원, 원장		전재식	前 한국마사회, 감독		이재훈	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		내부위원	김영선	본 연맹, 부회장		최재근	국군체육부대, 감독		추 천	미 정	시·도연맹 관계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외부위원	김일홍	㈜연호스, 대표																																			
	이대연	태흥교역, 대표																																			
	박철규	J&C 동물병원, 원장																																			
	전재식	前 한국마사회, 감독																																			
	이재훈	대한승마협회, 사무처장																																			
내부위원	김영선	본 연맹, 부회장																																			
	최재근	국군체육부대, 감독																																			
	추 천	미 정	시·도연맹 관계자																																		
이사회	4	제4차 임시이사회	2024. 11. 4.	화상회의	본 연맹	24인(참 18, 불 6)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안) 가. 원안 승인																														
이사회	5	제5차 임시이사회	2024. 11. 26.	화상회의	본 연맹	24인(참, 불)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안) 가. 원안 승인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input type="checkbox"/> 승마장 자산 처리(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가. 지도자.심판 강습회 계획에 대해 차기 연도(2025) 사업계획을 검토 후 안내																																																				
스포츠공정위원회	1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1. 19.	본 연맹 회의실	본 연맹	9인(5/4)	<input type="checkbox"/> 훈련기간중 음주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 재심의(안) 가. 아래와 같이 의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No</th> <th>성명</th> <th>소속 및 직위</th> <th>조 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경호</td> <td>본 연맹, 전문위원</td> <td>대한체육회 훈련지침에 의거 결정</td> </tr> <tr> <td>2</td> <td>박강기</td> <td>서울체고, 지도자</td> <td>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사업 6개월 제외</td> </tr> <tr> <td>3</td> <td>김주옥</td> <td>본 연맹, 과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td> <td>김범준</td> <td>강원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td> </tr> <tr> <td>5</td> <td>조한서</td> <td>부산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td> </tr> <tr> <td>6</td> <td>이지호</td> <td>전남도청, 선수</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td> </tr> <tr> <td>7</td> <td>이환희</td> <td>서울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징계 제외 ※ 관계 없음</td> </tr> <tr> <td>8</td> <td>김나연</td> <td>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td> </tr> <tr> <td>9</td> <td>신지호</td> <td>한국체대, 선수</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td> </tr> <tr> <td>10</td> <td>이유빈</td> <td>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td> </tr> <tr> <td>11</td> <td>한소미</td> <td>광주체고, 선수</td> <td>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td> </tr> <tr> <td>12</td> <td>김민정</td> <td>전북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징계 제외 ※ 관계 없음</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김범준, 조한서, 김나연 선수는 상기 조치사항과 금년(2024) 이내 사회봉사(40시간) 이수 후 확인서 제출</p>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가. 금번 징계 재심의 결과를 상급기관에 회신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의결	No	성명	소속 및 직위	조 치	1	강경호	본 연맹, 전문위원	대한체육회 훈련지침에 의거 결정	2	박강기	서울체고, 지도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사업 6개월 제외	3	김주옥	본 연맹, 과장	-	4	김범준	강원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5	조한서	부산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	6	이지호	전남도청,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7	이환희	서울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징계 제외 ※ 관계 없음	8	김나연	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	9	신지호	한국체대,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0	이유빈	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1	한소미	광주체고,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2	김민정	전북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징계 제외 ※ 관계 없음
No	성명	소속 및 직위	조 치																																																								
1	강경호	본 연맹, 전문위원	대한체육회 훈련지침에 의거 결정																																																								
2	박강기	서울체고, 지도자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사업 6개월 제외																																																								
3	김주옥	본 연맹, 과장	-																																																								
4	김범준	강원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5	조한서	부산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																																																								
6	이지호	전남도청,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7	이환희	서울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징계 제외 ※ 관계 없음																																																								
8	김나연	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1년 제외																																																								
9	신지호	한국체대,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0	이유빈	대구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1	한소미	광주체고, 선수	근대5종 국가대표(이하 포함) 선발 기회 및 각종 포상심의 6개월 제외																																																								
12	김민정	전북체고 졸업(한체대 입학예정)	징계 제외 ※ 관계 없음																																																								
스포츠공정위원회	2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2. 16.	서면결의	본 연맹	9인(5/4)	<input type="checkbox"/> 선수 구제 요청 심의(안) 가. 원안 승인																																																				
스포츠공정위원회	3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3. 13.	서면결의	본 연맹	9인(5/4)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스포츠공정위원회	4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5. 29.	우리금융아트홀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 선수에 대한 경기실적 제외 검토(안) 가. 결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대상</th> <th style="width: 20%;">소속</th> <th style="width: 50%;">의결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대상	소속	의결내용																																																	
대상	소속	의결내용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신지원	경기체고	연맹 주최대회 개인.단체.릴레이 실적 제외 ※ 지원대회는 주최측에서 정리	
							신지원	경기체고	연맹 주최대회 개인.단체.릴레이 실적 제외 ※ 지원대회는 주최측에서 정리	
							피해선수	대회 출전선수	행정절차 미숙에 의한 피해선수 금번에 한해 구제, 차후 발생시 실책 제외	
							시.도연맹 및 산하단체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내용 즉시 보고	
							서울연맹	-	시정조치 및 경고 통보	
스포츠공정위원회	5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6. 7.	서면결의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안) 가. 원안 승인			
스포츠공정위원회	6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10. 25.	벨로드롬 회의실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윤리센터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안) 가. 최은중, 안창식 출석통보 후 차기 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대회기간 중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징계 검토(안) 가. 참고인으로 최재근 출석통보, 이정항, 유현석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차기 위원회 징계 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7	제7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11. 15.	벨로드롬 회의실	본 연맹	9인(5/4)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대회기간 중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안) 가. 차기 위원회 심의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윤리센터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안) 가. 차기 위원회 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8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 11. 29.	벨로드롬 회의실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대한체육회 체육상 추천(안) 가. 원안 승인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분	번호	회의명	일정	장소 및 방법	주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요 회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대회기간 중 승부조작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안) 가. 의결 결과 1) 경고 조치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No</th> <th>성명</th> <th>소속 및 직위</th> <th>결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이정향</td> <td>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td> <td>서면 경고 조치</td> <td></td> </tr> <tr> <td>2</td> <td>유현석</td> <td>한국체육대학교, 선수</td> <td>서면 경고 조치</td> <td></td> </tr> </tbody> </table> 2) 심판 조치 사항 - 모든 근대5종 심판위원회 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윤리센터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안) 가. 의결 결과 1) 징계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No</th> <th>성명</th> <th>소속 및 직위</th> <th>결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송주식</td> <td>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감독</td> <td>단체 임원 자격 정지</td> <td>3개월</td> </tr> </tbody> </table>	No	성명	소속 및 직위	결과	비고	1	이정향	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	서면 경고 조치		2	유현석	한국체육대학교, 선수	서면 경고 조치		No	성명	소속 및 직위	결과	비고	1	송주식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감독	단체 임원 자격 정지	3개월																																																														
No	성명	소속 및 직위	결과	비고																																																																																										
1	이정향	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	서면 경고 조치																																																																																											
2	유현석	한국체육대학교, 선수	서면 경고 조치																																																																																											
No	성명	소속 및 직위	결과	비고																																																																																										
1	송주식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감독	단체 임원 자격 정지	3개월																																																																																										
스포츠공정위원회	9	제9차 스포츠공정위원회		벨로드롬 회의실	본 연맹	9인(/)	<input type="checkbox"/> 각종 규정 제·개정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정기 유공 포상 추천 심의(안) 가. 원안 승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기분</th> <th>인원</th> <th>성별</th> <th>추천명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경기상</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최우수선수</td> <td>1</td> <td>1</td> <td>여</td> <td>성승민(한국체대)</td> <td></td> </tr> <tr> <td>6</td> <td>3</td> <td>남</td> <td>이현서(서울체중), 임태경(경기체고), 서창완(국군체육부대)</td> <td></td> </tr> <tr> <td rowspan="2">우수선수</td> <td>(남3, 여3)</td> <td>3</td> <td>여</td> <td>이루리(광주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td> <td></td> </tr> <tr> <td>1</td> <td>1</td> <td>남</td> <td>한국체육대학교</td> <td></td> </tr> <tr> <td rowspan="2">최우수단체</td> <td>6</td> <td>3</td> <td>남</td> <td>부산체중, 경기체고, 광주시청</td> <td></td> </tr> <tr> <td>(남3, 여3)</td> <td>3</td> <td>여</td> <td>광주체중, 경기체고, 경기도청</td> <td></td> </tr> <tr> <td>발전상</td> <td>각 부별 1팀</td> <td>3</td> <td>-</td> <td>서울체중, 경북체중, 원주군청</td> <td></td> </tr> <tr> <td>지도자상</td> <td>3</td> <td>3</td> <td>남</td> <td>이중협(송학건설), 전정민(전남체고)</td> <td></td> </tr> <tr> <td rowspan="2">심판상</td> <td rowspan="2">3</td> <td>2</td> <td>남</td> <td>서석현(강원체육회), 전서윤(경남체고)</td> <td></td> </tr> <tr> <td>1</td> <td>여</td> <td>김상희(제주체육회)</td> <td></td> </tr> <tr> <td rowspan="4">공로상</td> <td rowspan="4">약간명</td> <td rowspan="4">9</td> <td>남</td> <td>정홍중(대전연맹, 이사), 피인호(충남연맹, 이사)</td> <td></td> </tr> <tr> <td>남</td> <td>박현민(전남체중, 교사), 고영민(제주연맹, 이사)</td> <td></td> </tr> <tr> <td>남</td> <td>황인규(실업연맹, 회장), 임승백(학생연맹, 부회장)</td> <td></td> </tr> <tr> <td>여</td> <td>장덕선(서울연맹, 부회장), 김아름(광주연맹, 이사)</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김윤숙(경남연맹, 이사)</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분	인원	성별	추천명단	비고	경기상						최우수선수	1	1	여	성승민(한국체대)		6	3	남	이현서(서울체중), 임태경(경기체고),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우수선수	(남3, 여3)	3	여	이루리(광주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		1	1	남	한국체육대학교		최우수단체	6	3	남	부산체중, 경기체고, 광주시청		(남3, 여3)	3	여	광주체중, 경기체고, 경기도청		발전상	각 부별 1팀	3	-	서울체중, 경북체중, 원주군청		지도자상	3	3	남	이중협(송학건설), 전정민(전남체고)		심판상	3	2	남	서석현(강원체육회), 전서윤(경남체고)		1	여	김상희(제주체육회)		공로상	약간명	9	남	정홍중(대전연맹, 이사), 피인호(충남연맹, 이사)		남	박현민(전남체중, 교사), 고영민(제주연맹, 이사)		남	황인규(실업연맹, 회장), 임승백(학생연맹, 부회장)		여	장덕선(서울연맹, 부회장), 김아름(광주연맹, 이사)					김윤숙(경남연맹, 이사)	
구분	기분	인원	성별	추천명단	비고																																																																																									
경기상																																																																																														
최우수선수	1	1	여	성승민(한국체대)																																																																																										
	6	3	남	이현서(서울체중), 임태경(경기체고),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우수선수	(남3, 여3)	3	여	이루리(광주체중), 신수민(서울체고), 김선우(경기도청)																																																																																										
	1	1	남	한국체육대학교																																																																																										
최우수단체	6	3	남	부산체중, 경기체고, 광주시청																																																																																										
	(남3, 여3)	3	여	광주체중, 경기체고, 경기도청																																																																																										
발전상	각 부별 1팀	3	-	서울체중, 경북체중, 원주군청																																																																																										
지도자상	3	3	남	이중협(송학건설), 전정민(전남체고)																																																																																										
심판상	3	2	남	서석현(강원체육회), 전서윤(경남체고)																																																																																										
		1	여	김상희(제주체육회)																																																																																										
공로상	약간명	9	남	정홍중(대전연맹, 이사), 피인호(충남연맹, 이사)																																																																																										
			남	박현민(전남체중, 교사), 고영민(제주연맹, 이사)																																																																																										
			남	황인규(실업연맹, 회장), 임승백(학생연맹, 부회장)																																																																																										
			여	장덕선(서울연맹, 부회장), 김아름(광주연맹, 이사)																																																																																										
			김윤숙(경남연맹, 이사)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연구상						
							연구상	-	-				
							체육장학생	6 (중 3, 고3)	1	남	강지민(귀일중)		
									1	여	이호연(제주사대부고)		
							특별표장						
							(최우수시.도)	1	-		경기도근대5종연맹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감사패)	-	2				
							(특별표장)		8		최은중(경기도청, 감독), 김성진(국가대표, 감독)		
											김기만(국가대표, 펜싱코치), 최경민(신경주대학교, 교수)		
											이상미(국가대표, 펜싱코치), 전은희(국가대표, 펜싱코치)		
											임경수(국가대표, 트레이너), 이지영(국가대표, 트레이너)		
							계		44				
경기력향상위원회	1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 5.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2024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선발 계획(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2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 23.	화상회의	본 연맹	10인(9/1)	<input type="checkbox"/> 2024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부상 선수 일시제외 검토(안) 가. 1안(일시제외)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3	제3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2. 1.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2024 국가대표 지도자 추가 선발 계획(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4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3. 3.	국군체육부대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후보선수 이하 우수선수 선발 계획(안) 가. 선발 적용대회에 학생연맹 포함, 금년도 대회 성적으로 기록 분석 <input type="checkbox"/> 국제대회(아시아선수권, 세계청소년) 파견 선수 선발 계획(안) 가. 아시아선수권(U19) 원안 승인 가. 아시아선수권(시니어) 국가대표 2진 선발 : 회장배대회 대학.일반부 5종 상위자 순으로 선발 가. 세계청소년선수권(U17, U19) 선발 : 2024 연맹 주최대회 2개, 학생연맹 평균점수와 장애물 경기 합산 기록 선발 가. 세계청소년선수권(U21) 선발 : 7월 중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하여 선발 가. 국제대회 파견 지도자 선발 :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4	제4-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3. 13.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2024 국제대회 파견 선수 선발계획 재심의(안)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 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5	제5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3. 5.	화상회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2024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추가 선발(안) 가. 펜싱코치 전은희 선발, 트레이너 정창순 선발 <input type="checkbox"/> 파리올림픽 대비 골드프로젝트 사업 계획(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우수선수 선발 계획 재심의(안) 가. 2안(고등부 1학년 비율 조정, 2~3학년 기존대로 적용)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6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3. 8.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2024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선발 계획(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7	제7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3. 27.	화상회의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교체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선발 계획(안) 가. 공개채용 의결
경기력향상위원회	8	제8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5. 1.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2024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선발 계획(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21) 파견 지도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9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5. 10.	화상회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2024 파리올림픽 파견후보자 추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0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5. 22.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2024 꿈나무선수 선발방법 변경(안) 가. 원안 승인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요회의내용
경기력향상위원회	11	제1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6. 11.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파트너선수 선발 방법 및 훈련계획(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2	제1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6. 27.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대표 전문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후보선수 전문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2	제12-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7. 2.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6/4)	<input type="checkbox"/> 2024 꿈나무선수 트레이너 재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3	제13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7. 12.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7) 지도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4	제1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7. 15.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훈련파트너 선수 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5	제15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7. 26.	화양강호텔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기간 연장(안) 가. 연장 검토 <input type="checkbox"/> 2024 ~ 2025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계획(안) 가. 차기 위원회 심의 <input type="checkbox"/> 파리올림픽 이후 국가대표 운영 계획(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16	제16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8. 23.	인제체육관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9) 연구조사원 추천 요청(안) 가. 신승일 추천 의결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방법 및 채용공고(안) 가. 수정 의결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input type="checkbox"/> 2025 외국인 지도자 초청 계획(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2024 ~ 2025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계획(안) 가. 수정 의결																																								
경기력향상위원회	17	제17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9. 3.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8/2)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계획 변경(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가. 펜싱 지도자 3명도 부족하므로 펜싱 지도자 선발에 우선 순위 필요 가. 수영 지도자는 근대5종 경기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선발 필요 가. 연륜있고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 선발 필요 가. 기초종목(수영, 육상) 전문지도자 선발은 근대5종 지도자가 지도해야할 부분이며, 수영과 육상 종목 전문지도자와 지도 방법의 견해가 있어 반대																																								
경기력향상위원회	18	제18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0. 21.	서면결의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심의(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전임감독 선발 계획(안) 가. 수정 의결 <input type="checkbox"/> 영재 특별훈련 사업 대상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input type="checkbox"/>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포교류 사업 대상자 선발(안) 가. 수정 의결																																								
경기력향상위원회	19	제19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0. 22.	화상회의	본 연맹	9인(7/2)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최종 심의(안) 가. 지원자 14명 중 6명 합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No</th> <th>구분</th> <th>성명</th> <th>서류 및 면접</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감독</td> <td>김성진</td> <td>94.2</td> <td>합격</td> </tr> <tr> <td>2</td> <td>감독</td> <td>박강기</td> <td>93.2</td> <td>불합격</td> </tr> <tr> <td>3</td> <td>남자 코치</td> <td>안지훈</td> <td>53.8</td> <td>불합격</td> </tr> <tr> <td>4</td> <td>여자 코치</td> <td>정창순</td> <td>94.3</td> <td>합격</td> </tr> <tr> <td>5</td> <td>남자 펜싱</td> <td>김기만</td> <td>90.8</td> <td>합격</td> </tr> <tr> <td>6</td> <td>남자 펜싱</td> <td>이상미</td> <td>87.5</td> <td>불합격</td> </tr> <tr> <td>7</td> <td>여자 펜싱</td> <td>전은희</td> <td>85.7</td> <td>합격</td> </tr> </tbody> </table>	No	구분	성명	서류 및 면접	비고	1	감독	김성진	94.2	합격	2	감독	박강기	93.2	불합격	3	남자 코치	안지훈	53.8	불합격	4	여자 코치	정창순	94.3	합격	5	남자 펜싱	김기만	90.8	합격	6	남자 펜싱	이상미	87.5	불합격	7	여자 펜싱	전은희	85.7	합격
No	구분	성명	서류 및 면접	비고																																											
1	감독	김성진	94.2	합격																																											
2	감독	박강기	93.2	불합격																																											
3	남자 코치	안지훈	53.8	불합격																																											
4	여자 코치	정창순	94.3	합격																																											
5	남자 펜싱	김기만	90.8	합격																																											
6	남자 펜싱	이상미	87.5	불합격																																											
7	여자 펜싱	전은희	85.7	합격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의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8	9	10	11	12	13	14													
							8	남자 트레이너	김원규	68.7	불합격															
							9	남자 트레이너	이예찬	65	불합격															
							10	남자 트레이너	임창은	76	합격															
							11	남자 트레이너	채승현	66.1	불합격															
							12	여자 트레이너	김민주	47	불합격															
							13	여자 트레이너	오두리	65.3	불합격															
							14	여자 트레이너	홍은지	87	합격															
							※ 남자 코치 적격자 없어, 재공고 실시																			
경기력향상위원회	20	제20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1. 11.	서면결의	본 연맹	10인(7/3)	<input type="checkbox"/> 영재 특별훈련지원 사업 대상자 교체 선발(안) 가. 원안 승인																			
경기력향상위원회	21	제2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1. 25.	화상회의	본 연맹	9인(6/3)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안) 가. 결과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No</th> <th>구분</th> <th>성명</th> <th>서류+면접</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남자 코치</td> <td>박강기</td> <td>91</td> <td>합격</td> </tr> <tr> <td>2</td> <td>전담팀(수영)</td> <td>함찬미</td> <td>62.5</td> <td>추후 재심의</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2025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전문지도자 선발(안) 가. 원안 승인					No	구분	성명	서류+면접	비고	1	남자 코치	박강기	91	합격	2	전담팀(수영)	함찬미	62.5	추후 재심의
No	구분	성명	서류+면접	비고																						
1	남자 코치	박강기	91	합격																						
2	전담팀(수영)	함찬미	62.5	추후 재심의																						
경기력향상위원회	22	제2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024. 12. 3.	서면결의	본 연맹	9인(7/2)	<input type="checkbox"/> 국가대표 전담팀(수영) 지도자 재공고 심의(안) 가. 부결(채용 보류)																			
경기위원회	1	제1차 경기위원회	2024. 1. 8.	경남체고	본 연맹	14인(10/4)	<input type="checkbox"/> 근대5종 중등부 레이저런 경기방식 변경(안) 가. 2024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 후 2025년 시행 의결 <input type="checkbox"/> 근대5종 경기운영 방안 변경(안) 가. 차기 경기위원회 심의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 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input type="checkbox"/> 혼성 계주 정식종목 추가 계획(안) 가. 차기 경기위원회 심의 <input type="checkbox"/> 기타의견 가. 경기임원·심판위원·운영요원 등 운영 개선 방안은 지도자 강습회 기간 중 각 시도 의견 취합 후 개선책 마련
경기위원회	2	제2차 경기위원회	2024. 2. 26.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9/5)	<input type="checkbox"/> 2024 회장배대회 경기일정 조정(안) 심의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3	제3차 경기위원회	2024. 3. 6.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8/6)	<input type="checkbox"/>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 선발을 위한 회장배대회 참가신청 종별 변경(안)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4	제4차 경기위원회	2024. 5. 14.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9/5)	<input type="checkbox"/>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실적 기준 검토(안)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5	제5차 경기위원회	2024. 7. 1.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8/6)	<input type="checkbox"/> 국군체육부대 전역 선수에 대한 참가신청 기간 일시 연장(안)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6	제6차 경기위원회	2024. 7. 24.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8/6)	<input type="checkbox"/> 대한체육회장배대회 일정 연기 검토(안)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7	제7차 경기위원회	2024. 9. 24.	서면결의	본 연맹	14인(9/5)	<input type="checkbox"/>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일정 변경 검토(안) 가. 원안 승인
경기위원회	8	제8차 경기위원회	2024. 12. 10.	서면결의	본 연맹	13인(8/5)	<input type="checkbox"/> 2025 연맹 주최 대회 유치신청 심의(안) 가. 원안 승인
심판위원회	1	제1차 심판위원회	2024. 2. 27.	서면결의	본 연맹	11인(6/5)	<input type="checkbox"/>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안) 가. 원안 승인
심판위원회	2	제2차 심판위원회	2024. 3. 22.	서면결의	본 연맹	11인(7/4)	<input type="checkbox"/>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심판 구성(안) 가. 원안 승인
심판위원회	3	제3차 심판위원회	2024. 5. 21.	화상회의	본 연맹	11인(7/4)	<input type="checkbox"/>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심판비 지급(안) 가. 원안 승인
심판위원회	4	제4차 심판위원회	2024. 11. 25.	서면결의	본 연맹	6인(4/2)	<input type="checkbox"/> 2024 정기 유공 포상 심판부문 추천(안)

연맹 각종 회의 결과

구 분	번호	회 의 명	일 정	장 소 및 방 법	주 최	정원(참석 및 찬성)	주 요 회 의 내 용																									
							가. 원안 승인																									
인사위원회	1	제1차 인사위원회	2024. 9. 30.	벨로드룸 회의실	본 연맹	한시적 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원 징계 심의(안) 가. 아래와 같이 의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No</th> <th>성명</th> <th>직위</th> <th>사유</th> <th>징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태영</td> <td>사무처장</td> <td>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td> <td>감봉 3개월</td> </tr> <tr> <td>2</td> <td>여상경</td> <td>부장</td> <td>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td> <td>감봉 3개월</td> </tr> <tr> <td>3</td> <td>김주옥</td> <td>과장</td> <td>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td> <td>견 책</td> </tr> <tr> <td>4</td> <td>김효석</td> <td>직원</td> <td>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td> <td>경 고</td> </tr> </tbody> </table>	No	성명	직위	사유	징계	1	강태영	사무처장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	감봉 3개월	2	여상경	부장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	감봉 3개월	3	김주옥	과장	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	견 책	4	김효석	직원	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	경 고
No	성명	직위	사유	징계																												
1	강태영	사무처장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	감봉 3개월																												
2	여상경	부장	소속직원 관리감독 소홀	감봉 3개월																												
3	김주옥	과장	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	견 책																												
4	김효석	직원	직무 의무 위반 및 태만	경 고																												
인사위원회	2	제2차 인사위원회	2024. 12. 23.	벨로드룸 회의실	본 연맹	한시적 운영	<input type="checkbox"/> 직원 승진 심의(안) 가. 아래와 같이 의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head> <tr> <th>No</th> <th>성명</th> <th>직위</th> <th>승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강현경</td> <td>직원</td> <td>대리(5급)</td> <td></td> </tr> <tr> <td>2</td> <td>김효석</td> <td>직원</td> <td>대리(5급)</td> <td></td> </tr> </tbody> </table>	No	성명	직위	승진	비고	1	강현경	직원	대리(5급)		2	김효석	직원	대리(5급)											
No	성명	직위	승진	비고																												
1	강현경	직원	대리(5급)																													
2	김효석	직원	대리(5급)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024. 3. 14. ~ 3. 19. / 경북, 문경)	근대2종	남자 초등부A	개인	1	위지호	BCMP	450	
				2	김래온	광주연맹	297	
		여자 초등부A	개인	1	전연재	BCMP	449	
				2	이수하	노블 TNV	434	
				3	김주은	BCMP	236	
			단체	1	전연재 김주은	BCMP	685	
		남자 초등부B	개인	1	이우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68	
				2	백시우	경기 광주시체육회	554	
				3	이단우	국제스포츠클럽	548	
			단체	1	이우진 백시우 최지후 전민조	경기 광주시체육회	2,063	
		2		박준현 이유건 심규원 전도윤	월계수클럽	2,010		
			3	이단우 배서준 김준우	국제스포츠클럽	1,594		
		여자 초등부B	개인	1	조슬기	광남초	506	
				2	김윤하	서울교대부초	505	
3	이서울			NSF	47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단체	1	이서율 염효리 김서아	NSF	1,309	
				2	김윤하 유채민	서울교대부초	962	
		남자 초등부C	개인	1	이서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99	
				2	정우성	찬스아이	593	
				3	이정우	삼보초	584	
			단체	1	김주원 정주영 김주한 임현우	월계수클럽	2,068	
				2	박우현 강태욱 김태현 박준성	BCMP	1,982	
				3	이서진 신재우 전은조	경기 광주시체육회	1,697	
		남자 초등부	릴레이	1	김주한 임현우 정주영	월계수클럽	134	
				2	강태민 강태욱 김태현	BCMP	87	
		여자 초등부C	개인	1	이하진	NSF	572	
				2	김태희	우전초	567	
				3	이채윤	국제스포츠클럽	563	
			단체	1	이하진	NSF	2,052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김하늘 김미솔 김단아	BCMP	1,967			
				2	전소현 박소연 전은재 이다혜					
				3	류가원 오수현 신예지 나연이					
				여자 초등부	릴레이	1	박소연 이다희 전은재	BCMP	155	
						2	나연이 신예지 오수현	월계수클럽	115	
				혼성 초등부	릴레이	1	지병준 이채윤	국제스포츠클럽	531	
		2	김주원 류가원			월계수클럽	522			
		3	정시언 김윤하			서울교대부초	455			
		근대2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신현규	귀일중	640		
					2	강지민	귀일중	631		
					3	박울	서울체중	614		
				단체	1	전승훈 김해찬 이은호	NSF	2,18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1	김규민	귀일중	1,817			
				2	신현규 강지민 강지형					
				3	전하울 이현준 유승현					
				여자 중등부	개인	1	정예윤	경기 광주시체육회	579	
						2	김서현	태안여중	569	
						3	최은설	태안여중	551	
			단체	1	정예윤 김서윤 김서윤	경기 광주시체육회	1,565			
				2	김서현 최은설 박단아	태안여중	1,547			
				3	신민영 오유미	원봉중	685			
		근대3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박태준	부산체중	926		
					2	이현서	서울체중	912		
					3	김주원	전북체중	903		
				단체	1	박태준 정수영 양태준 하서진	부산체중	3,525		
					2	최주원 기예준 김준영 김지한	덕산중	3,482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이현서 김승우 김하람 지병찬	서울체중	3,403			
				릴레이	1	기예준 김준영 최주원	덕산중	796		
					2	박태준 정수영 하서진	부산체중	789		
						3	구강모 김동원 전효근	경북체중	776	
			여자 중등부	개인	1	이지아	광주체중	852		
					2	안효겸	부산체중	830		
					3	양보민	광주체중	825		
				단체	1	이지아 양보민 송현서 이루리	광주체중	3,288		
					2	김지윤 장서윤 유수인 이채윤	서울체중	3,104		
		3			안효겸 심소현 김수경 안정원	부산체중	3,071			
		릴레이	1	양보민	광주체중	696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1	이루리 이지아	부산체중	618		
				2	김수경 심소현 안효겸				
				3	양지우 장채윤 전도윤				
		혼성 중등부	릴레이	1	김주원 임영은	전북체중	784		
				2	양태준 안정원	부산체중	739		
				3	최성운 최민서	강원체중	704		
		근대3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박세찬	경기체고	921	
					2	신정석	강원체고	914	
					3	윤태성	경기체고	910	
	단체			1	박세찬 윤태성 최성용 이용빈	경기체고	2,739		
				2	박인찬 황대경 조정현 정지울	경북체고	2,596		
				2	최현규 김강영 박인욱	전남체고	2,596		
	근대3종	여자 고등부	개인	1	김태이	경기체고	818		
				2	구도영	강원체고	81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단체	3	서정아	충남체고	807			
				1	구도영 강예서 성경은	강원체고	2,191			
				2	서정아 홍세인 배효빈	충남체고	2,094			
				3	김태이 한인서	경기체고	1,613			
			근대4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신명오	광주체고	1,202	
						2	배준수	경기체고	1,200	
						3	이수성	서울체고	1,193	
					단체	1	배준수 김건하 강도훈	경기체고	3,575	
						2	이수성 안지우 이재민	서울체고	3,523	
	3	신명오 최지웅 방준서				광주체고	3,490			
	릴레이	1			김영하 조민우 허민준	전남체고	1,081			
		2			남호연 박건우 양우승	부산체고	1,064			
		3			방준서 신명오	광주체고	1,04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근대4종	여자 고등부	개인	1	전태환 김유리	경기체고	1,140		
				2	이가영	대구체고	1,077		
				3	한소미	광주체고	1,064		
			단체	1	김유리 김예림 정다민	경기체고	3,246		
				2	이가영 김가연 김세원	대구체고	3,026		
				3	주유정 이가현 박효빈	부산체고	2,861		
				릴레이	1	민소윤 윤혜진 한나연	서울체고	890	
					2	김예림 문소유 정다민	경기체고	880	
					3	김가연 김세원 이가영	대구체고	841	
			혼성 고등부	릴레이	1	박세찬 김유리	경기체고	1,069	
					2	최지웅 한소미	광주체고	1,029	
					3	서우성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952	
	근대4종	남자 대학부	개인	1	김범준	한국체대	1,12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김민식	한국체대	1,127	
			3	김대철	한국체대	1,101		
		단체	1	김범준 김민식 김대철	한국체대	3,356		
		남자 대학부	릴레이	1	김라온 이환희 조한서	한국체대	1,117	
				2	김유빈 신은석 이건희	한국체대	1,107	
				3	김준 김한성 신찬우	한국체대	1,072	
		여자 대학부	개인	1	박선하	한국체대	1,068	
		여자 대학부	릴레이	1	김나연 김예은 신지호	한국체대	847	
		남자 일반부	개인	1	전웅태	광주시청	1,232	
				2	김혜민	국군체육부대	1,226	
				3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218	
			단체	1	전웅태 성진수 김영석 윤상민	광주시청	3,570	
				2	박민성 박기수 윤병훈	경산시청	3,418	
				3	이동기	전남도청	3,410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릴레이	1	조예준 박상구 김영석 이현웅 전웅태	광주시청	1,144		
				2	김도윤 김승진 박우진	인천체육회	1,125		
				3	김대원 김동훈 김혜민	국군체육부대	1,118		
			여자 일반부	개인	1	한송이	충남도청	1,058	
					2	장하은	LH	1,045	
					3	김소원	충남도청	1,030	
				단체	1	한송이 김소원 서지영	충남도청	3,045	
					2	유수민 이예설 김선우	경기도청	2,038	
					3	장하은 한예원	LH	1,504	
		여자 일반부	릴레이	1	김선우 유수민 이예설	경기도청	825		
				2	김세희 박가연 최주혜	BNK	815		
		혼성 일반부	릴레이	1	이지훈	LH	1,046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장하은			
				2	김우철 이화영	완주군청	1,027	
				3	박동수 한송이	충남도청	1,019	
	근대5종	남자 대학부	개인	1	이환희	한국체대	1,501	
				2	조한서	한국체대	1,480	
				3	김유빈	한국체대	1,476	
			단체	1	이환희 조한서	한국체대	2,981	
				2	유현석 박민석	한국체대	2,934	
				3	김유빈 이건희	한국체대	2,924	
		여자 대학부	개인	1	김나연	한국체대	1,353	
				2	최인리	한국체대	1,250	
				3	김예은	한국체대	998	
			단체	1	최인리 김예은	한국체대	2,248	
				2	김나연 신지호	한국체대	1,840	
		남자 일반부	개인	1	김우철	완주군청	1,504	
				2	이진식	대전시청	1,501	
				3	김경환	경기도청	1,497	
			단체	1	김경환 정슬기	경기도청	2,991	
	2			김우철 김세동	완주군청	2,960		
	3			정진화	LH	2,95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 일반부	개인	1	이지훈 박가연	BNK	1,356	
				2	조하은	송학건설	1,301	
				3	민성진	전남도청	1,213	
			단체	1	박가연 최주혜	BNK	2,519	
				2	조하은 김은옥	송학건설	2,274	
				3	이화영 김예나	완주군청	2,269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2024. 4. 1. ~ 4. 4. / 울산광역시)	근대3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김영하	전남체고	946	
				2	최성용	경기체고	935	
				3	박세찬	경기체고	925	
			단체	1	최성용 박세찬 윤태성	경기체고	2,758	
				2	김영하 허민준 조민우	전남체고	2,756	
				3	문민수 김효현 신정석	강원체고	2,711	
		여자 고등부	개인	1	문소유	경기체고	808	
				2	구도영	강원체고	800	
				3	한인서	경기체고	795	
			단체	1	문소유 한인서 김태이	경기체고	2,391	
				2	구도영 강예서	강원체고	2,26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박효주			
				3	서정아 홍세인 배효빈	충남체고	2,189	
	근대4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양우승	부산체고	1,188	
2				이수성	서울체고	1,183		
3				임태경	경기체고	1,179		
단체			1	임태경 김건하 강도훈	경기체고	3,512		
			2	이수성 안지우 이재민 박민혁	서울체고	3,492		
			3	김지현 박인성 김민혁 박인찬	경북체고	3,439		
릴레이			1	강도훈 김건하 임태경	경기체고	1,117		
			2	곽동규 김영하 허민준	전남체고	1,096		
			3	안지우 이수성 이재민	서울체고	1,074		
		여자 고등부	개인	1	이가영	대구체고	1,076	
2				김예림	경기체고	1,068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단체	3	한소미	광주체고	1,064				
				1	전지우 한나연 윤혜진	서울체고	3,058				
				2	이가영 김가연 김세원	대구체고	2,987				
				3	박지원 송승화 정선유	전북체고	2,734				
			릴레이	1	윤혜진 전지우 한나연	서울체고	842				
				2	김가연 김세원 이가영	대구체고	827				
				3	김예림 문소유 정다민	경기체고	800				
			제26회 한국학생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024. 4. 24. ~ 4. 28. / 전북, 완주)	근대2종	남자 초등부A	개인	1	이강윤	사창초	476	
							2	이태윤	사창초	475	
							3	위지호	BCMP	452	
단체	1	김래온 이하준 윤재민 윤재우				광주연맹	1,045				
	2	이강윤 이태윤				사창초	951				
여자 초등부A	개인	1			이수하	노블 TNV	461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전연재	BCMP	443		
				3	김주은	BCMP	241		
			단체	1	전연재 김주은	BCMP	684		
		남자 초등부B	개인	1	이단우	국제스포츠클럽	561		
					2	이우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61	
					3	백시우	경기 광주시체육회	557	
				단체	1	이단우 배서준 김준우 김연석	국제스포츠클럽	2,047	
					2	박준현 이유건 심규원 전도윤	월계수클럽	2,037	
					3	이우진 백시우 최지후 전민조	경기 광주시체육회	1,668	
		여자 초등부B	개인	1	김윤하	서울교대부초	504		
					2	조슬기	광남초	491	
					3	유채민	서울교대부초	471	
				단체	1	김윤하 유채민	서울교대부초	975	
		남자 초등부C	개인	1	이서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99		
					2	정우성	찬스아이	598	
					3	김주원	월계수클럽	597	
				단체	1	김주원 정주영	월계수클럽	2,080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2	김주한 임현우	BCMP	1,985					
					강태욱 박우현 박준성 김태현							
					이서진 신재우 전은조							
				3	이서진 신재우 전은조	경기 광주시체육회	1,709					
					이하진				NSF	567		
					김태희				전주우전초	567		
			여자 초등부C	개인		1	박서연	서울화계초	563			
							단체	1	전소현 박소연 이다희 전은재	BCMP	2,049	
									2	류가원 신예지 오수현 나연이	월계수클럽	1,963
		3		이하진 김하늘	NSF	1,113						
		남자 중등부		개인		1	김범찬	NSF	621			
							2	전태주	전남체중	598		
			3				김건호	상현중	592			
			단체	1	전태주 박재한 서광진 김단오	전남체중	2,017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근대3종			2	최진우 김호인 노영재 장우진	덕산중	1,208		
				3	윤세진 송은준	귀일중	647		
				1	황가은	대천중	540		
			여자 중등부	개인	2	김서연	영동중	530	
		3			나해원	서천여중	475		
		1			이현서	서울체중	918		
			남자 중등부	개인	2	김주원	전북체중	916	
		3			박태준	부산체중	908		
		1			최주원 기예준 김지한 김준영	덕산중	3,463		
		단체			2	이현서 김승우 지병찬 김하람	서울체중	3,453	
	3				박태준 정수영 양태준 하서진	부산체중	3,423		
	1				박태준 양태준 정수영	부산체중	782		
		릴레이			2	구강모 김동원	경북체중	75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전효근 강지민 박진우 신현규	귀일중	756	
여자 중등부	개인	1	이지아	광주체중	847			
		2	안효겸	부산체중	838			
		3	장서윤	서울체중	823			
	단체	1	장서윤 김지윤 유수인 이채윤	서울체중	3,132			
		2	안효겸 심소헌 김수경 안정원	부산체중	3,119			
		3	이지아 이루리 송현서 한다예	광주체중	3,083			
	릴레이	1	송현서 이루리 이지아	광주체중	666			
		2	김수경 심소헌 안효겸	부산체중	617			
		3	박민채 정다혜 조서연	경북체중	460			
	남자 고등부	개인	1	임태경	경기체고	92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이용빈	경기체고	896	
				3	황대경	경북체고	892	
			단체	1	임태경 이용빈 강도훈	경기체고	1,820	
				1	이동규 유민성 이진서	경남체고	2,296	
			2	박민욱 김강영 최현규	전남체고	1,958		
			여자 고등부	개인	1	김예림	경기체고	819
		2			정다민	경기체고	793	
		3			이다온	강원체고	640	
			단체	1	김예림 정다민 김유리	경기체고	1,883	
				근대4종	개인	1	김건하	경기체고
		2	허민준			전남체고	1,191	
		3	이수성			서울체고	1,184	
		단체	1		허민준 김영하 조민우	전남체고	4,618	
			2		김건하 박세찬 최성용	경기체고	4,523	
			3		박인성 박인찬 김지현	경북체고	4,45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릴레이	1	곽동규 조민우 허민준	전남체고	1,075		
				2	김준형 이누리 조수호	경남체고	1,040		
				3	김지헌 박인성 박인찬	경북체고	1,029		
			여자 고등부	개인	1	신수민	서울체고	1,126	
					2	이가영	대구체고	1,062	
					3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1,047	
				단체	1	신수민 한나연 윤혜진	서울체고	3,091	
					2	이가영 김가연 김세원	대구체고	2,978	
					3	문소유 김태이 한인서	경기체고	2,977	
		릴레이			1	박효빈 이가현 주유정	부산체고	805	
			2	강예서 구도영	강원체고	791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장현서 김태이 문소유 한인서	경기체고	785		
		남자 대학부	개인	1	강성현	한국체대	1,153		
				2	김민식	한국체대	1,090		
				3	민성규	한국체대	996		
		단체	1	강성현 김민식 민성규	한국체대	3,239			
			릴레이	1	강성현 김유빈 이건희	한국체대	1,018		
				2	김대철 김범준 조한서	한국체대	984		
		3		김준 김한성 신찬우	한국체대	963			
		여자 대학부	개인	1	장윤희	한국체대	875		
		근대5종	남자 대학부	개인	1	이건희	한국체대	1,484	
					2	김유빈	한국체대	1,484	
	3				이환희	한국체대	1,480		
	단체			1	이건희 유현석 김범준	한국체대	2,912		
				2	박민석 장우혁 김대철	한국체대	2,889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여자 대학부	개인	3	신찬우 김준 김한성	한국체대	2,834	
				1	최인리	한국체대	1,274	
				2	김예은	한국체대	1,225	
			단체	1	최인리 김예은	한국체대	2,499	
제11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024. 4. 28. ~ 5. 3. / 전북, 완주)	근대4종	남자 일반부	개인	1	성진수	광주시청	1,193	
				2	김우철	완주군청	1,175	
				3	최창민	충남도청	1,170	
			단체	1	성진수 윤상민 김영석	광주시청	3,483	
				2	최창민 박동수 정영진	충남도청	3,475	
				3	김정섭 박주원	울산체육회	2,199	
			릴레이	1	이지훈 정진화	LH	1,147	
				2	박동수 최창민	충남도청	1,113	
				3	송인성 이정현	경기도청	1,097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소원	충남도청	1,055	
				2	한송이	충남도청	1,026	
				3	유수민	경기도청	1,023	
			단체	1	김소원 한송이	충남도청	3,047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서지영	경기도청	2,253	
				2	유수민 이예설 김선우			
				릴레이	1			
			2	유수민 이예설	경기도청	962		
			3	서지영 한송이	충남도청	937		
			2	남대경 소재영	경남체육회	1,032		
		혼성 일반부	릴레이	1	남대경 소재영	경남체육회	1,032	
				2	박상구 김선진	전남도청	1,015	
				3	정영진 김소원	충남도청	978	
		근대5종	남자 일반부	개인	1	정진화	LH	1,483
					2	이지훈	LH	1,479
					3	이정항	울산체육회	1,474
	단체				1	정진화 이지훈	LH	2,962
					2	이정항 송도훈	울산체육회	2,928
					3	김재학 이호렬	대구시청	2,905
	릴레이			1	김경환 김준영	경기도청	1,390	
				2	김재학 이호렬	대구시청	1,376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3	송도훈 이정향	울산체육회	1,352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예나	완주군청	1,327			
				2	이화영	전남도청	1,322			
				3	민성진	전남도청	1,313			
			단체	1	김예나 이화영	완주군청	2,649			
				2	민성진 공화영	전남도청	2,469			
				3	윤양지 정민지	대구시청	2,450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4. 5. 25. ~ 5. 28. / 전라남도)	근대3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이현서	서울	942			
				2	김주원	전북	932			
				3	김승우	서울	929			
					단체	1	박태준 정수영 하서진 양태준	부산	3,557	
				2		이현서 김승우 지병찬 김하람	서울	3,547		
				3		최주원 기예준 박소율 김준영	경기	3,501		
					릴레이	1	김승우 이현서 지병찬	서울	832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구강모 김동원 전효근	경북	799				
				3	박태준 정수영 하서진	부산	788				
		여자 중등부	개인	1	이루리	광주	862				
					2	김지윤	서울	854			
					3	안효겸	부산	846			
				단체	1	이루리 이지아 양보민 송현서	광주	3,351			
						2	김지윤 장서윤 유수인 이채윤	서울	3,188		
						3	안효겸 심소현 김수경 안정원	부산	3,140		
					릴레이	1	양보민 이루리 이지아	광주	675		
							2	김지윤 유수인 장서윤	서울	651	
							3	김수경 심소현	부산	575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024. 6. 13. ~ 6. 18. / 전남, 해남)	근대2종	남자 초등부A	개인	1	안효겸 이태윤	전남	497	
				2	이강윤	전남	487	
				3	위지호	경기	448	
			단체	1	이태윤 이강윤	전남	984	
				2	이하준 김래온	광주	729	
		여자 초등부A	개인	1	황채원	전남	478	
				2	이수하	경기	463	
				3	전연재	경기	454	
			단체	1	황채원 정유솔 김아윤	전남	1,291	
				2	이수하 전연제 김주은	경기	1,145	
		남자 초등부B	개인	1	이단우	인천	583	
				2	정시언	서울	583	
				3	이우진	경기	565	
단체	1		이우진 백시우 강태민 전주한	경기	2,122			
	2		박준현 이유건 심규원	부산	1,629			
	3		신준율 공태윤	전남	1,099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 초등부B	개인	1	고도현 이서울	경기	532		
				2	김윤하	서울	531		
				3	조슬기	부산	509		
			단체	1	김윤하 유채민 김라의 이시호	서울	1,763		
				2	이서울 염효리 기예나 김채영	경기	1,680		
				3	조슬기 김태하 오원지	부산	1,193		
			남자 초등부C	개인	1	이서진	경기	619	
					2	정우성	서울	618	
					3	김주원	부산	606	
		단체		1	이서진 신재우 전은조 박우현	경기	2,285		
				2	김주원 박지성 김주한 임현우	부산	2,201		
				3	정우성 배유안	서울	1,163		
		릴레이	1	배유안	서울	72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1	정시연 정우성	경기	677					
					박우현 신재우 전은조							
				3	박준현 박지성 이유건	부산	665					
				여자 초등부C	개인	1	이채윤	인천	577			
							2	류가원	부산	573		
		3	박서연				서울	572				
		단체	1		이하진 김하늘 전소현 박소연	경기	2,186					
					2				류가원 신예지 오수현 나연이	부산	2,103	
					3				김서울 이소윤 고은영			
		릴레이	1		강하늘 박소연 전소현	경기	631					
					2				김윤하 박서연 유채민	서울	584	
					3				김태린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혼성 초등부	릴레이	1	이한결 채지민 이서진 이하진	경기	819	
				2	김주원 류가원	부산	810	
				3	지병준 이채윤	인천	799	
		남자 중등부	개인	1	김범찬	경기	666	
				2	하서진	부산	660	
				3	김준영	경기	642	
			단체	1	전이안 김준석 이준빈 김다현	울산	2,426	
				2	김범찬 전승훈 김해찬 김규민	경기	2,380	
				3	하서진 김진우 최현서	부산	1,905	
		여자 중등부	개인	1	정예윤	경기	583	
				2	황가은	부산	579	
				3	김서연	서울	557	
			단체	1	정예윤 김서울 김서윤 구현서	경기	1,939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2	이채희 신예지 한서연 김유주	울산	1,825	
				3	김서연 김단아 이채윤	서울	1,630	
	근대3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이현서	서울	928	
				2	박태준	부산	917	
				3	김승우	서울	911	
			단체	1	박태준 양태준 정수영 경로검	부산	3,506	
				2	이현서 김승우 지병찬 박을	서울	3,492	
				3	기예준 최주원 김지한 박소울	경기	3,487	
			릴레이	1	박태준 양태준 하서진	부산	830	
				2	김승우 박을 이현서	서울	817	
				3	기예준	경기	81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김지한 최주원			
		여자 중등부	개인	1	김지윤	서울	849	
				2	안효겸	부산	840	
				3	이루리	광주	834	
			단체	1	안효겸 심소헌 안정원 김수경	부산	3,139	
				2	장채윤 양지우 전도윤 김서울	경기	3,105	
				3	김지윤 장서윤 유수인 천은빈	서울	3,069	
			릴레이	1	김지윤 유수인 장서윤	서울	649	
				2	양지우 장채윤 전도윤	경기	605	
				3	김수경 심소헌 안정원	부산	575	
			혼성 중등부	릴레이	1	경로겸 안효겸	부산	785
		2			김동원	경북	764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남자 고등부	개인	1	정다혜	경기	733			
				2	박소율					
				3	김서율					
			단체	1	최성용 박세찬 윤태성 한인준	경기	2,741			
				2	박종은 유민성 이진서	경남	2,438			
				3	강노을 정지율	경북	1,748			
				개인	1	한나연	서울	856		
					2	한인서	경기	823		
					3	김태이	경기	794		
			단체	1	한인서 김태이	경기	1,617			
				2	정서연 임서현	대구	909			
			근대4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김영하	전남	1,216	
						2	김건하	경기	1,208	
						3	양우승	부산	1,199	
	단체	1			김건하 임태경 강도훈	경기	3,594			
		2			이수성	서울	3,440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안지우 이재민	경북	3,408				
					박인찬 김민혁 김지현						
					강도훈 김건하 임태경						
			릴레이	1	김준형 이동규 조수호	경남	1,073				
					김강영 김영하 조민우						
					김유리				경기	1,127	
					이가영						
		민소윤									
		단체	1	김유리 김예림 문소유	경기	3,186					
				민소윤 전지우 윤혜진							
				이가영 김세원 김가연				대구	3,022		
		릴레이	1	김예림 김유리 문소유	경기	876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혼성 고등부	릴레이	2	김가연 김다현 김세원	대구	783	
				3	박은혜 양나경 이호연	제주	760	
				1	김민재 이지민	대전	1,026	
			2	문민수 구도영	강원	1,015		
			3	배준수 한인서	경기	1,005		
			남자 일반부	개인	1	이민서	부산	1,212
		2			소현석	경북	1,198	
		3			이은석	전남	1,192	
		단체		1	이민서 김라운 김혜민	부산	3,539	
				2	소현석 박기수 이주찬	경북	3,489	
				3	조한서 유현석 이건희	서울	3,473	
		릴레이		1	송도훈 이정항 정진화	울산	1,140	
				2	김대원 김동훈	경북	1,131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 일반부	개인	1	박기수 김영석 성진수 윤상민	광주	1,127			
				2	김소원	충남	1,057			
				3	윤양지	대구	1,053			
			단체	1	이예설	경기	1,051			
				1	이화영 김민정 김보경	전북	2,966			
				2	윤양지 정민지	대구	2,088			
			릴레이	3	이예설 유수민	경기	2,087			
				1	김세희 박가연 최주혜	부산	901			
				2	김은옥 이채민 조하은	광주	857			
		혼성 일반부	릴레이	3	공화영 김선진 민성진	전남	834			
				1	김우철 김예나	전북	1,074			
				2	이정헌 이예설	경기	1,064			
						3	김유빈 신지호	서울	1,062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근대5종	남자 일반부	개인	1	김용하	대전	1,510			
				2	김재학	대구	1,509			
				3	이우진	인천	1,495			
			단체	1	김용하 이종현	대전	3,004			
				2	이정항 송도훈	울산	2,974			
				3	손정욱 이기범	부산	2,951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예나	전북	1,277			
				2	조하은	광주	1,228			
				3	공화영	전남	1,171			
			단체	1	조하은 김은옥	광주	2,298			
				2	공화영 김선진	전남	2,233			
				3	최인리 신지호	서울	2,155			
		제43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 (2024. 7. 25. ~ 7. 31. / 강원, 홍천)	근대2종	남자 초등부A	개인	1	이태윤	사창초	510	
						2	이강윤	사창초	498	
						3	위지호	BCMP	440	
단체	1				송우용 이태준 박현우 이찬유	KD Stars	1,186			
	2				이태윤 이강윤	사창초	1,008			
	3				위지호	BCMP	848			
					정승현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여자 초등부A	개인	1	황채원	사창초	506	
				2	홍은수	만대초	479	
				3	이수하	노블 TNV	470	
			단체	1	홍은수 신윤아	만대초	904	
				2	전연재 김주은	BCMP	828	
		남자 초등부B	개인	1	이우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65	
				2	백시우	경기 광주시체육회	564	
				3	정시연	찬스아이	538	
			단체	1	이우진 백시우 최지후 전민조	경기 광주시체육회	2,072	
				2	전주한 김윤재 김재울 김준우	BCMP	1,658	
				3	고서진 김경희	만대초	883	
		여자 초등부B	개인	1	김윤하	찬스아이	538	
				2	이서울	NSF	538	
				3	유채민	찬스아이	507	
			단체	1	이서울 염효리 김서아	NSF	1,444	
				2	김윤하 유채민 이시호	찬스아이	1,401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기예나 김채영	BCMP	821		
		남자 초등부C	개인	1	정우성	찬스아이	616		
				2	이서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609		
				3	김태람	노블 TNV	603		
			단체	1	이서진 신재우 전은조 박서준	경기 광주시체육회	2,223		
				2	이주호 김경울 양정빈 신우찬	만대초	2,080		
				3	박우현 박준성 김태현	BCMP	1,520		
			릴레이	1	김경울 양정빈 이주호	만대초	613		
				2	김태현 박우현 박준성	BCMP	488		
			여자 초등부C	개인	1	박서연	찬스아이	583	
					2	나지원	장항중앙초	577	
		3			이하진	NSF	577		
		단체		1	박소연 이다희 이다혜 전은재	BCMP	2,071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2	이하진 김하늘 김미솔 김단아	NSF	2,039				
				3	박서연 유예림	찬스아이	1,017				
				릴레이	1	김윤하 박서연 유채민	찬스아이	581			
						릴레이	2	박소연 이다희 전은재	BCMP	574	
							1	이서원 이다혜	BCMP	477	
			혼성 초등부			릴레이	2	지병준 이채윤	국제스포츠클럽	-	
							남자 중등부	개인	1	김범찬	NSF
			단체	2	홍현기	강원체중	626				
				3	이용호	광주체중	625				
		1		이용호 이지훈 이민우 윤동규	광주체중	2,415					
		2		김범찬 김해찬 강태울 이은호	NSF	2,323					
					3	강지형 윤세진	귀일중	1,95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 중등부	개인	1	김채현 김준환 정예윤	경기 광주시체육회	587		
				2	황가은	부산대천중	581		
				3	김서현	태안여중	576		
			단체	1	정예윤 김서울 김서윤	경기 광주시체육회	1,611		
				2	박주언 김준서	강원체중	1,039		
				3	최보현 조은설	대성여중	570		
		근대3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이현서	서울체중	918	
					2	김승우	서울체중	915	
					3	김주원	전북체중	904	
				단체	1	이현서 김승우 박을 김하람	서울체중	3,418	
					2	김동원 구강모 전효근 이도영	경북체중	3,409	
					3	기예준 최주원 김지한 기하랑	덕산중	3,392	
	릴레이			1	구강모 김동원	경북체중	824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전효근	덕산중	811			
				2	기예준 김준영 최주원					
				3	강지민 박진우 신현규					
			여자 중등부	개인	1	이루리	광주체중	854		
					2	양보민	광주체중	843		
					3	송현서	광주체중	814		
		단체		1	이루리 양보민 송현서 한다예	광주체중	3,203			
					2	최민서 지아민 조서아 신인영	강원체중	2,844		
						3	장서윤 유수인 이채윤 강지윤	서울체중	2,508	
				릴레이			1	송현서 양보민 이루리	광주체중	694
					2			양지우 장채윤 전도윤	경기체중	594
						3		조서아	강원체중	534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혼성 중등부	릴레이	1	지아민 최민서 이현서 장서윤	서울체중	829		
				2	김주원 임영은	전북체중	792		
				3	이도영 정다혜	경북체중	762		
			남자 고등부	개인	1	박건우	전북체고	931	
					2	최성용	경기체고	924	
					3	박세찬	경기체고	917	
		단체		1	최성용 박세찬 윤태성 한인준	경기체고	2,712		
				2	황대경 조정현 정지울	경북체고	2,621		
				3	박인욱 김강영	전남체고	1,553		
		여자 고등부	개인	1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839		
				2	한인서	경기체고	815		
				3	김태이	경기체고	763		
			단체	1	이호연 양나경 박은혜	제주사대부고	2,244		
				2	한인서 김태이	경기체고	1,578		
		근대4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강도훈	경기체고	1,21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김건하	경기체고	1,212			
				3	김영하	전남체고	1,199			
		단체	단체	1	강도훈 김건하 임태경	경기체고	3,621			
				2	김영하 허민준 조민우	전남체고	3,500			
				3	최지웅 신명오 방준서	광주체고	3,437			
			릴레이	단체	1	박세찬 윤태성 최성용	경기체고	1,055		
					2	김민재 이창우 조채훈	대전체고	1,050		
					3	김민혁 김지현 박인찬	경북체고	1,048		
	여자 고등부		개인	개인	1	신수민	서울체고	1,167		
						2	한나연	제주	1,052	
						3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1,040	
			단체	단체	1	신수민 한나연 전지우	서울체고	3,215		
					2	강예서 구도영 장현서	강원체고	2,872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김가연 김다현 정서현	대구체고	2,856	
			릴레이	1	김예림 김태이 문소유	경기체고	880	
				2	배효빈 서정아 홍세인	충남체고	772	
				3	김다혜 김다희 박수현	대전체고	758	
		혼성 고등부	릴레이	1	한인준 한인서	경기체고	968	
				2	전태환 한소미	광주체고	920	
				3	권도현 박지원	전북체고	904	
		남자 대학부	개인	1	김라운	한국체대	1,152	
				2	김준	한국체대	1,132	
				3	신찬우	한국체대	1,102	
			단체	1	김라운 신찬우 김민식	한국체대	3,300	
				2	김준 김대철	한국체대	2,195	
			릴레이	1	김준 김한성 손정욱	한국체대	1,09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김유빈 신은석 이건희	한국체대	1,062	
				3	김라온 이환희 조한서	한국체대	1,027	
		여자 대학부	개인	1	이유빈	한국체대	1,019	
			릴레이	1	신지호 이유빈 최인리	한국체대	871	
		남자 일반부	개인	1	김혜민	대전시청	1,190	
				2	성진수	광주시청	1,183	
				3	김영석	광주시청	1,179	
			단체	1	성진수 김영석 윤상민	광주시청	3,507	
				2	박민성 윤병훈 박기수	경산시청	3,492	
				3	최창민 연성호 정영진	충남도청	3,472	
			릴레이	1	김혜민 소현석 이종현	대전시청	1,117	
				2	김영석 성진수 윤상민	광주시청	1,101	
				3	김경환	경기도청	1,090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김준영 송인성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소원	충남도청	1,077		
				2	한송이	충남도청	1,074		
				3	유수민	경기도청	1,069		
			단체	1	김소원 한송이 서지영	충남도청	3,171		
				2	김은옥 조하은 이채민	송학건설	2,958		
				3	유수민 이예설	경기도청	2,109		
			릴레이	1	김소원 서지영 한송이	충남도청	922		
		2		김은옥 이채민 조하은	송학건설	854			
		혼성 일반부	릴레이	1	이정헌 유수민	경기도청	1,086		
				2	정진화 장하은	LH	1,028		
				3	형태극 김예나	완주군청	999		
	근대5종	남자 대학부	개인	1	김한성	한국체대	1,464		
					2	이건희	한국체대	1,458	
					3	김유빈	한국체대	1,457	
				단체	1	이건희	한국체대	2,91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김유빈	한국체대	2,902	
				2	김한성 손정욱			
				3	이환희 조한서			
		여자 대학부	개인	1	신지호	한국체대	1,333	
				2	최인리	한국체대	1,303	
			단체	1	신지호 최인리	한국체대	2,636	
		남자 일반부	개인	1	정진화	LH	1,494	
				2	정보성	충남도청	1,478	
				3	김우철	완주군청	1,474	
			단체	1	정진화 이지훈	LH	2,948	
				2	정보성 박동수	충남도청	2,934	
				3	김우철 형태극	완주군청	2,910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예나	완주군청	1,359	
				2	이화영	완주군청	1,297	
				3	장하은	LH	1,115	
			단체	1	김예나 이화영	완주군청	2,656	
				2	장하은 한예원	LH	2,018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024. 8. 22. ~ 8. 28. / 강원, 인제)	근대2종	남자 초등부A	개인	1	이태윤	사창초	487	
				2	이강윤	사창초	467	
				3	위지호	BCMP	433	
			단체	1	송우용	KD Stars	1,238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여자 초등부A	개인	1	이태준 박현우 이찬유	사창초	954		
				2	이태윤 이강윤				
				3	위지호 정승현				
			단체	개인	1	홍은수	만대초	485	
					2	김민서	NSF	485	
					3	전연재	BCMP	471	
				단체	1	홍은수 신윤아	만대초	920	
					2	전연재 김주은	BCMP	856	
					3	김서연 정다인 김진주	KD Stars	821	
		남자 초등부B	개인	1	이단우	국제스포츠클럽	565		
				2	이우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565		
				3	백시우	경기 광주시체육회	564		
			단체	1	이우진 백시우 이서진 최지후	경기 광주시체육회	2,152		
				2	박춘현 이유건 심규원 강민준	월계수클럽	2,116		
				3	전주한	BCMP	1,637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여자 초등부B	개인	1	김윤재 김준우 이서원 유채민	서울연맹	517		
				2	김윤하	서울연맹	511		
				3	염효리	NSF	506		
			단체	1	곽다인 신민채 천재희	만대초	1,355		
				2	유채민 김윤하	서울연맹	1,028		
				3	기예나 김채영	BCMP	800		
			남자 초등부C	개인	1	이서진	경기 광주시체육회	618	
					2	김주원	월계수클럽	613	
					3	정우성	찬스아이	612	
		단체		1	김주원 김주한 정주영 임현우	월계수클럽	2,198		
				2	신재우 전은조 김한울 박서준	경기 광주시체육회	2,115		
				3	이주호 김경을 신우찬 양정빈	만대초	2,058		
		릴레이	1	신재우	경기 광주시체육회	707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이서진 이우진	만대초	632				
					김경울 양정빈 이주호						
					김주한 박준현 이유건						
				3	김주한 박준현 이유건	월계수클럽	602				
					이하진				NSF	577	
					박서연				서울연맹	575	
		여자 초등부C	개인		1	이하진	NSF	577			
						2	박서연	서울연맹	575		
						3	류가원	월계수클럽	571		
			단체		1	이하진 김하늘 박시연 김미솔	NSF	2,130			
						2	박소연 이다희 전은재 이다혜	BCMP	2,081		
						3	류가원 오수현 신예지 나연이	월계수클럽	2,047		
		릴레이			1	김하늘 염효리 이하진	NSF	585			
						2	박소연 이다혜 이다희	BCMP	566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곽다인 신민채 천재희	만대초	331			
		혼성 초등부	릴레이	1	김주원 류가원	월계수클럽	787			
					2	김시윤 박시연	NSF	745		
					3	백시우 이서울	경기 광주시체육회	707		
		남자 중등부	개인	1	최성윤	영월중	671			
					2	박예찬	울산스포츠과학중	671		
					3	기예준	덕산중	658		
			단체	1	박예찬 이준빈 전이안 김시완	울산스포츠과학중	2,496			
						2	김범찬 김해찬 전승훈 김규민	NSF	2,381	
						3	기예준 최주원 김지한	덕산중	1,964	
		여자 중등부	개인	1	황가은	대천중	587			
					2	김단아	동구여중	586		
					3	한보민	울산스포츠과학중	570		
			단체	1	이채희 신예지 김유주	울산스포츠과학중	1,803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근대3종	남자 중등부	개인	1	한서연 이현서	서울체중	915	
				2	김승우	서울체중	909	
				3	박태준	부산체중	901	
			단체	1	박태준 양태준 경로검 정수영	부산체중	3,487	
				2	이현서 김승우 박율 김현우	서울체중	3,387	
				3	김동원 전효근 구강모 이도영	경북체중	3,344	
			릴레이	1	경로검 박태준 양태준	부산체중	809	
				2	구강모 김동원 전효근	경북체중	782	
				3	기예준 김준영 최주원	덕산중	780	
			여자 중등부	개인	1	김지윤	서울체중	850
		2			이루리	광주체중	841	
		3			장서윤	서울체중	819	
		단체		1	이루리	광주체중	3,132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양보민 송현서 한다예	서울체중	3,067		
				2	김지윤 장서윤 유수인 천은빈				
				3	양지우 김서울 장채윤 전도윤				
			릴레이	1	송현서 양보민 이루리	광주체중	660		
				2	김지윤 이채윤 장서윤	서울체중	613		
				3	양지우 장채윤 전도윤	경기체중	587		
			혼성 중등부	릴레이	1	김주원 임영은	전북체중	766	
					2	박소율 김서울	경기체중	753	
					3	이도영 정다혜	경북체중	750	
		남자 고등부	개인	1	최성용	경기체고	920		
				2	박세찬	경기체고	914		
				3	윤태성	경기체고	895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단 체	등 위 1	성 명 최성용 박세찬 윤태성	소 속 경기체고	기 록 2,729	비 고	
	근대4종	여자 고등부	개인	1	민소윤	서울체고	829		
				2	박효주	강원체고	684		
				3	정서현	대구체고	181		
			남자 고등부	개인	1	김영하	전남체고	1,202	
					2	양우승	부산체고	1,191	
					3	김건하	경기체고	1,185	
				단체	1	김건하 배준수 임태경	경기체고	3,502	
					2	이수성 안지우 이재민	서울체고	3,448	
					3	김영하 허민준 조민우	전남체고	3,435	
		릴레이	1	김건하 배준수 임태경	경기체고	1,064			
			2	김영하 조민우 허민준	전남체고	1,046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3	방준서 전태환 최지웅	광주체고	1,023			
		여자 고등부	개인	1	신수민	서울체고	1,118			
					2	이가영	대구체고	1,093		
					3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1,061		
				단체	1	신수민 전지우 한나연	서울체고	3,183		
						2	이가영 김가연 김세원	대구체고	3,054	
						3	문소유 김예림 한인서	경기체고	3,053	
				릴레이	1	민소윤 신수민 전지우	서울체고	900		
						2	김예림 문소유 한인서	경기체고	877	
						3	김가연 김세원 이가영	대구체고	821	
			혼성 고등부	릴레이	1	조채훈 이지민	대전체고	962		
					2	권도현 정지은	전북체고	940		
					3	서우성	울산스포츠과학고	927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남자 대학부	개인	1	서원경 김라운	한국체대	1,162		
				2	조한서	한국체대	1,147		
				3	김범준	한국체대	1,121		
			단체	1	김범준 신찬우 황인성	한국체대	3,239		
				2	김라운 조한서 김민식	한국체대	2,761		
			릴레이	1	김라운 손정욱 신은석	한국체대	1,066		
				2	김유빈 김한성 조한서	한국체대	1,050		
				3	김준 유현석 이환희	한국체대	974		
			여자 대학부	개인	1	이유빈	한국체대	968	
				릴레이	1	신지호 이유빈 최인리	한국체대	849	
		남자 일반부	개인	1	이민서	인천체육회	1,209		
				2	이우진	인천체육회	1,175		
				3	김승진	인천체육회	1,166		
			단체	1	이민서 이우진 김승진	인천체육회	3,550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박우진	대전시청	3,440		
				2	소현석 김혜민 이진식				
				3	이동기 조예준 이은석				
			릴레이	1	박우진 이민서 이우진	인천체육회	1,125		
				2	김경환 김준영 이정현	경기도청	1,084		
				3	박기수 박민성 이주찬	경산시청	1,077		
			여자 일반부	개인	1	김은주	강원체육회	1,085	
					2	김예나	완주군청	1,083	
					3	박가연	BNK	1,074	
		단체		1	김은주 김은영 추효정	강원체육회	3,114		
				2	김은옥 이채민 조하은	송학건설	3,033		
				3	유수민 이예설	경기도청	2,066		
		릴레이	1	김은영 김은주	강원체육회	903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추효정	경기도청	898			
				2	김선우 유수민 이예설					
				3	김은옥 이채민 조하은					
				혼성 일반부	릴레이	1	이은석 김선진	전남도청	1,033	
						2	김우철 이화영	완주군청	1,009	
						3	남대경 소재영	경남체육회	967	
		근대5종	남자 대학부	개인	1	손정욱	한국체대	1,466		
					2	신은석	한국체대	1,456		
					3	김홍나성	한국체대	1,444		
				단체	1	손정욱 김한성 김준	한국체대	2,910		
	2				신은석 이건희 강성현	한국체대	2,875			
	3				김유빈 이환희	한국체대	2,834			
	여자 대학부		개인	1	신지호	한국체대	1,312			
				2	최인리	한국체대	1,303			
			단체	1	신지호 최인리	한국체대	2,615			
	남자 일반부		개인	1	이종현	대전시청	1,479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2	이주찬	경산시청	1,460	
				3	김용하	대전시청	1,454	
			단체	1	이종현 김용하	대전시청	2,933	
				2	이주찬 박민성	경산시청	2,890	
				3	이정헌 김준영	경기도청	2,831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2024. 10. 11. ~ 10. 17. / 경상남도)	근대4종	남자 고등부	개인	1	안지우	서울	1,205	
				2	이수성	서울	1,202	
				3	김영하	전남	1,198	
			단체	1	안지우 이수성 이재민	서울	3,569	
				2	김건하 임태경 강도훈	경기	3,567	
				3	김영하 허민준 곽동규	전남	3,548	
			릴레이	1	강도훈 김건하 임태경	경기	1,129	
				2	김영하 조민우 허민준	전남	1,111	
				3	안지우 이수성 이재민	서울	1,102	

국내대회 성적

대회명	종별	부별	구분	등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여자 고등부	개인	1	신수민	서울	1,141	
				2	김유리	경기	1,115	
				3	전지우	서울	1,097	
			단체	1	신수민 전지우 민소윤	서울	3,308	
				2	김유리 김예림 문소유	경기	3,212	
				3	이가영 김세원 김가연	대구체고	3,061	
			릴레이	1	민소윤 신수민 전지우	서울	942	
				2	김예림 김유리 문소유	경기	905	
				3	김가연 김세원 이가영	대구체고	884	
		남자 일반부	개인	1	전웅태	광주	1,247	
				2	이민서	인천	1,223	
				3	강성현	경기	1,213	
			단체	1	이민서 박우진 이우진	인천	3,613	
				2	전웅태 윤상민	광주	3,579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성진수	경기	3,560	
				3	강성현 김준영 이정현			
				릴레이	1			
				2	소현석 이종현 이진식	대전	1,153	
				3	박우진 이민서 이우진	인천	1,152	
			여자 일반부	개인	1	성승민	대구	1,165
					2	박가연	부산	1,149
					3	김선우	경기	1,131
				단체	1	박가연 김세희 정민아	부산	3,235
		2			김선우 유수민 이예설	경기	3,214	
		3			한송이 김소원 서지영	충남	3,191	
		릴레이		1	김선우 유수민 이예설	경기	944	
				2	소재영	경남	928	

국내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별	부 별	구 분	등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장하은 한예원	강원	918	
				3	김은영 김은주 추효정			
	근대5종	남자 일반부	개인	1	정진화	울산	1,533	
				2	김경환	경기	1,529	
				3	정영진	충남	1,526	
			단체	1	정영진 연성호	충남	3,039	
				2	김경환 송인성	경기	3,026	
				3	정진화 송도훈	울산	3,020	

국제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목	순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제1차 월드컵대회 (이집트, 카이로) 2024. 3. 5. ~ 3. 10.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17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27	
		남자개인 예선 23위	박우진	인천시체육회	1,092	
		남자개인 예선 23위	김승진	인천시체육회	1,135	
		여자개인 결승 2위	김선우	경기도청	1,415	
		여자개인 결승 6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1,397	
		여자개인 결승 12위	성승민	한국체대	1,368	
		여자개인 예선 13위	장하은	LH	1,053	
		혼성계주 결승 3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322	
		혼성계주 결승 3위	성승민	한국체대	1,322	
아시아선수권대회(U-19) (한국, 화성) 2024. 4. 10. ~ 4. 15.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1위	양우승	부산체고	1,505	
		남자개인 결승 2위	배준수	경기체고	1,503	
		남자개인 결승 3위	임태경	경기체고	1,500	
		남자개인 결승 6위	신명오	광주체고	1,486	
		남자개인 결승 7위	강도훈	경기체고	1,479	
		남자개인 결승 9위	허민준	전남체고	1,461	
		남자개인 결승 10위	안지우	서울체고	1,454	
		남자개인 결승 16위	김건하	경기체고	1,431	
		여자개인 결승 2위	이가영	대구체고	1,364	
		여자개인 결승 4위	김예림	경기체고	1,311	
		여자개인 결승 6위	한나연	서울체고	1,300	
		여자개인 결승 7위	정다민	경기체고	1,296	
		여자개인 결승 10위	이지민	대전체고	1,257	
		여자개인 결승 14위	윤혜진	서울체고	1,225	
		여자개인 결승 17위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1,191	
		여자개인 결승 20위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1,006	
		남자단체 결승 1위	배준수	경기체고	4,468	

국제대회 성적

대회명	종목	순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남자단체 결승 1위	신명오	광주체고	4,468	
		남자단체 결승 1위	강도훈	경기체고	4,468	
		남자단체 결승 2위	양우승	부산체고	4,466	
		남자단체 결승 2위	임태경	경기체고	4,466	
		남자단체 결승 2위	허민준	전남체고	4,466	
		여자단체 결승 1위	김예림	경기체고	3,872	
		여자단체 결승 1위	한나연	서울체고	3,872	
		여자단체 결승 1위	정다민	경기체고	3,872	
		여자단체 결승 4위	이가영	대구체고	3,752	
		여자단체 결승 4위	윤혜진	서울체고	3,752	
		여자단체 결승 4위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3,752	
		혼성계주 결승 6위	양우승	부산체고	1,249	
		혼성계주 결승 6위	김예림	경기체고	1,249	
		혼성계주 결승 11위	배준수	경기체고	1,038	
		혼성계주 결승 11위	이가영	대구체고	1,038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화성) 2024. 4. 10. ~ 4. 15.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1위	김유빈	한국체대	1,545	
		남자개인 결승 2위	김경환	경기도청	1,521	
		남자개인 결승 3위	이우진	인천시체육회	1,513	
		남자개인 결승 4위	정슬기	경기도청	1,506	
		남자개인 결승 6위	김동훈	국군체육부대	1,496	
		남자개인 결승 8위	정진화	LH	1,481	
		남자개인 결승 10위	김우철	완주군청	1,476	
		남자개인 결승 21위	이환희	한국체대	1,416	
		여자개인 결승 1위	신수민	서울체고	1,460	
		여자개인 결승 2위	김유리	경기체고	1,435	
		여자개인 결승 3위	박가연	BNK저축은행	1,404	

국제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목	순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개인 결승 7위	민성진	전남도청	1,339	
		여자개인 결승 9위	조하은	(주)송학건설	1,323	
		여자개인 결승 10위	최인리	한국체대	1,319	
		여자개인 결승 11위	김예나	완주군청	1,309	
		여자개인 결승 13위	이화영	완주군청	1,264	
		남자단체 결승 1위	김유빈	한국체대	4,534	
		남자단체 결승 1위	이우진	인천시체육회	4,534	
		남자단체 결승 1위	김우철	완주군청	4,534	
		남자단체 결승 2위	김경환	경기도청	4,523	
		남자단체 결승 2위	정슬기	경기도청	4,523	
		남자단체 결승 2위	김동훈	국군체육부대	4,523	
		여자단체 결승 1위	신수민	서울체고	4,299	
		여자단체 결승 1위	김유리	경기체고	4,299	
		여자단체 결승 1위	박가연	BNK저축은행	4,299	
		여자단체 결승 3위	민성진	전남도청	3,981	
		여자단체 결승 3위	조하은	(주)송학건설	3,981	
		여자단체 결승 3위	최인리	한국체대	3,981	
		혼성계주 결승 1위	이우진	인천시체육회	1,341	
		혼성계주 결승 1위	박가연	BNK저축은행	1,341	
		혼성계주 결승 15위	김경환	경기도청	530	
		혼성계주 결승 15위	민성진	전남도청	530	
제2차 월드컵대회 (튀르키예, 양카라) 2024. 4. 15. ~ 4. 21.	근대5종	남자개인 준결승 13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152	
		남자개인 예선 13위	김승진	인천체육회	1,156	
		남자개인 결승 1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97	
		남자개인 예선 23위	박우진	인천체육회	1,124	
		여자개인 결승 10위	김선우	경기도청	1,369	

국제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목	순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개인 예선 15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1,036	
		여자개인 결승 2위	성승민	한국체대	1,401	
		여자개인 예선 24위	장하은	LH	989	
제3차 월드컵대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2024. 4. 23. ~ 4. 28.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8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493	
		남자개인 결승 12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83	
		남자개인 예선 19위	김승진	인천시체육회	1,163	
		남자개인 예선 16위	박우진	인천시체육회	1,156	
		여자개인 결승 9위	김선우	경기도청	1,391	
		여자개인 결승 2위	성승민	한국체대	1,427	
		여자개인 예선 17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1,049	
		여자개인 예선 14위	장하은	LH	1,060	
제4차 월드컵대회 (불가리아, 소피아) 2024. 5. 7. ~ 5. 13.	근대5종	남자개인 예선 18위	김승진	인천체육회	1,108	
		남자개인 결승 6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78	
		남자개인 준결승 16위	박우진	인천체육회	1,118	
		여자개인 준결승 17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995	
		여자개인 결승 15위	성승민	한국체대	1,302	
		여자개인 예선 18위	장하은	LH	1,007	
월드컵 파이널 (튀르키예, 앙카라) 2024. 5. 21. ~ 5. 26.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5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496	
		남자개인 결승 8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84	
		여자개인 결승 4위	성승민	한국체대	1,396	
		여자개인 준결승 10위	김선우	경기도청	1,358	
		여자개인 준결승 15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1,073	
		혼성계주 결승 3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341	
		혼성계주 결승 3위	성승민	한국체대	1,341	
세계선수권대회 (중국, 정저우)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3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513	
		남자개인 결승 14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57	

국제대회 성적

대회명	종목	순위	성명	소속	기록	비고
2024. 6. 8. ~ 6. 16.		남자개인 결승 15위	김승진	인천체육회	1,445	
		남자개인 준결승 14위	박우진	인천체육회	1,155	
		여자개인 결승 8위	김선우	경기도청	1,391	
		여자개인 결승 1위	성승민	한국체대	1,434	
		여자개인 결승 17위	김은주	강원도체육회	1,328	
		여자개인 결승 14위	장하은	LH	1,357	
		남자단체 결승 2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4,415	
		남자단체 결승 2위	김승진	인천체육회	4,415	
		남자단체 결승 2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4,415	
		여자단체 결승 2위	김선우	경기도청	4,182	
		여자단체 결승 2위	성승민	한국체대	4,182	
		여자단체 결승 2위	장하은	LH	4,182	
		남자계주 결승 1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466	
		남자계주 결승 1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466	
		여자계주 결승 1위	김선우	경기도청	1,321	
		여자계주 결승 1위	성승민	한국체대	1,321	
		혼성계주 결승 1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116	
		혼성계주 결승 1위	김선우	경기도청	1,116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2024. 6. 25. ~ 6. 30.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29위	이환희	한국체대
남자개인 결승 32위	박민성			경산시청	1,428	
남자개인 예선 15위	김한성			한국체대	1,414	
남자개인 예선 19위	장우혁			한국체대	1,384	
여자개인 결승 5위	신수민			서울체고	1,354	
여자개인 결승 34위	최인리			한국체대	1,007	
여자개인 예선 26위	이가영			대구체고	1,182	
여자개인 예선 27위	민성진			전남도청	1,180	

국제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목	순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남자단체 결승 9위	이환희	한국체대	4,275	
		남자단체 결승 9위	박민성	경산시청	4,275	
		남자단체 결승 9위	김한성	한국체대	4,275	
		여자단체 결승 10위	최인리	한국체대	3,543	
		여자단체 결승 10위	신수민	서울체고	3,543	
		여자단체 결승 10위	이가영	대구체고	3,543	
		남자계주 결승 10위	이환희	한국체대	704	
		남자계주 결승 10위	박민성	경산시청	704	
		여자계주 결승 5위	최인리	한국체대	1,182	
		여자계주 결승 5위	신수민	서울체고	1,182	
		혼성계주 결승 4위	신수민	서울체고	1,334	
		혼성계주 결승 4위	김한성	한국체대	1,334	
파리올림픽 (프랑스, 파리) 2024. 8. 8. ~ 8. 11.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6위	전웅태	광주광역시청	1,526	
		남자개인 결승 7위	서창완	국군체육부대	1,520	
		여자개인 결승 3위	성승민	한국체대	1,441	
		여자개인 결승 8위	김선우	경기도청	1,410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7) (포르투갈, 칼다스 다 하이냐) 2024. 9. 10. ~ 9. 15.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19위	박인찬	경북체고	1,420	
		남자개인 결승 22위	김민혁	경북체고	1,410	
		여자개인 결승 19위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1,304	
		여자개인 결승 31위	문소유	경기체고	1,266	
		혼성계주 결승 7위	이호연	제주사대부고	1,572	
		혼성계주 결승 7위	박인찬	경북체고	1,572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9)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2024. 9. 23. ~ 9. 29.	근대5종	남자개인 결승 1위	임태경	경기체고	1,521	
		남자개인 결승 9위	허민준	전남체고	1,497	
		남자개인 결승 14위	김민재	대전체고	1,479	
		남자개인 결승 24위	김건하	경기체고	1,465	

국제대회 성적

대 회 명	종 목	순 위	성 명	소 속	기 록	비 고
		여자개인 결승 23위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1,308	
		여자개인 결승 24위	김예림	경기체고	1,305	
		여자개인 결승 36위	윤혜진	서울체고	1,019	
		남자단체 결승 2위	임태경	경기체고	4,497	
		남자단체 결승 2위	김민재	대전체고	4,497	
		남자단체 결승 2위	허민준	전남체고	4,497	
		여자단체 결승 9위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3,632	
		여자단체 결승 9위	김예림	경기체고	3,632	
		여자단체 결승 9위	윤혜진	서울체고	3,632	
		남자계주 결승 5위	김건하	경기체고	777	
		남자계주 결승 5위	임태경	경기체고	777	
		여자계주 결승 11위	김예림	경기체고	1,147	
		여자계주 결승 11위	서원경	울산스포츠과학고	1,147	
		혼성계주 결승 12위	윤혜진	서울체고	1,193	
		혼성계주 결승 12위	허민준	전남체고	1,193	

2024 시.도별 획득메달 집계현황

구 분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대학.일반부			금	은	동	합 계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서울	11	12	10			14	15	10			11	15	26	33	39	98
부산	6	13	9			10	9	10			12	12	15	35	31	81
대구													-	-	-	-
인천	7		4			1		1					7	1	5	13
광주	1	2				1		1			14	2	1	17	3	21
대전													-	-	-	-
울산						2	1				3	2	1	3	4	8
경기	33	27	27			24	21	21			12	10	54	60	61	175
강원	5	3	3			5	2	2			1	3	7	6	11	24
충북			2				2						2	-	2	4
충남		1					1					2	1	1	2	4
전북		2				2	5	1			2	3	5	5	5	15
전남	8	7	2			4	1	1			1	1	9	9	7	25
경북						1	5	4			1	5	5	5	6	16
경남													-	-	-	-
제주						1	2	4			1	2	2	5	3	10
계	71	67	57	-	-	65	64	55	-	-	58	57	135	180	179	494

2024년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당기금액	당기금액	전기금액	전기금액
자 산				
유 동 자 산	0	3,239,367,311	0	3,477,044,398
당 좌 자 산	0	2,934,630,424	0	3,146,526,527
현금 및 현금성 자산	0	701	0	220,001,037
보 통 예 금	0	701	0	220,001,037
단 기 투 자 자 산	0	2,842,636,120	0	2,842,636,120
단 기 금 융 상 품	0	2,842,636,120	0	2,842,636,120
정 기 예 금	0	2,842,636,120	0	2,842,636,120
선 급 금	0	16,314,950	0	10,266,760
선 급 금 (법인세)	0	16,314,950	0	10,266,760
미 수 수 익	0	75,662,083	0	73,606,040
선 급 비 용	0	16,570	0	16,570
재 고 자 산	0	0	0	0
비 유 동 자 산	0	304,736,887	0	330,517,871
투 자 자 산	0	0	0	25,199,768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0	0	0	25,199,768
유 형 자 산	0	276,336,887	0	276,918,103
비 품	72,693,240	0	68,913,240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5,706,948	16,986,292	48,043,966	20,869,274
훈 련 / 경 기 용 품	504,238,941	0	400,423,741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97,914,033	206,324,908	233,958,315	166,465,426
마 필 (생물 자산)	406,357,284	0	578,517,244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53,331,597	53,025,687	488,933,841	89,583,403
무 형 자 산	0	0	0	0

대차대조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당기금액	당기금액	전기금액	전기금액
기 타 의 비 유 동 자 산	0	28,400,000	0	28,400,000
콘 도 미 니 엄 회 원 권	0	28,400,000	0	28,400,000
자 산 총 계	0	3,239,367,311	0	3,477,044,398
부 채				
유 동 부 채	0	80,284,972	0	4,001,037
미 지 급 금	0	80,284,972	0	4,001,037
미 지 급 금 (일 반)	0	80,284,972	0	4,001,037
비 유 동 부 채	0	28,144,641	0	10,266,760
퇴 직 급 여 총 당 부 채	524,774,809	11,829,691	547,115,122	0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512,945,118	0	547,115,122	0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0	16,314,950	0	10,266,760
부 채 총 계	0	108,429,613	0	14,267,797
자 본				
자 본 금	0	2,842,636,120	0	2,842,636,120
법 인 화 적 립 자 본 금	0	1,051,177,736	0	1,051,177,736
기 금 적 립 자 본 금	0	1,791,458,384	0	1,791,458,384
자 본 잉 여 금	0	0	0	0
자 본 조 정	0	0	0	0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0	0
이 익 잉 여 금	0	288,301,578	0	620,140,481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0	288,301,578	0	620,140,481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0	288,301,578	0	620,140,481
[당 기 순 손 실]				
당기 (-331,838,903)				

대차대조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당기금액	당기금액	전기금액	전기금액
전기 (-112,489,555)				
자 본 총 계	0	3,130,937,698	0	3,462,776,60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0	3,239,367,311	0	3,477,044,398

손익계산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당기금액	당기금액	전기금액	전기금액
매 출 액	0	6,232,591,104	0	4,737,750,654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577,255,015	0	2,079,882,218	0
개 최 지 지 원 금	388,846,000	0	495,236,600	0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2,190,000,000	0	1,710,525,000	0
기 부 금	179,720,900	0	150,949,400	0
기 타 수 입	789,012,181	0	207,278,219	0
투 자 자 산 수 익	107,757,008	0	93,879,217	0
매 출 총 이 익	0	6,232,591,104	0	4,737,750,654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	6,563,230,729	0	4,860,997,723
국 내 사 업 비	830,359,180	0	542,392,028	0
국 제 사 업 비	444,346,954	0	296,772,351	0
국 제 대 회 비	451,079,202	0	359,007,508	0
국 내 대 회 비	764,117,625	0	725,368,913	0
훈 련 비	2,072,826,391	0	1,735,987,374	0
지 원 비	50,000,000	0	50,000,000	0
인 건 비	807,632,801	0	618,488,883	0
경 상 비	173,531,528	0	284,814,326	0
특 별 사 업 비	874,554,285	0	153,320,732	0
감 가 상 각 비	94,782,763	0	94,845,608	0
영 업 이 익	0	-330,639,625	0	-123,247,069
영 업 외 수 익	0	118,153,584	0	77,429,346
이 자 수 익	18,242,563	0	17,922,971	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	99,911,019	0	56,405,072	0
잡 이 익	2	0	3,101,303	0
영 업 외 비 용	0	119,352,862	0	66,671,832

손익계산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당기금액	당기금액	전기금액	전기금액
매 출 액	0	6,232,591,104	0	4,737,750,654
유 형 자 산 폐 기 손 실	13,393,653	0	0	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105,959,209	0	66,671,832	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0	-331,838,903	0	-112,489,555
당 기 순 이 익	0	-331,838,903	0	-112,489,555

세입.세출총괄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세입				세출				
과목		금액	적요	과목		금액	적요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급여보조	223,021,600	기본급제수당	경상비	인건비	702,498,004	급여및기타수당
		퇴직적립금	14,133,360	퇴직적립금		퇴직금	68,105,338	퇴직금, 퇴직적립금
		행정보조비	24,000,000	복리후생행정		행정비	154,847,959	복리, 사무등
		경향비	182,000,000	훈련대회비		소계		925,451,301
	사업비	2,134,100,055	국내사업비	사업비	국내사업비	786,407,625	국내대회지원비	
-	-	국제사업비	2,141,818,062		훈련비			
시도체육회	사업비	388,846,000	대회지원임차		143,580,610	훈련장관리비		
	소계	2,966,101,015			44,331,720	학교생활체육육성		
기부금	내공사기부금	연맹운영	2,190,000,000		연맹운영	27,207,070	교육비	
		임원기부금	44,000,000	지원금	144,070,600	육성지원금		
		현물기부금	135,720,900	현물기부금	424,844,250	포상·홍보·회의		
		소계	2,369,720,900		27,747,230	비품구입비		
과실금	법인기금	공단기금	32,102,386	법인기금이자	소계		3,765,164,867	
		정기예금	54,227,479	공단기금이자	국제사업비	451,079,202	국제대회파견비	
		보통예금	3,093,200	자체기금이자		391,102,987	국외전지훈련비	
		퇴직연금	221,194	보통예금이자		51,938,539	국제활동비	
		소계	16,514,512	퇴직연금이자		소계		894,120,728
소계	106,158,771							
기금	퇴직기금	퇴직기금	96,619,114	퇴직금지급	지원금	아시아연맹	50,000,000	아시아연맹
		소계	96,619,114					
자체기금	자체적립금	자체적립금	220,000,000	자체적립금	소계		50,000,000	
		소계	220,000,000					
기타	기타수입	우리금융그룹후원	315,000,000	우리금융그룹후원	특별사업비	국내사업비	155,460,000	장애물경기구축등
		전국체육대회수익	180,090,909	전국체육대회수익		국외사업비	788,464,545	아시아선수권대회등
		전국소년체전수익	16,915,500	전국소년체전수익	소계		943,924,545	
		법인세환급수익	10,266,760	법인세환급수익	적립금	적립금	75	
		아시아선수권대회차가비등	217,504,201	아시아선수권대회차가비등		소계		75
소계	739,777,370							
전기이월	-	-	-	-	80,284,346			
총계	-	6,498,377,170	-	-	6,498,377,170			

2024년

수입결산서

수입결산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보 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급 여 보 조	237,154,960	* 급여및수당 보조 169,596,000 * 국제전문인력 인건비 보조 35,925,600 * 선진화평가인센티브사업비 17,500,000 * 퇴직적립금 보조 14,133,360
		경 기 력 지 원 비	182,000,000	* 국가대표훈련비 108,916,000 * 국내대회 개최비 73,084,000
		사 업 비	2,158,100,055	* 행정보조비 24,000,000 * 국제전문인력 활동 지원 및 국제회의 초청 17,188,230 * 전국소년체육대회비 6,000,000 * 국가대표감독코치선수수당 787,551,537 * 국가대표촌외훈련비 241,978,560 * 후보선수육성훈련비 102,645,559 * 청소년육성훈련비 66,204,588 *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여학생스포츠클럽) 28,571,000 * 꿈나무육성훈련비 107,128,196 * 국제대회비(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U17) 26,064,000 * 국제대회비(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U19) 35,082,100 * 국제대회비(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U21) 9,110,000 * 국제대회비(세계선수권대회) 59,407,500 *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비 352,219,785 * 개도국초청합동훈련 52,973,000 * 아시아선수권대회 130,000,000 * 파리올림픽 포상금 98,500,000 * 파리올림픽 특별지원 10,920,000 *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2,556,000
소 계		2,577,255,015		
보 조 금	시 도 체 육 회	사 업 비	388,846,000	* 국내대회 보조금 388,846,0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소 계	2,966,101,015		
기 부 금	L H 공 사	연 맹 운 영 비	2,190,000,000	* '24년 자 체 사 업 비 2,080,000,000 * 파리올림픽 포상금 110,000,000	
		임 원 사 업 비	44,000,000	* 지 원 금 44,000,000	
	현 물 기 부 금	사 업 비	135,720,900	* 국내대회 및 국가대표훈련비 등 135,720,900	
		소 계	2,369,720,900		
과 실 금	법 인 기 금	사 업 비	32,102,386	* 인건비 등 32,102,386	
	공 단 기 금	사 업 비	54,227,479	* 인건비 등 54,227,479	
	정 기 예 금	사 업 비	3,093,200	* 사업비 3,093,200	
	보 통 예 금	사 업 비	221,194	* 사업비 221,194	
	퇴 직 연 금	적 립	16,514,512	* 퇴직적립금 과실금 16,514,512	
		소 계	106,158,771		
기 금	퇴 직 기 금	퇴 직 기 금 지 급	96,619,114	* 퇴직금 지급 96,619,114	
		소 계	96,619,114		
자 체 기 금	자 체 적 립 금	자 체 적 립 금	220,000,000	* 자체적립금 220,000,000	
		소 계	220,000,000		
기 타	기 타 수 입	기 타 수 입	739,777,370	* 법인세 환급금 10,266,760 * 잡이익(외화 이자수익금 환차익 등) 2,175 *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연맹 지원금 10,620,000 * 아시아선수권대회 우리금융그룹 후원금 165,000,000 *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비 등 192,870,810 *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임대수입 180,090,909 * 전국소년체전 경기용기구 임대수입 16,915,500 * 우리금융그룹 후원금 150,000,000 * 월드컵 결승 개최비 환입 13,931,21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판정 상소금 80,000	
			소 계	739,777,370	
			전 기 이 월 금	-	
			계	6,498,377,170	

2024년

지출결산서

지출결산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경 상 비	인 건 비	보 수	702,498,004	* 기 본 급	= 430,694,365	
			* 상 여 금	= 128,960,496		
			* 특 별 성 과 금	= 51,246,000		
			* 중 식 보 조 비	= 24,000,000		
			* 직 책 수 당	= 4,200,000		
			* 연 차 수 당	= 13,573,880		
			* 초 과 근 무 수 당	= 49,823,263		
	소 계		702,498,004			
	퇴 직 금	퇴 직 적 립 및 지 급	68,105,338	* 2024 퇴 직 금	= 30,647,872	
				- 퇴 직 금 적 립	= 37,457,466	
			- 퇴 직 금 지 급	= 37,457,466		
소 계		68,105,338				
운 영 비	복 리 후 생 비	71,124,540	* 4 대 보 험	= 64,716,540		
			* 건 강 검 진 지 원 비	= -		
			* 명 절 선 물 비	= 6,408,000		
	관 리 용 역 비	3,069,700	* 회 계 관 리 비	= 3,069,700		
			* 전 산 관 리 비	= -		
	공 공 요 금 및 제 세	26,416,790	* 통 신 비	= 11,987,530		
		* 사 무 처 관 리 비	= 10,149,860			
		* 단 체 회 비	= 4,145,000			
		* 보 증 보 험	= 134,400			
경 상 비	운 영 비	일 반 수 용 비	27,443,143	* 각 종 수 수 료	= 5,596,01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 간 행 물 등 구 입 비 = -
				* 사 무 용 품 구 입 비 = 3,535,093
				* 업 무 위 탁 대 가 및 사 례 비 = 13,200,000
				* 인 쇄 비 = 5,112,040
		특 근 매 식 비	3,236,410	* 특 근 매 식 비 = 3,236,410
		소 계	131,290,583	
	여 비	국 내 여 비	13,849,748	* 국 내 여 비 = 13,849,748
		소 계	13,849,748	
	업 무 추 진 비	기 관 업 무 비	951,500	* 기 관 업 무 비 = 951,500
		사 업 추 진 비	8,756,128	* 사 업 추 진 비 = 2,048,128
				* 경 조 사 비 = 5,945,000
				* 체 육 주 간 행 사 비 = 763,000
		소 계	9,707,628	
	총 계	925,451,301		
국 내 대 회 비	제 42 회 전 국 근 대 5 종 선 수 권 대 회	여 비	18,455,880	* 국 내 여 비 = 18,455,880
		인 건 비	20,935,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20,935,000
		일 반 수 용 비	63,856,32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20,000,000
				* 행 사 지 원 비 = 13,335,070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5,401,250
				* 중 계 료 = 23,661,000
		* 주 최 자 배 상 책 임 공 제 보 험 료 = 1,459,000		
임 차 료	2,500,000	* 장 비 임 차 비 = 2,500,000		
	소 계	105,747,200		
국 내 대 회 비	제 34 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기 전 국	여 비	66,491,726	* 국 내 여 비 = 40,583,126
				* 국 외 여 비 = 25,908,6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인 건 비	23,985,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23,985,000	
		일 반 수 용 비	72,246,52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17,970,000 * 행 사 지 원 비 = 12,490,520 * 흥 보 물 등 제 작 비 = 15,782,000 * 중 계 료 = 24,530,000 * 주 최 자 배 상 책 임 공 제 보 험 료 = 1,474,000	
		임 차 료	6,842,000	* 장 비 임 차 비 = 6,842,000	
		소 계	169,565,246		
		제 40 회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여 비	21,355,201	* 국 내 여 비 = 21,355,201
			인 건 비	25,975,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25,975,000
	일 반 수 용 비		81,979,960	* 행 사 지 원 비 = 22,464,96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18,070,000 * 흥 보 물 등 제 작 비 = 13,144,000 * 중 계 료 = 26,224,000 * 주 최 자 배 상 책 임 공 제 보 험 료 = 2,077,000	
	임 차 료		14,660,000	* 장 비 임 차 비 = 14,660,000	
	소 계		143,970,161		
	제 1 회 대 한 체 육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여 비	18,224,040	* 국 내 여 비 = 18,224,040
		인 건 비	24,400,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24,400,000	
		일 반 수 용 비	72,709,500	* 행 사 지 원 비 = 14,815,50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20,000,000 * 흥 보 물 등 제 작 비 = 9,739,000 * 중 계 료 = 24,893,000	
		소 계		* 주 최 자 배 상 책 임 공 제 보 험 료 = 3,262,000	
	국 내 대 회 비	제 1 회 대 한 체 육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임 차 료	12,345,000	* 장 비 임 차 비 = 12,345,000
			소 계	127,678,54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제 52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근 대 5 종 경 기	여 비	6,541,000	* 국 내 여 비	= 6,541,000
		인 건 비	4,940,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4,940,000
		일 반 수 용 비	7,613,400	* 행 사 지 원 비	= 3,578,40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3,285,000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750,000
		임 차 료	3,500,000	* 장 비 임 차 비	= 3,500,000
		소 계	22,594,400		
	제 104 회 전국체육대회 근 대 5 종 경 기	여 비	29,745,588	* 국 내 여 비	= 29,745,588
		인 건 비	19,910,000	* 심 판 위 원 수 당	= 19,910,000
		일 반 수 용 비	157,496,490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9,229,340
				* 운 송 및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19,990,000
				* 장 비 제 작 비	= 25,387,000
				* 행 사 지 원 비	= 83,640,150
		임 차 료	3,700,000	* 중 계 료	= 19,250,000
		소 계	210,852,078	* 장 비 임 차 비	= 3,700,000
	제 25 회 한국학생연맹 및 제 10 회 실업연맹	대 회 지 원 금	6,000,000	* 대 회 지 원 금	= 6,000,000
				* 대 회 지 원 물 품	= -
		소 계	6,000,000		
	대 회 운 영 비	물 품 구 입 비	-	* 심 판 복 구 입 비	= -
		소 계	-		
		총 계	786,407,625		
	국 내 사 업 비	국 가 대 표 훈 련 비	복 리 후 생 비	69,944,680	* 4 대 보 험 료
				* 중 식 보 조 비	= 4,800,000
		인 건 비	883,607,532	* 감 독 코 치 수 당	= 541,380,0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 선 수 수 당 = 206,080,000	
			* 트레이너(체력, 의무 등) 수 당 = 9,000,000	
			* 마필관리원 급여 = 127,147,532	
		퇴 직 적 립 및 지 급	103,220,584	* 퇴 직 금 적 립 = 6,601,470
				* 퇴 직 금 지 급 = 96,619,114
		여 비	248,856,137	* 숙 박 비 = 114,957,577
				* 식 비 및 간 식 비 = 133,898,560
	일 반 수 용 비	278,631,240	* 훈 련 용 품 구 입 비 = 150,008,350	
			* 국 가 대 표 운 영 비 = 128,622,890	
	자 산 취 득 비	2,200,000	* 용 품 구 입 비 = 2,200,000	
	임 차 비	19,034,400	* 차 량 임 차 료 = 19,034,400	
	소 계	1,605,494,573		
	골드프로젝트사업비	인 건 비	32,210,000	* 지 도 자 수 당 = 32,210,000
		일 반 수 용 비	139,430,810	* 연 구 용 역 = 37,576,560
				* 훈 련 용 품 등 구 입 비 = 20,227,200
				* 기 타 운 영 비 = 81,627,050
	소 계	171,640,810		
	후보선수훈련비	인 건 비	36,800,000	* 지 도 자 수 당 = 36,800,000
		일 반 수 용 비	39,391,979	* 훈 련 복 및 훈 련 용 품 구 입 = 29,307,999
				* 선 수 수 당 = 7,840,000
			* 기 타 운 영 비 = 2,243,980	
국내사업비	후보선수훈련비	여 비	73,878,709	* 식 비 및 간 식 비 = 31,311,200
				* 숙 박 비 = 31,792,000
				* 향 공 료 등 = 10,775,509
	임 차 료	5,850,000	* 차 량 임 차 료 = 5,850,0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공 공 요 금 및 제 세	562,240	* 보 험 료 =	562,240
		소 계	156,482,928		
	청 소 년 대 표 훈 련 비	일 반 수 용 비	35,262,448	* 전 담 지 도 자 수 당 =	5,193,548
				* 전 문 지 도 자 수 당 =	9,600,000
				* 훈 련 복 및 훈 련 용 품 구 입 =	20,116,900
				* 기 타 운 영 비 =	352,000
		국 내 여 비	42,859,921	* 식 비 및 간 식 비 =	23,826,270
				* 숙 박 비 =	17,886,500
			* 교 통 비 =	1,147,151	
	임 차 료	4,680,000	* 차 량 임 차 료 =	4,680,0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408,270	* 보 험 료 =	408,270	
					소 계
	꿈 나 무 선 수 육 성 사 업 비	일 반 수 용 비	52,721,316	* 전 담 지 도 자 수 당 =	4,854,800
				* 전 문 지 도 자 수 당 =	12,600,000
			* 훈 련 복 및 훈 련 용 품 구 입 =	33,438,450	
여 비	68,172,566	* 기 타 운 영 비 =	1,828,066		
		* 식 비 및 간 식 비 =	28,838,500		
		* 숙 박 비 =	33,099,566		
		* 교 통 비 등 =	6,234,500		
국 내 사 업 비	꿈 나 무 선 수 육 성 사 업 비	임 차 료	3,430,000	* 차 량 임 차 료 =	3,430,0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665,230	* 보 험 료 =	665,230
	소 계	124,989,112			
	마 필 관 리 비	일 반 수 용 비	136,747,290	* 건 초 구 입 비 =	44,911,790
			* 기 타 운 영 비 =	2,127,0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 마 분 처 리 비 =	7,040,000	
			* 마 필 진 료 비 =	4,489,000	
			* 배 합 사 료 =	17,941,000	
			* 용 구 구 입 비 =	508,500	
			* 장 제 비 =	20,460,000	
			* 톱 밥 =	39,270,000	
		소 계	136,747,290		
	훈 련 차 량 운 영 비	차 량 유 지 비	6,833,320	* 차 량 유 지 보 수 비 =	6,833,320
		소 계	6,833,320		
	학 교 생 활 체 육 육 성 (여 학 생 스포 츠 교 실)	일 반 수 용 비	41,393,140	* 강 사 수 당 =	20,480,000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1,020,000
				* 물 품 구 입 비 =	17,041,864
				* 기 타 운 영 비 =	2,851,276
		공 공 요 금 및 제 세	2,938,580	* 강 사 보 험 료 =	1,092,000
			* 각 종 수 수 료 =	1,846,580	
소 계	44,331,720				
교 육 비	복 리 후 생 비	-	* 교 재 구 입 비 =	-	
	여 비	15,938,670	* 여 비 =	15,938,670	
국 내 사 업 비	교 육 비	일 반 수 용 비	* 검 정 위 원 수 당 =	1,500,000	
			* 지 도 자 강 습 회 운 영 비 =	8,884,400	
			* 기 타 운 영 비 =	884,000	
	소 계	27,207,070			
육 성 지 원 금	시 . 도 및 산 하 단 체 지 원	110,000,000	* 시 . 도 및 산 하 단 체 지 원 =	110,000,000	
	대 회 출 전 비 지 원	34,070,600	* 대 회 출 전 비 지 원 =	34,070,60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소 계	144,070,600		
	포 상 비	일 반 수 용 비	-	* 상 패 제 작 비 등 = -
		포 상 금 등	326,500,000	* 공 로 포 상 비 = 36,000,000 * 국 제 대 회 포 상 금 등 = 290,500,000
		소 계	326,500,000	
	홍 보 비	업 무 추 진 비	8,096,810	* 사 업 추 진 비 = 8,096,810
		일 반 수 용 비	37,239,400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37,239,400
		소 계	45,336,210	
	회 의 비	회 의 비	53,008,040	* 대 의 원 총 회 회 의 비 등 = 53,008,040
		소 계	53,008,040	
	비 품 구 입 및 렌 탈	일 반 수 용 비	429,000	* 소 모 성 비 품 구 매 = 429,000
		임 차 료	18,622,330	* 사 무 기 기 렌 탈 = 18,622,330
		자 산 취 득 비	8,695,900	* 컴 퓨 터 및 기 타 자 산 구 입 = 8,695,900
		소 계	27,747,230	
	전 산 운 영	관 리 용 역 비	25,157,700	* 서 버 관 리 비 = 7,157,700 * 프 로 그 램 관 리 비 = 18,000,000
		소 계	25,157,700	
총 계		2,978,757,242		
국 제 대 회 비	세 계 선 수 권 대 회	국 외 여 비	61,014,950	* 향 공 료 = 11,090,000 * 체 재 비 = 49,924,950
		일 반 수 용 비	7,935,820	* 총 무 비 = 4,246,452 * 활 동 비 = 3,689,368
		소 계	68,950,770	
	세 계 청 소 년 선 수 권 대 회	국 외 여 비	51,003,080	* 향 공 료 = 29,040,000 * 체 재 비 = 21,963,080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U17)	일 반 수 용 비	7,852,920	* 총 무 비 =	3,311,037		
				* 활 동 비 =	4,541,883		
		소 계	58,856,000				
	세 계 청 소 년 선 수 권 대 회 (U19)	국 외 여 비	57,728,268	* 향 공 료 =	27,830,000		
				* 체 재 비 =	29,898,268		
		일 반 수 용 비	6,271,440	* 총 무 비 =	4,277,715		
				* 활 동 비 =	1,993,725		
		소 계	63,999,708				
	세 계 청 소 년 선 수 권 대 회 (U21)	국 외 여 비	63,329,730	* 향 공 료 =	34,800,000		
				* 체 재 비 =	28,529,730		
		일 반 수 용 비	7,179,696	* 총 무 비 =	3,679,571		
				* 활 동 비 =	3,500,125		
		소 계	70,509,426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국 외 여 비	13,081,500	* 향 공 료 =	-		
			* 체 재 비 =	13,081,500			
일 반 수 용 비		8,173,500	* 총 무 비 =	8,173,500			
	소 계	21,255,000					
국 제 대 회 비	파 리 올 림 픽 대 회	국 외 여 비	92,301,181	* 체 재 비 =	63,478,981		
				* 향 공 료 =	28,822,200		
		일 반 수 용 비	75,207,117	* 총 무 비 =	24,982,496		
				* 기 타 운 영 비 =	50,224,621		
	소 계	167,508,298					
	총 계	451,079,202					
국 제 사 업 비	국 외 훈 련 비	국 외 여 비	360,170,057	* 향 공 료 =	151,092,600		
				* 체 재 비 =	209,077,457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일 반 수 용 비	30,932,930	* 총 무 비 =	21,256,709	
				* 운 영 비 =	9,676,221	
		소 계	391,102,987			
		국 제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3,490,000	* 국 외 정 보 수 집 활 동 비 =	-
					* 홍 보 물 등 제 작 비 =	3,490,000
			국 외 여 비	40,737,296	* 체 재 비 =	19,127,378
					* 항 공 료 =	21,609,918
			일 반 수 용 비	7,711,243	* 총 무 비 =	7,711,243
			소 계	51,938,539		
			총 계	443,041,526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50,000,000	* 아 시 아 연 맹 지 원 =	50,000,000	
		소 계	50,000,000			
		총 계	50,000,000			
특 별 사 업	장 애 물 경 기 장 시 . 도 연 맹 지 원	경 기 장 시 설 물 구 축	155,460,000	* 경 기 장 시 설 물 구 축 =	155,460,000	
		소 계	155,460,000			
특 별 사 업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여 비	181,358,265	* 여 비 =	181,358,265	
		일 반 수 용 비	477,853,280	* 운 영 비 =	477,853,280	
		자 산 취 득 비	76,226,000	* 장 애 물 구 조 물 등 =	76,226,000	
		소 계	735,437,545			
	개 도 국 초 청 합 동 훈 련	여 비	44,239,000	* 여 비 =	44,239,000	
		일 반 수 용 비	8,788,000	* 운 영 비 =	8,788,000	
		소 계	53,027,000			
		총 계	943,924,545			
기 타	적 립 금	자 체 기 금	75	* 자 체 적 립 금 =	75	

과 목		금 액	세 목
관	항 목		
	소 계	75	
	총 계	75	
이	월 금	- 80,284,346	* 이 월 금 = - 80,284,346
총	계	6,498,377,170	

2024년

재원별 지출내역

지출결산서

(2024. 1. 1 - 2024. 12. 31)

(단위 : 원)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경 상 비	인 건 비	보 수	223,021,600	327,206,539	14,215,000	138,054,865	702,498,004
		소 계	223,021,600	327,206,539	14,215,000	138,054,865	702,498,004
	퇴 직 금	퇴 직 금 적 립	14,133,360	-	-	16,514,512	30,647,872
		퇴 직 금 지 급	-	37,457,466	-	-	37,457,466
		소 계	14,133,360	37,457,466	-	16,514,512	68,105,338
	운 영 비	복 리 후 생 비	24,000,000	47,124,540	-	-	71,124,540
		관 리 용 역 비	-	3,069,700	-	-	3,069,7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비	-	26,416,790	-	-	26,416,790
		일 반 수 용 비	-	27,443,143	-	-	27,443,143
		특 근 매 식 비	-	3,236,410	-	-	3,236,410
		소 계	24,000,000	107,290,583	-	-	131,290,583
	여 비	국 내 여 비	-	13,849,748	-	-	13,849,748
		소 계	-	13,849,748	-	-	13,849,748
	업 무 추 진 비	기 관 업 무 비	-	951,500	-	-	951,500
		사 업 추 진 비	-	8,756,128	-	-	8,756,128
		소 계	-	9,707,628	-	-	9,707,628
	총 계		261,154,960	495,511,964	14,215,000	154,569,377	925,451,301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국 내 대 회	제 43 회 전 국 근 대 5 종 선 수 권 대 회	여 비	-	-	9,955,880	8,500,000	18,455,880
		인 건 비	-	-	-	20,935,000	20,935,000
		일 반 수 용 비	23,661,000	1,104,400	44,120	39,046,800	63,856,320
		임 차 료	-	1,000,000	-	1,500,000	2,500,000
		소 계	23,661,000	2,104,400	10,000,000	69,981,800	105,747,200
	제 35 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여 비	-	-	736,496	65,755,230	66,491,726
		인 건 비	-	-	-	23,985,000	23,985,000
		일 반 수 용 비	24,530,000	635,446	3,763,504	43,317,570	72,246,520
		임 차 료	-	-	5,500,000	1,342,000	6,842,000
		소 계	24,530,000	635,446	10,000,000	134,399,800	169,565,246
	제 41 회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여 비	-	-	1,061,840	20,293,361	21,355,201
		인 건 비	-	9,316,161	-	16,658,839	25,975,000
		일 반 수 용 비	-	-	29,528,160	52,451,800	81,979,960
		임 차 료	-	-	13,990,000	670,000	14,660,000
		소 계	-	9,316,161	44,580,000	90,074,000	143,970,161
	제 2 회 대 한 체 육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여 비	-	-	4,974,040	13,250,000	18,224,040
		인 건 비	-	-	4,990,000	19,410,000	24,400,000
		일 반 수 용 비	24,893,000	1,346,740	35,960	46,433,800	72,709,500
		임 차 료	-	-	-	12,345,000	12,345,000
		소 계	24,893,000	1,346,740	10,000,000	91,438,800	127,678,540
국 내 대 회	제 53 회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여 비	2,400,000	-	-	4,141,000	6,541,00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인 건 비	3,600,000	-	-	1,340,000	4,940,000
		일 반 수 용 비	-	-	-	7,613,400	7,613,400
		임 차 료	-	-	-	3,500,000	3,500,000
		소 계	6,000,000	-	-	16,594,400	22,594,400
	제 105 회 전 국 체 육 대 회	여 비	-	12,591,000	-	17,154,588	29,745,588
		인 건 비	-	8,210,000	-	11,700,000	19,910,000
		일 반 수 용 비	-	-	-	157,496,490	157,496,490
		임 차 료	-	3,700,000	-	-	3,700,000
		소 계	-	24,501,000	-	186,351,078	210,852,078
	제 26 회 한 국 학 생 연 맹 및 제 11 회 실 업 연 맹 회 장 기 경 기 대 회	대 회 지 원 금	-	6,000,000	-	-	6,000,000
			-	-	-	-	-
		소 계	-	6,000,000	-	-	6,000,000
	대 회 운 영 비	물 품 구 입 비	-	-	-	-	-
		소 계	-	-	-	-	-
		총 계	79,084,000	43,903,747	74,580,000	588,839,878	786,407,625
국 내 사 업	국 가 대 표 훈 련 비	복 리 후 생 비	43,770,067	26,174,613	-	-	69,944,680
		인 건 비	747,460,000	136,147,532	-	-	883,607,532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퇴 직 금 적 립	6,601,470	-	-	-	6,601,470	
		퇴 직 금 지 급	-	-	-	96,619,114	96,619,114	
		여 비	241,978,560	6,877,577	-	-	248,856,137	
		일 반 수 용 비	77,401,600	130,420,340	-	70,809,300	278,631,240	
		자 산 취 득 비	2,200,000	-	-	-	2,200,000	
		임 차 비	19,034,400	-	-	-	19,034,400	
		소 계	1,138,446,097	299,620,062	-	167,428,414	1,605,494,573	
	골 드 프 로 젝 트	인 건 비	-	32,210,000	-	-	32,210,000	
		일 반 수 용 비	15,012,900	117,790,000	-	6,627,910	139,430,810	
		소 계	15,012,900	150,000,000	-	6,627,910	171,640,810	
	후 보 선 수 훈 련 비	인 건 비	5,600,000	31,200,000	-	-	36,800,000	
		여 비	68,551,200	1,800,000	-	3,527,509	73,878,709	
		임 차 료	3,418,000	-	-	2,432,000	5,850,0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252,000	-	-	310,240	562,240	
		일 반 수 용 비	24,824,359	-	-	14,567,620	39,391,979	
		소 계	102,645,559	33,000,000	-	20,837,369	156,482,928	
	국 내 사 업	청 소 년 대 표 훈 련 비	일 반 수 용 비	23,475,548	4,313,400	-	7,473,500	35,262,448
			여 비	40,056,500	2,803,421	-	-	42,859,921
			임 차 료	2,280,000	2,400,000	-	-	4,680,00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공 공 요 금 및 제 세 소 계	공 공 요 금 및 제 세	392,540	15,730	-	-	408,270	
		소 계	66,204,588	9,532,551	-	7,473,500	83,210,639	
	꿈 나 무 선 수 육 성 사 업 비	일 반 수 용 비	38,926,966	5,443,450	-	8,350,900	52,721,316	
		여 비	64,106,000	4,066,566	-	-	68,172,566	
		임 차 료	3,430,000	-	-	-	3,430,00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665,230	-	-	-	665,230	
		소 계	107,128,196	9,510,016	-	8,350,900	124,989,112	
	마 필 관 리 비	일 반 수 용 비	-	136,747,290	-	-	136,747,290	
		소 계	-	136,747,290	-	-	136,747,290	
	차 량 운 영 비	차 량 유 지 비	-	6,833,320	-	-	6,833,320	
		소 계	-	6,833,320	-	-	6,833,320	
	학 교 생 활 체 육 육 성 (여 학 생 스포츠 교 실)	일 반 수 용 비	26,555,000	14,838,140	-	-	41,393,14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2,016,000	922,580	-	-	2,938,580	
		소 계	28,571,000	15,760,720	-	-	44,331,720	
	교 육 비	복 리 후 생 비	-	-	-	-	-	
		여 비	517,000	15,421,670	-	-	15,938,670	
	국 내 사 업	교 육 비	일 반 수 용 비	2,039,000	9,229,400	-	-	11,268,400
			소 계	2,556,000	24,651,070	-	-	27,207,070
		육 성 지 원 금	시 . 도 및 산 하 단 체 지 원	-	76,000,000	-	34,000,000	110,000,000
			대 회 출 전 비 지 원	-	34,070,600	-	-	34,070,60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소 계	-	110,070,600	-	34,000,000	144,070,600
	포 상 비					
	일 반 수 용 비	-	-	-	-	-
	포 상 금 등	98,500,000	228,000,000	-	-	326,500,000
	소 계	98,500,000	228,000,000	-	-	326,500,000
	홍 보 비					
	업 무 추 진 비	-	8,096,810	-	-	8,096,810
	일 반 수 용 비	-	36,363,400	-	876,000	37,239,400
	소 계	-	44,460,210	-	876,000	45,336,210
	회 의 비					
	일 반 수 용 비	-	27,157,400	-	-	27,157,400
	여 비	-	25,850,640	-	-	25,850,640
	소 계	-	53,008,040	-	-	53,008,040
	비 품 구 입 및 렌 탈					
	일 반 수 용 비	-	429,000	-	-	429,000
	임 차 료	-	18,622,330	-	-	18,622,330
	자 산 취 득 비	-	8,695,900	-	-	8,695,900
	소 계	-	27,747,230	-	-	27,747,230
국 내 사 업	전 산 운 영					
	관 리 용 역 비	-	25,157,700	-	-	25,157,700
	소 계	-	25,157,700	-	-	25,157,700
	총 계	1,559,064,340	1,174,098,809	-	245,594,093	2,978,757,242
국 제 대 회	세 계 선 수 권 대 회					
	국 외 여 비	59,407,500	1,607,450	-	-	61,014,950
	일 반 수 용 비	-	7,935,820	-	-	7,935,82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소 계		59,407,500	9,543,270	-	-	68,950,770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 (U17)	국 외 여 비	24,309,000	26,694,080	-	-	51,003,080	
		일 반 수 용 비	1,755,000	6,097,920	-	-	7,852,920	
	소 계		26,064,000	32,792,000	-	-	58,856,000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 (U19)	국 외 여 비	32,293,000	25,435,268	-	-	57,728,268	
		일 반 수 용 비	2,789,100	3,482,340	-	-	6,271,440	
	소 계		35,082,100	28,917,608	-	-	63,999,708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 (U21)	국 외 여 비	14,571,580	48,758,150	-	-	63,329,730	
		일 반 수 용 비	445,500	6,734,196	-	-	7,179,696	
	소 계		15,017,080	55,492,346	-	-	70,509,426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국 외 여 비	-	-	-	13,081,500	13,081,500	
		일 반 수 용 비	-	-	-	8,173,500	8,173,500	
	소 계		-	-	-	21,255,000	21,255,000	
	국 제 대 회	2024 파 리 하 계 올 림 픽 대 회	국 외 여 비	10,920,000	47,959,298	-	33,421,883	92,301,181
			일 반 수 용 비	-	-	-	75,207,117	75,207,117
소 계		10,920,000	47,959,298	-	108,629,000	167,508,298		
총 계		146,490,680	174,704,522	-	129,884,000	451,079,202		
국 제 사 업	국 외 전 지 훈 련	국 외 여 비	337,206,885	22,963,172	-	-	360,170,057	
		일 반 수 용 비	-	30,932,930	-	-	30,932,93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소 계		337,206,885	53,896,102	-	-	391,102,987
	국 제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	3,490,000	-	-	3,490,000
		국 외 여 비	10,609,150	30,128,146	-	-	40,737,296
		일 반 수 용 비	672,000	7,039,243	-	-	7,711,243
		소 계	11,281,150	40,657,389	-	-	51,938,539
	총 계		348,488,035	94,553,491	-	-	443,041,526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아 시 아 연 맹 지 원 금	-	50,000,000	-	-	50,000,000
		소 계	-	50,000,000	-	-	50,000,000
		총 계	-	50,000,000	-	-	50,000,000
특 별 사 업	장 애 물 경 기 장 시 . 도 연 맹 지 원	경 기 장 시 설 물 구 축	-	155,460,000	-	-	155,460,000
		소 계	-	155,460,000	-	-	155,460,000
특 별 사 업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여 비	73,500,000	81,997,813	-	25,860,452	181,358,265
		일 반 수 용 비	56,500,000	-	131,205,000	290,148,280	477,853,280
		자 산 취 득 비	-	-	-	76,226,000	76,226,000
		소 계	130,000,000	81,997,813	131,205,000	392,234,732	735,437,545
	개 도 국 선 수 초 청 합 동 훈 련	여 비	44,185,000	54,000	-	-	44,239,000
		일 반 수 용 비	8,788,000	-	-	-	8,788,000
		소 계	52,973,000	54,000	-	-	53,027,000

과 목			집 행				
관	항 목		체육기금	자 체·이월금	자체기금	기 타	계
총 계			182,973,000	237,511,813	131,205,000	392,234,732	943,924,545
기 타	적 립 금	자 체 기 금	-	-	-	75	75
			-	-	-	75	75
	총 계		-	-	-	75	75
이	월 금		-	80,284,346	-	-	80,284,346
총 계			2,577,255,015	2,190,000,000	220,000,000	1,511,122,155	6,498,377,170

기 금 적 립 현 황

- ◆. 재정자립기금적립현황
- ◆. 연맹발전기금적립현황
- ◆. 퇴 직 적 립 금 현 황

재정자립기금적립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 자	
재 정 자 립 기 금 적 립 금	체 육 기 금	1,791,458,384	-	1,791,458,384	54,227,479	54,227,479	1,791,458,384
	법 인 기 금	1,051,177,736	-	1,051,177,736	32,102,386	32,102,386	1,051,177,736
	계	2,842,636,120	0	2,842,636,120	86,329,865	86,329,865	2,842,636,120

- 적립실태

현재 재정자립기금 적립금은 체육기금 및 법인기금으로 수협 및 외환은행에 예치, 관리운영하고 있음.

연맹발전기금적립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 자	
연맹발전기금 적립	자체적립기금	220,000,000	- 219,999,925	75	220,049,448	49,448	75
	계	220,000,000	- 219,999,925	75	220,049,448	49,448	75

- 적립실태
기업자유예금으로 KEB하나에 예치운영하고 있음.

퇴직적립금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 자	
퇴직 적립금	자 체 적 립 금	572,314,890	- 59,369,772	20,734,830	96,619,114	16,514,512	512,945,118
	재정자립과실금	-	-	-	-	-	-
	체육기금적립금	-	-	-	-	-	-
	계	572,314,890	- 59,369,772	20,734,830	96,619,114	16,514,512	512,945,118

- 적립실태

하나은행 퇴직연금으로 예치, 운영하고있음.

자 산 관 리 대 장

- ◆. 유형자산관리대장
- ◆. 양도/폐기자산관리대장

유형자산 관리대장

(2024.12.31 현재)

회 사 명 : (사)대한근대5중연맹

(마필(생물자산) 10년 / 정액법. 그외 5년 / 정액법)

계정과목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일자	수량	기초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장부가액	신규취득및증가	당기 상각비	전기말상각누계액	당기말장부가액	양도/폐기일
비품	200028	전화기(키폰)	2007/01/11	13	2,210,000	2,209,000	1,000			2,209,000	1,000	
비품	200029	키폰주장치	2007/01/11	1	660,000	659,000	1,000			659,000	1,000	
비품	200055	복합기	2012/04/16	1	429,000	428,000	1,000			428,000	1,000	
비품	200056	팩스밀리	2012/11/30	1	363,000	362,000	1,000			362,000	1,000	
비품	200057	사무용의자	2013/11/15	8	2,296,000	2,295,000	1,000			2,295,000	1,000	
비품	200061	개인난방기(엘리온)	2015/11/24	9	1,251,000	1,250,000	1,000			1,250,000	1,000	
비품	200065	TV	2017/01/31	1	632,140	631,140	1,000			631,140	1,000	
비품	200074	TV	2017/11/15	1	315,500	314,500	1,000			314,500	1,000	
비품	200075	더존회계프로그램(I-CUBE)	2018/01/01	1	15,400,000	15,399,000	1,000			15,399,000	1,000	
비품	200076	섬성컴퓨터	2019/02/01	1	1,330,000	1,307,833	22,167		21,167	1,329,000	1,000	
비품	200077	삼성모니터	2019/02/01	1	220,000	216,333	3,667		2,667	219,000	1,000	
비품	200078	삼성노트북	2019/02/01	1	1,280,000	1,258,666	21,334		20,334	1,279,000	1,000	
비품	200079	LG노트북	2019/02/01	1	1,420,000	1,396,333	23,667		22,667	1,419,000	1,000	
비품	200080	LG노트북	2019/02/01	1	1,420,000	1,396,333	23,667		22,667	1,419,000	1,000	
비품	200081	동경올림픽 시계	2019/02/20	3	1,500,000	1,475,000	25,000		24,000	1,499,000	1,000	
비품	200082	COMPEX SP 8.0	2019/04/05	1	1,606,500	1,526,175	80,325		79,325	1,605,500	1,000	
비품	200083	접이식 테이블	2019/08/07	5	1,628,000	1,438,066	189,934		188,934	1,627,000	1,000	
비품	200084	의자	2019/08/07	10	1,474,000	1,302,033	171,967		170,967	1,473,000	1,000	
비품	200085	5단 캐비닛	2019/08/07	4	994,400	878,386	116,014		115,014	993,400	1,000	
비품	200086	초음파치료기	2019/11/26	1	3,135,000	2,612,500	522,500		521,500	3,134,000	1,000	
비품	200087	삼성노트북(Pen s-NT930SBE)	2020/03/12	1	1,380,000	1,058,000	322,000		276,000	1,334,000	46,000	
비품	200088	의류살균건조기	2020/09/03	1	1,980,000	1,320,000	660,000		396,000	1,716,000	264,000	
비품	200089	회의 테이블(임원실)	2021/05/24	2	1,326,600	707,520	619,080		265,320	972,840	353,760	
비품	200090	사이드 캐비닛(임원실)	2021/05/24	1	518,100	276,320	241,780		103,620	379,940	138,160	
비품	200091	회의 의자(임원실)	2021/05/24	8	1,232,000	657,066	574,934		246,400	903,466	328,534	
비품	200092	선풍기(승마장)	2021/07/01	10	1,705,000	852,500	852,500		341,000	1,193,500	511,500	
비품	200093	데스크탑 본체(임원실)	2021/08/03	1	830,000	401,166	428,834		166,000	567,166	262,834	
비품	200094	모니터 27인치(임원실)	2021/08/03	1	210,000	101,500	108,500		42,000	143,500	66,500	
비품	200095	데스크탑 본체(승마장)	2021/10/19	1	1,140,000	513,000	627,000		228,000	741,000	399,000	
비품	200096	모니터 24인치(승마장)	2021/10/19	1	160,000	72,000	88,000		32,000	104,000	56,000	
비품	200097	컬러복합기(승마장)	2021/10/19	1	280,000	126,000	154,000		56,000	182,000	98,000	
비품	200098	데스크탑 본체(사무처)	2021/11/22	1	1,140,000	494,000	646,000		228,000	722,000	418,000	
비품	200099	데스크탑 본체(사무처)	2021/11/22	1	1,140,000	494,000	646,000		228,000	722,000	418,000	
비품	200100	모니터 24인치(사무처)	2021/11/22	1	180,000	78,000	102,000		36,000	114,000	66,000	
비품	200101	냉장고	2022/03/02	1	799,000	292,966	506,034		159,800	452,766	346,234	
비품	200102	삼성본체	2022/07/25	1	1,090,000	327,000	763,000		218,000	545,000	545,000	
비품	200103	노트북	2023/01/20	1	1,439,000	287,800	1,151,200		287,800	575,600	863,400	

비품	200104	데스크탑본체	2023/02/07	1	1,700,000	311,666	1,388,334		340,000	651,666	1,048,334
비품	200105	데스크탑본체	2023/02/21	1	1,100,000	201,666	898,334		220,000	421,666	678,334
비품	200106	데스크탑본체	2023/02/21	1	1,100,000	201,666	898,334		220,000	421,666	678,334
비품	200107	데스크탑본체	2023/02/21	1	1,100,000	201,666	898,334		220,000	421,666	678,334
비품	200108	초음파치료기	2023/03/07	1	2,299,000	383,166	1,915,834		459,800	842,966	1,456,034
비품	200109	LG노트북(회계용)	2023/07/07	1	2,200,000	220,000	1,980,000		440,000	660,000	1,540,000
비품	200110	이동형온풍기	2023/11/09	1	1,650,000	55,000	1,595,000		330,000	385,000	1,265,000
비품	200111	이동형온풍기	2023/11/09	1	1,650,000	55,000	1,595,000		330,000	385,000	1,265,000
비품	200112	데스크탑 본체	2024/01/04	1				1,500,000	300,000	300,000	1,200,000
비품	200113	노트북(LG<17Z90R-EP7>)	2024/05/10	1				2,280,000	304,000	304,000	1,976,000
비품		소계		109	68,913,240	48,043,966	20,869,274	3,780,000	7,662,982	55,706,948	16,986,292
훈련/경기용품	300004	TDC8000외	2003/01/01	1	3,720,000	3,719,000	1,000			3,71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25	수영스피커	2014/03/17	2	1,478,400	1,477,400	1,000			1,477,4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26	이동식웬스	2014/10/16	50	16,500,000	16,499,000	1,000			16,49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28	벽돌장애물	2015/09/04	2	6,000,000	5,999,000	1,000			5,99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29	실내장애물(횡목)	2015/09/04	16	2,080,000	2,079,000	1,000			2,07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0	안장	2015/12/16	2	15,000,000	14,999,000	1,000			14,99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1	트랙터(NX450SC)	2015/12/22	1	34,540,000	34,539,000	1,000			34,53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2	스마트타켓	2017/12/29	23	27,633,925	27,632,925	1,000			27,632,925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3	레이저런 세트	2018/03/19	25	13,977,976	13,976,976	1,000			13,976,976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4	수영계측 부속장비	2018/04/18	3	1,485,000	1,484,000	1,000			1,484,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5	승마장 장애물날개	2018/09/20	5	9,750,000	9,749,000	1,000			9,74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6	마방 보호장비	2018/09/20	15	3,150,000	3,149,000	1,000			3,149,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7	LG노트북(경기용)	2019/07/01	1	2,365,000	2,128,500	236,500		235,500	2,364,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8	레이저발사기 세트	2019/04/26	42	20,600,580	19,570,851	1,029,729		1,028,729	20,599,58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39	레이저타겟 및 거치대	2019/04/26	20	10,929,000	10,382,550	546,450		545,450	10,928,000	1,000
훈련/경기용품	300040	레이저발사기 세트	2020/04/28	27	13,558,860	10,169,145	3,389,715		2,711,772	12,880,917	677,943
훈련/경기용품	300041	저온측정카메라-1	2020/07/24	1	2,970,000	2,079,000	891,000		594,000	2,673,000	297,000
훈련/경기용품	300042	저온측정카메라-2	2020/07/24	1	2,970,000	2,079,000	891,000		594,000	2,673,000	297,000
훈련/경기용품	300043	LG울트라북(측정용)	2020/08/14	1	1,200,000	820,000	380,000		240,000	1,060,000	140,000
훈련/경기용품	300044	삼성노트북(측정용)	2020/08/14	1	1,200,000	820,000	380,000		240,000	1,060,000	140,000
훈련/경기용품	300045	세이코 초시계(S149)	2020/11/02	4	2,006,000	1,270,466	735,534		401,200	1,671,666	334,334
훈련/경기용품	300046	수영장 스타트 마이크	2021/05/14	1	825,000	440,000	385,000		165,000	605,000	220,000
훈련/경기용품	300047	펜싱심판기(FMA03)	2021/08/11	2	17,000,000	8,216,666	8,783,334		3,400,000	11,616,666	5,383,334
훈련/경기용품	300048	펜싱심판기(FMA03)	2021/11/05	1	8,500,000	3,683,333	4,816,667		1,700,000	5,383,333	3,116,667
훈련/경기용품	300049	양방향bar	2021/11/05	5	5,500,000	2,383,333	3,116,667		1,100,000	3,483,333	2,016,667
훈련/경기용품	300050	레이저런 스피커	2021/11/05	1	5,940,000	2,574,000	3,366,000		1,188,000	3,762,000	2,178,000
훈련/경기용품	300051	케이블릴	2021/11/05	10	7,080,000	3,068,000	4,012,000		1,416,000	4,484,000	2,596,000
훈련/경기용품	300052	수영 데이터 처리기	2021/11/05	1	14,421,000	6,249,100	8,171,900		2,884,200	9,133,300	5,287,700
훈련/경기용품	300053	훈련용 노트북	2022/05/03	1	1,270,000	423,333	846,667		254,000	677,333	592,667
훈련/경기용품	300054	훈련용 노트북	2022/05/03	1	1,270,000	423,333	846,667		254,000	677,333	592,667
훈련/경기용품	300055	대회용 노트북	2022/04/12	1	1,270,000	444,500	825,500		254,000	698,500	571,500

훈련/경기용품	300056	타겟거치대-1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57	타겟거치대-2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58	타겟거치대-3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59	타겟거치대-4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0	타겟거치대-5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1	타겟거치대-6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2	타겟거치대-7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3	타겟거치대-8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4	타겟거치대-9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5	타겟거치대-10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6	타겟거치대-11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7	타겟거치대-12	2022/09/14	1	979,000	261,066	717,934		195,800	456,866	522,134
훈련/경기용품	300068	훈련용 TV	2022/10/18	1	1,700,000	425,000	1,275,000		340,000	765,000	935,000
훈련/경기용품	300069	타겟기둥-1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0	타겟기둥-2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1	타겟기둥-3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2	타겟기둥-4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3	타겟기둥-5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4	타겟기둥-6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5	타겟기둥-7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6	타겟기둥-8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7	타겟기둥-9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8	타겟기둥-10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79	타겟기둥-11	2022/10/17	1	979,000	244,750	734,250		195,800	440,550	538,450
훈련/경기용품	300080	램프/타겟케이스	2023/01/04	1	792,000	158,400	633,600		158,400	316,800	475,200
훈련/경기용품	300081	램프/타겟케이스	2023/01/04	1	792,000	158,400	633,600		158,400	316,800	475,200
훈련/경기용품	300082	램프/타겟케이스	2023/01/04	1	792,000	158,400	633,600		158,400	316,800	475,200
훈련/경기용품	300083	펜싱 보관함	2023/02/27	1	1,870,000	342,833	1,527,167		374,000	716,833	1,153,167
훈련/경기용품	300084	장애물경기구조물(1)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85	장애물경기구조물(2)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86	장애물경기구조물(1)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87	장애물경기구조물(1)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88	장애물경기구조물(1)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89	장애물경기구조물(1)	2023/03/22	1	10,000,000	1,666,666	8,333,334		2,000,000	3,666,666	6,333,334
훈련/경기용품	300090	레이저발사기	2023/05/17	23	11,500,000	1,533,333	9,966,667		2,300,000	3,833,333	7,666,667
훈련/경기용품	300091	경기용TV(수영)	2023/07/07	1	1,610,000	161,000	1,449,000		322,000	483,000	1,127,000
훈련/경기용품	300092	테블릿PC(수영)	2023/07/07	1	370,000	37,000	333,000		74,000	111,000	259,000
훈련/경기용품	300093	타겟거치대/빠레트보관함	2023/07/25	1	2,064,000	206,400	1,857,600		412,800	619,200	1,444,800
훈련/경기용품	300094	타겟거치대/빠레트보관함	2023/07/25	1	2,064,000	206,400	1,857,600		412,800	619,200	1,444,800
훈련/경기용품	300095	타겟거치대/빠레트보관함	2023/07/25	1	2,064,000	206,400	1,857,600		412,800	619,200	1,444,800
훈련/경기용품	300096	타겟거치대/빠레트보관함	2023/07/25	1	2,064,000	206,400	1,857,600		412,800	619,200	1,444,800
훈련/경기용품	300097	타겟거치대/빠레트보관함	2023/07/25	1	2,064,000	206,400	1,857,600		412,800	619,200	1,444,800

훈련/경기용품	300098	장애물경기 구조물	2023/10/06	1	15,985,000	799,250	15,185,750		3,197,000	3,996,250	11,988,750	
훈련/경기용품	300099	장애물경기 구조물00	2023/10/06	1	15,985,000	799,250	15,185,750		3,197,000	3,996,250	11,988,750	
훈련/경기용품	300100	E-START 무선 타입	2024/05/13	1				1,430,000	190,666	190,666	1,239,334	
훈련/경기용품	300101	소형전광판-1	2024/05/13	1				3,630,000	484,000	484,000	3,146,000	
훈련/경기용품	300102	소형전광판-2	2024/05/13	1				3,630,000	484,000	484,000	3,146,000	
훈련/경기용품	300103	노트북(LG<16ZD90R>)	2024/06/24	1				2,800,000	326,666	326,666	2,473,334	
훈련/경기용품	300104	장애물경기구조물(Step)	2024/03/10	1				3,674,000	612,333	612,333	3,061,667	
훈련/경기용품	300105	장애물경기구조물(Big weel)	2024/03/10	1				12,430,000	2,071,666	2,071,666	10,358,334	
훈련/경기용품	300106	장애물경기구조물(Rings)	2024/03/10	1				15,070,000	2,511,666	2,511,666	12,558,334	
훈련/경기용품	300107	장애물경기구조물(Balance bea	2024/03/10	1				1,760,000	293,333	293,333	1,466,667	
훈련/경기용품	300108	장애물경기구조물(Wheels)	2024/03/10	1				17,160,000	2,860,000	2,860,000	14,300,000	
훈련/경기용품	300109	장애물경기구조물(Finish wall)	2024/03/10	1				19,906,000	3,317,666	3,317,666	16,588,334	
훈련/경기용품	300110	장애물경기구조물(swing glob	2024/06/11	1				7,800,000	910,000	910,000	6,890,000	
훈련/경기용품	300111	장애물경기구조물(tilting ladde	2024/06/11	1				5,800,000	676,666	676,666	5,123,334	
훈련/경기용품	300112	마사지베드	2024/02/20	1				2,200,000	403,333	403,333	1,796,667	
훈련/경기용품	300113	사지압박순환장치	2024/06/24	1				2,200,000	256,666	256,666	1,943,334	
훈련/경기용품	300114	아이스머신	2024/06/24	1				2,200,000	256,666	256,666	1,943,334	
훈련/경기용품	300115	풀 레그부츠-1	2024/06/24	1				1,062,600	123,970	123,970	938,630	
훈련/경기용품	300116	풀 레그부츠-2	2024/06/24	1				1,062,600	123,970	123,970	938,630	
훈련/경기용품		소계		300	400,423,741	233,958,315	166,465,426	103,815,200	63,955,718	297,914,033	206,324,908	
마필(생물자산)	400011	카르센	2011/07/15	1	35,000,000	34,999,000	1,000			34,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12	처칠	2012/05/18	1	33,000,000	32,999,000	1,000			32,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17	체키	2013/07/25	1	40,000,000	39,999,000	1,000			39,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18	루이스르바우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1,865,667	31,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19	갈루아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1,865,667	31,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21	촉퍼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1,865,667	31,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22	인터내셔널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1,865,667	31,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23	더바루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1,865,667	31,999,000	1,000	
마필(생물자산)	400024	시르칸	2017/08/01	1	32,159,960	20,635,974	11,523,986		3,215,996	23,851,970	8,307,990	
마필(생물자산)	400025	필센스삼페인사워	2017/08/01	1	32,159,960	20,635,974	11,523,986		3,215,996	23,851,970	8,307,990	
마필(생물자산)	400027	디바엘	2019/12/27	1	24,679,121	10,077,307	14,601,814		2,467,912	12,545,219	12,133,902	
마필(생물자산)	400028	크리스트만	2019/12/27	1	24,679,121	10,077,307	14,601,814		2,467,912	12,545,219	12,133,902	
마필(생물자산)	400029	퀸테라3	2019/12/27	1	24,679,122	10,077,307	14,601,815		2,467,912	12,545,219	12,133,903	
마필(생물자산)		소계		13	406,357,284	330,167,534	76,189,750	0	23,164,063	353,331,597	53,025,687	
		총계		422	875,694,265	612,169,815	263,524,450	107,595,200	94,782,763	706,952,578	276,336,887	

투자자산관리대장

(2024.12.31 현재)

회 사 명 : (사)대한근대5중연맹

계정과목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일자	수량	기초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장부가액	당기상각비	당기말상각누계액	당기말장부가액	양도/폐기일
보증금		콘도회원권(무주리조트)	1991/06/25	1	28,400,000						
보증금		소 계		1	28,400,000	-	-	-	-	-	

폐기자산 관리대장

(2024.12.31 현재)

계정과목	자산코드	자산명	취득일자	수량	기초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장부가액	신규취득및증가	당기 상각비	당기말상각누계액	당기말장부가액	양도/폐기일
마필(생물자산)	400009	레참프	2011/07/15	1	35,000,000	34,999,000	1,000			34,999,000		2024/10/25
마필(생물자산)	400014	콜오프듀티	2012/05/18	1	33,000,000	32,999,000	1,000			32,999,000		2024/02/26
마필(생물자산)	400015	리마로	2013/07/25	1	40,000,000	39,999,000	1,000			39,999,000		2024/02/26
마필(생물자산)	400020	론자	2014/08/29	1	32,000,000	30,133,333	1,866,667			30,133,333		2024/11/22
마필(생물자산)	400026	캡틴잭스페로우	2017/08/01	1	32,159,960	20,635,974	11,523,986			20,635,974		2024/02/26
마필(생물자산)		소계		5	172,159,960	158,766,307	13,393,653	0	0	158,766,307	0	

2025년

사업계획서 (안)

예산계획서 (안)

사단
법인 대한근대5종연맹

목 차

사 업 계 획 (안)	1
○ 세부사업계획	4
○ 생활·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9
○ 육 성 사 업	9
○ 교 육 사 업	9
○ 특 별 사 업	9
예 산 계 획 (안)	10
○ 수입지출총괄표	11
○ 자원별수입지출	12
○ 예 산 내 역 서	13
기금적립현황	33

2025년

사업계획 (안)

2025 사업 계획

□ 비 전

- 더불어 함께, 영광의 비상, 스포츠의 완성 근대5종

□ 5대 전략과제

- 지속 가능한 발전
- 우수선수육성 기반조성
- 조직의 신뢰성 강화
-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 가치계고 및 위상정립

□ 세 부 과 제

- 지속 가능한 발전
 - 1)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전력 강화
 - 2) 전문 및 생활 체육 상생 발전 도모
- 우수선수육성 기반조성
 - 1) 체계적인 국가대표(국가대표 이하 포함) 지원 강화
 - 2) 장애인 경기 적응 지원 강화

2025 사업 계획

○ 조직의 신뢰성 강화

- 1) 스포츠인권보호 및 승부조작,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2) 경기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 1) 레이저런 및 장애물 경기를 활용한 근대5종 저변확대
- 2)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근대5종 인지도 개선

○ 국제스포츠 위상 정립

- 1) 국제기구 임원 활동 및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근대5종 위상 강화

세 부 사 업 계 획

○ 지속 가능한 발전

1)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전력 강화

가. 일정.장소 : 2026. 9. 16. ~ 9. 20. / 일본, 나고야

나. 메달수 : 4개 ※ 남.여 개인 및 단체

다. 장애물 경기 도입 첫 종합대회인 만큼, 이에 대응한 전략 수립

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마. 다양한 장애물 경기 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코치 영입

바. 국제대회 파견, 경험 축적

- 국제대회 파견계획

No	대 회 명	일 정	장 소	비 고
1	제1차 월드컵	2. 25. ~ 3. 1.	이집트, 카이로	미 참 가
2	제2차 월드컵	4. 22. ~ 4. 26.	헝가리, 부다페스트	13명(지도자 5, 선수 8)
3	제3차 월드컵	5. 7. ~ 5. 11.	불가리아, 소피아	13명(지도자 5, 선수 8)
4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21)	6. 25. ~ 6. 29.	헝가리, 세케슈페헤르바	11명(지도자 3, 선수 8)
5	월드컵 결승	7. 4. ~ 7. 6.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3명(지도자 5, 선수 8)
6	세계선수권대회(릴레이)	7. 8. ~ 7. 13.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3명(지도자 5, 선수 8)
7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7)	7. 17. ~ 7. 2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11명(지도자 3, 선수 8)
8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5)	8. 13. ~ 8. 1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11명(지도자 3, 선수 8)
9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9)	8. 21. ~ 8. 24.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11명(지도자 3, 선수 8)
10	세계선수권대회	8. 27. ~ 8. 31.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13명(지도자 5, 선수 8)
11	아시아선수권대회(Senior & U19)	11. 9. ~ 11. 16.	일본, 안조	

2) 전문 및 생활체육 상생 발전 도모

가. 국내대회 계획

No	대 회 명	일 정	장 소	비 고
----	-------	-----	-----	-----

세 부 사 업 계 획

1	제44회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	3. 14. ~ 3. 19.	강원, 홍천	팀 대항
2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 13. ~ 6. 18.	전남, 해남	시·도대항
3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8. 1. ~ 8. 6.	강원, 인제	팀 대항
4	제42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8 ~ 9월 협의	경북, 문경	팀 대항
5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 24. ~ 5. 27.	경상남도	시·도대항
6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 17. ~ 10. 23.	부산광역시	시·도대항
7	제27회 한국학생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 6. ~ 5. 10.	강원, 홍천	팀 대항
8	제12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 12. ~ 5. 16.	미 정	팀 대항
9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 2. ~ 4. 5.	대구체육고등학교	팀 대항

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대회 개최

구 분	내 용	비 고
동호인 대회	후원사 섭외 결정	레이저런 및 장애물 경기를 활용한 이벤트 대회
레이저런 대회	"	여학생스포츠교실 참여학교 대상 시행

다. 왕중왕전 개최

- 전 부별을 대상으로 한 상금대회 개최
- 동호인 참여, 별도 대회 추진

○ 우수선수 육성 기반 조성

1) 체계적인 국가대표(국가대표 이하 포함) 지원 강화

구 분	인 원	훈 련 일 수	비 고
국가대표	22명(8/14<남 7, 여 7>)	220일	국외 50일
후보선수	17명(2/15<남 8, 여 7>)	동.하계 40일	국외 10일
청소년대표	19명(4/15<남 8, 여 7>)	하계 20일	국외 10일
꿈나무선수	24명(4/20<남 10, 여 10>)	동.하계 24일	국외 10일

2) 국가대표

세 부 사 업 계 획

가. 선발방법

- 연령 제한 없이 선발, 단 고등부 이하 개인성적 상한 제한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는 선발전 2회 실시

나. 지원계획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 대응전략 참조

3) 국가대표 이하(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선수)

가. 선발방법

-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가능 연령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발
- 장애물 경기 가능 선수 중심, 국내대회 기록분석을 활용한 선발전으로 우수선수 선발

나. 지원계획

- 장애물 경기 훈련 지도 프로그램 지원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촌 훈련 지원 ※ **진천선수촌과 협의 후**
- 예산 편성 가능 시, 우수 고등학교 지도자 국제대회 파견

○ 조직의 신뢰성 강화

1) 스포츠인권보호 및 승부조작,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 가. 스포츠 인권 교육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속적사업으로 추진
 - ※ 각 대회 개최식 전 참가선수 대상으로 교육 실시

나.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 자질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강화

- ※ 규정 외 품행 및 언행에 대한 교육 강화

다. 임·직원 행정능력 향상 교육 : 체육회 및 정부 교육 파견 강화

- ※ 필요시 개별 교육 기회 제공

라.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

- 소통 : 공문, 홈페이지, SNS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

세 부 사 업 계 획

- 협력 :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활용, 행정·회계 등 교육 지원

2)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및 육성 역량 지원

가. 연맹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위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나. 육성 역량 지원 : 16개 시·도연맹 지원 → 146백만원

3) 조직의 역량 강화

가. 마케팅을 활용한 후원사 및 공급업체 모집

업 체	품 목	사 용 처	후원금 및 현물
우리은행	후원금	훈련 및 파견, 기타 사업비	2.2억
르꼬끄	후원금, 현물	"	후원금 2천만원, 현물 5천만원
파르마인터내셔널	"	"	5천만원 상당

3) 체육기금 지원 증대

가. 정부 주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상위 등급 선정으로 체육기금 지원 유지 및 증대

나.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따른 훈련 체육기금 지원 확대

○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동기 유발

1) 레이저런 및 장애물 경기를 활용한 근대5종 저변 확대

가. 학교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구 분	내 용	비 고
여학생스포츠교실	초, 중, 고 여학생 대상 실시	
레이저런·장애물대회	동호인 이벤트 대회	

2)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근대5종 인지도 개선

가. 각종 국내대회 개최 및 결과 언론 보고

나. 국제대회 입상 및 스토리 언론 보도

다. 연맹 주최 대회 방송 중계

세 부 사 업 계 획

라. 마케팅 대행업체를 활용한 국민참여형 이벤트 행사 개최

마. 국대스마트즈 통한 근대5종 홍보

○ 국제스포츠 위상 정립

1) 국제기구 임원 활동 및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근대5종 위상 강화

가. 국제회의 파견

계	아시아연맹		국제연맹	
	집행위	총회	집행위	총회
4	1	1	2	-

2) 아시아연맹 지원 : 예산 및 저개발 회원국 선수 초청사업 등

가. 지원계획

계	지원	초청	비 고
92백만원	50	42	

기 타 사 업

□ 생활.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 여학생스포츠교실(레이저런 강습)
- 레이저런 시티투어(생활체육대회)

□ 육 성 사 업

- 16개 시.도지부 및 학생.실업연맹 예산 지원
- 우수학교 육성비 지원

□ 교 육 사 업

-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 심판.지도자 자질향상 및 우수 심판.지도자 양성
- 임.직원 직무교육 : 외부 교육기관 교육.역량 강화
- 성(폭력) 사전예방 교육 : 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 특 별 사 업

- 골드프로젝트사업 ※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 및 (금)메달 획득
- 아시아선수권대회 국내개최 ※ 아시아연맹 총회 개최를 위해 전략 유치
- 2024 아시아근대5종연맹 총회

2 0 2 5 년

예 산 계 획 (안)

수입·지출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적 요	과 목		금 액	적 요
체육진흥기금	공 단 지 원 비	2,581,163	인건비, 퇴직적립금, 행정정보비, 국가대표 훈련비, 국외전지훈련,	경 상 비	인 건 비	798,141	인건비, 퇴직적립금, 특별성과금 등
	경기력지원비	181,483	국가대표 훈련비, 국내대회비, 국제대회비		운 영 비	183,210	복리후생비, 관리비, 업무비 등
	소 계	2,762,646	대회, 훈련		소 계	981,351	
LH 기부금	2024 지 원 비	2,080,000	경상비, 훈련비, 국내.외대회비 등	국 내 사 업	국내대회 및 학교.생활체육사업비	863,280	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기타수입등	공 단 기 금 과 실 금	31,000	퇴직 적립금 충당		훈 련 비	2,161,161	국가대표(후보, 청소년, 꿈나무)훈련비
	법 인 기 금 과 실 금	30,000	퇴직금 적립 및 복리후생비		훈 련 장 관 리 비	174,812	승마장 및 훈련차량 관리비
	법 인 세 환 급 금	9,000	퇴직 적립금 충당		회 의 . 교 육 . 포 상 . 육 성 비	280,600	회의, 교육, 포상, 육성사업비
	종 합 대 회 지 원 비	51,850	전국체전 운영비		홍 보 . 전 산 운 영 비	88,000	홍보 및 전산관리 운영비
	대 회 유 치 비	533,985	연맹주최대회 지자체 유치비	비 품 렌 탈 . 구 입 비	36,400	사무비품 구매 및 렌탈	
후 원 금	256,000	국가대표 훈련, 파견 등 사업비	마 필 구 입 비	0			
임 대 사 업 비	12,400	종합대회 장비 임대	소 계	3,604,253			
대 회 참 가 비	120,000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단 참가비	국 제 사 업	국 제 대 회 . 국 외 훈 련 비	707,026	국제대회 및 국외훈련 파견비	
소 계	1,044,235			국 제 활 동 비	46,916	국외정보 수집 및 국외 활동	
자체기금	2024 년 사 업 비	254,616	연맹 사업 부족 예산 충당	소 계	753,942		
				아 시 아 연 맹 지 원	50,000	아시아연맹 사업비	
				예 비 비	20,000		
				특 별 사 업	731,951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비 장애물경기 시설 시도 지원비	
총 계		6,141,497		총 계		6,141,497	

재 원 별 수 입·지 출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과 목	금 액	국 고 보 조 금 등					LH 기 부 금
				소 계	공단지원금	경기력지원비	과실금,기타수입등	자체기금	소계
계	6,141,497	계	6,141,497	4,061,497	2,581,163	181,483	1,044,235	254,616	2,080,000
◦ 체육회.기타	4,061,497	◦ 경 상 비	981,351	396,845	307,430	-	70,000	19,415	584,506
- 공단지원금	2,581,163	- 인 건 비	798,141	367,645	283,430	-	70,000	14,215	430,496
- 경기력지원비	181,483	- 운 영 비	183,210	29,200	24,000	-	-	5,200	154,010
- 기타수입등	1,044,235	◦ 국 내 사 업	3,604,253	2,534,083	1,670,214	150,384	638,235	75,250	1,070,170
(공단기금과실금)	31,000	- 국내대회비	803,180	743,935	-	90,450	578,235	75,250	59,245
(법인기금과실금)	30,000	- 학교.생활체육사업비	60,100	56,000	56,000	-	-	-	4,100
(법인세환급금)	9,000	- 훈 련 비	2,161,161	1,714,148	1,614,214	59,934	40,000	-	447,013
(종합대회지원비)	51,850	- 훈련장 관리비	174,812	-	-	-	-	-	174,812
(대회유치금)	533,985	- 회 의 비	56,400	-	-	-	-	-	56,400
(후원금)	256,000	- 교 육 비	39,200	-	-	-	-	-	39,200
(임대사업비)	12,400	- 육성지원금	107,000	-	-	-	-	-	107,000
(대회참가비)	120,000	- 포 상 비	78,000	-	-	-	-	-	78,000
- 자체기금	254,616	- 흥 보 비	42,000	-	-	-	-	-	42,000
◦ LH(기부금)	소계	- 전산운영비	46,000	20,000	-	-	20,000	-	26,000
		- 비품 및 렌탈비	36,400	-	-	-	-	-	36,400
		- 마필구입비	-	-	-	-	-	-	-
		◦ 국 제 사 업	753,942	620,618	473,519	31,099	116,000	-	133,324
		- 국제대회.국외훈련비	707,026	613,095	465,996	31,099	116,000	-	93,931
		- 국제활동비	46,916	7,523	7,523	-	-	-	39,393
		◦ 아시아연맹지원금	50,000	-	-	-	-	-	50,000
		◦ 예 비 비	20,000	20,000	-	-	-	20,000	-
		◦ 특별사업비	731,951	489,951	130,000	-	220,000	139,951	242,000
		- 아시아선수권대회	571,951	489,951	130,000	-	220,000	139,951	82,000
		- 장애물경기시설지원	160,000	-	-	-	-	-	160,000

예산내역서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목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계				6,251,498	5,009,085	2,385,621	824,664	30,000	1,768,800	65	35
경 상 비				981,352	1,160,140	257,739	203,000	-	699,401	40	60
사무국인건비				798,142	954,350	233,739	203,000	-	517,611	46	54
보 수				798,142	954,350	233,739	203,000	-	517,611	46	54
기본급				428,276	454,053	205,522	50,000	-	198,531	56	44
									* 사무처 11명 - 상임부회장1, 사무처장1, 단장1, 차장1, 과장1, 대리4, 직원 2 = 454,052,520		
상여금				129,371	139,376	-	-	-	139,376	0	100
									* 사무처 10명 기본급 400% (직원 - 국제전문 제외) - 상임부회장1, 사무처장1, 단장1, 차장1, 과장1, 대리4, 직원 1 = 139,375,640		
중식보조비				26,400	24,000	-	-	-	24,000	0	100
									* 중 식 비 200,000원 × 10명 × 12월 = 24,000,000		
직책수당				4,200	4,200	-	-	-	4,200	0	100
									- 처 장 200,000원 × 12월 = 2,400,000 - 국제협력단장(부장) 150,000원 × 12월 = 1,800,000		
특별성과금				26,215	30,270	15,000	13,000	-	2,270	93	7
									* 특별성과금(경영평가) 454,052,520원 ÷ 12월 * 80% = 30,270,168		
퇴직적립금				117,828	200,000	13,217	120,000	-	66,783	67	33
									* '24~25 퇴직적립금 = 200,000,000		
년차수당				28,222	59,002	-	-	-	59,002	0	100
									* 2025년 연차수당 454,052,520원 ÷ 12 ÷ 209 × 12개월 × 15시간 = 32,587,501 * 2024년 미지급연차수당 26,414,000		
초과근무수당				37,629	43,450	-	20,000	-	23,450	46	54
									* 초과근무수당 454,052,520원 ÷ 12 ÷ 209 × 12개월 × 20시간 = 43,450,001		
운영비				183,210	205,790	24,000	-	-	181,790	12	88
일반수용비				33,600	34,920	-	-	-	34,920	0	100
사무용품구입비				9,600	9,600	-	-	-	9,600	0	100
									* 사무용품구입비 800,000원 × 12월 = 9,600,000		
인쇄비				6,000	4,800	-	-	-	4,800	0	100
									* 사무인쇄비 400,000원 × 12월 = 4,800,000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비				14,400	14,520	-	-	-	14,520	0	100
									* 법률자문수수료 550,000원 × 12월 = 6,600,000 * 회계프로그램기장료 660,000원 × 12월 = 7,920,000		
각종수수료				3,600	6,000	-	-	-	6,000	0	100
									* 각종수수료 500,000원 × 12월 = 6,000,000		
공공요금및제세비				19,600	21,200	-	-	-	21,200	0	100
통신비				10,200	12,000	-	-	-	12,000	0	100
									* 일반전화료 등 500,000원 × 12월 = 6,000,000 * 우편요금 100,000원 × 12월 = 1,200,000 * 유무선통신비 400,000원 × 12월 = 4,800,000		
사무국관리비				3,600	4,200	-	-	-	4,200	0	100
									* 관리비 350,000원 × 12월 = 4,200,000		
단체회비				5,400	4,800	-	-	-	4,800	0	100
									* 회원종목단체회비 40,000원 × 10명 × 12월 = 4,800,000		
보증보험				400	200	-	-	-	200	0	100
									* 신용보증보험비 200,000		
특근매식비				9,600	9,600	-	-	-	9,600	0	100
특근식대비				9,600	9,600	-	-	-	9,600	0	100
									* 특근식대비 800,000원 × 12월 = 9,600,000		
복리후생비				69,050	86,930	24,000	-	-	62,930	28	72
건강검진지원비				4,050	3,150	-	-	-	3,150	0	100
									* 종합검진 350,000원 × 4명(만40세이상) = 1,400,000 * 일반검진 250,000원 × 7명(만40세이하) = 1,750,000		
4대보험비				60,000	73,500	24,000	-	-	49,500	33	67
									* 국민연금 = 28,000,000 * 건강보험 = 28,000,00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산재보험 = 7,500,000		
										* 고용보험 = 10,000,000		
			단체상해보험	-	5,280	-	-	-	5,280	* 단체상해보험 40,000원 × 11명 × 12월 = 5,280,000	0	100
			명절가족선물비	5,000	5,000	-	-	-	5,000	* 명절가족선물비 = 5,000,000	0	100
		관리용역비		10,200	10,800	-	-	-	10,800		0	100
			회계관리비	3,000	3,000	-	-	-	3,000	* 회계프로그램관리비 = 3,000,000	0	100
			전산관리비	7,200	7,800	-	-	-	7,800	* 홈페이지관리비 등 650,000원 × 12월 = 7,800,000	0	100
		여비		14,400	14,400	-	-	-	14,400		0	100
			국내여비	14,400	14,400	-	-	-	14,400	* 국내출장 200,000원 × 6명 × 12월 = 14,400,000	0	100
		업무추진비		26,760	27,940	-	-	-	27,940		0	100
			사업추진비	18,000	18,000	-	-	-	18,000	* 사업추진비 1,500,000원 × 12월 = 18,000,000	0	100
			경조사비	7,200	8,400	-	-	-	8,400	* 경조사비 800,000원 × 12월 = 8,400,000	0	100
			체육주간비	1,560	1,540	-	-	-	1,540	* 체육주간행사 70,000원 × 2회 × 11명 = 1,540,000	0	100
국내사업				3,604,253	2,990,578	1,603,212	548,920	10,000	828,446			
	국내대회			803,180	640,120	116,150	451,520	-	72,450		89	11
	제42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 대회 (3월 / 경북.문경)			118,750	120,320	25,000	86,000	-	9,320		92	8
		인건비		42,860	27,300	0	27,300	0	0		100	0
			담당이사.심판수당 (인건비 등)	42,860	27,300	-	27,300	-	-	* 경기임원직무비 20,000원 × 13명 × 30시간 = 7,800,000 * 심판.운영요원 등 30,000원 × 50명 × 13시간 = 19,500,000	100	0
		공공요금 및 제세		1,500	3,000	-	-	-	3,000		0	100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500	3,000	-	-	-	3,000	* 주최자배상보험 3,000,000원 × 1회 = 3,000,000	0	100
		경기장준비비		20,400	37,500	-	37,500	-	-		100	0
			경기장준비비 등	20,400	37,500	-	37,500	-	-	* 경기용장비임차 시.도연맹장비임차 등 = 3,500,000 * 경기장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 각종시설물임차 등 10,000,000원 × 1식 = 10,000,000 * 의료지원 400,000원 × 2대 × 5일 = 4,000,000	100	0
		홍보비		26,000	32,180	25,000	7,180	-	-		100	0
			홍보비 등	26,000	32,180	25,000	7,180	-	-	* 인터넷중계 등 12,500,000원 × 2회 = 25,000,000 * 현수막 등 7,180,000원 × 1식 = 7,180,000	100	0
		시상비		8,500	9,320	-	9,320	-	-		100	0
			시상품 등	8,500	9,320	-	9,320	-	-	* 트로피 180,000원 × 22개 = 3,960,000 * 메달 12,000원 × 432개 = 5,184,000 * 금형비 176,000원 × 1회 = 176,000	100	0
		일반수용비		3,450	1,200	-	1,200	-	-		100	0
			인쇄비 등	3,450	1,200	-	1,200	-	-	* 프로그램책자 8,000원 × 150개 = 1,200,000	100	0
		여비		16,040	9,820	-	3,500	-	6,320		36	64
			국내여비	16,040	9,820	-	3,500	-	6,320	* 대회.임직원숙박비 70,000원 × 12실 × 7일 = 5,880,000 * 대회.임직원식비 21,000원 × 20명 × 7일 = 2,940,000	36	64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간 식 비 (물 포 함) 4,000원 × 50명 × 5일 = 1,000,000		
	제 54 회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5월 / 경상남도)			29,000	38,370	15,150	15,500	-	7,720		80 20
		인 건 비		7,200	7,480	5,400	0	0	2,080		72 28
			담당이사·심판수당 (인건비 등)	7,200	7,480	5,400	-	-	2,080	* 경기임원직무비 20,000원 × 13명 × 8시간 = 2,080,000 * 심판·운영요원 등 60,000원 × 30명 × 3일 = 5,400,000	72 28
		경 기 장 준 비 비		11,000	8,500	0	8,500	0	0		100 0
			경기장 준비비 등	11,000	8,500	-	8,500	-	-	* 경기용 장비 임차 시.도연맹 장비 임차 등 = 3,500,000 * 경기장 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2,500,000원 × 2회 = 5,000,000	100 0
		홍 보 비		-	7,000	0	7,000	0	0		100 0
			홍보비 등	-	7,000	-	7,000	-	-	* 인터넷 중계 등 7,000,000원 × 1회 = 7,000,000	100 0
		일 반 수 용 비		1,800	800	-	-	-	800		0 100
			인쇄비 등	1,800	800	-	-	-	800	* 프로그램 책자 8,000원 × 100개 = 800,000	0 100
		여 비		9,000	14,590	9,750	0	0	4,840		67 33
			국내여비	9,000	14,590	9,750	-	-	4,840	* 대회.임직원 숙박비 70,000원 × 10실 × 4일 = 2,800,000 * 대회.임직원 식비 21,000원 × 20명 × 4일 = 1,680,000 * 간 식 비 (물 포 함) 4,000원 × 30명 × 3일 = 360,000 * 심판.운영요원 식비 25,000원 × 30명 × 3일 = 2,250,000 * 심판.운영요원 숙박비 70,000원 × 30명 × 3일 = 6,300,000 * 심판.운영요원 교통비 40,000원 × 30명 × 1회 = 1,200,000	67 33
	전 국 규 모 연 맹 체 회 장 기 대 회 지 원 비			6,000	6,000	0	0	0	6,000		0 100
		일 반 수 용 비	홍보물 등 제작비	6,000	6,000	-	-	-	6,000	* 대 회 지 원 (6,000,000원) - 학 생 연 맹 전 = 3,000,000 - 실 업 연 맹 전 = 3,000,000	0 100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근대5종 경기 대회 (7월 / 전남.해남)			114,350	114,500	-	111,000	-	3,500		97 3
		인 건 비		42,860	27,300	-	27,300	-	-		100 0
			담당이사·심판수당 (인건비 등)	42,860	27,300	-	27,300	-	-	* 경기임원직무비 20,000원 × 13명 × 30시간 = 7,800,000 * 심판·운영요원 등 30,000원 × 50명 × 13시간 = 19,500,000	100 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500	3,000	0	3,000	0	0		100 0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500	3,000	-	3,000	-	-	* 주 최 자 배 상 보 험 3,000,000원 × 1회 = 3,000,000	100 0
		경 기 장 준 비 비		19,000	26,500	-	23,000	-	3,500		87 13
			경기장 준비비 등	19,000	26,500	-	23,000	-	3,500	* 경기용 장비 임차 시.도연맹 장비 임차 등 = 6,500,000 * 경기장 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87 13
		홍 보 비		23,000	39,000	-	39,000	-	-		100 0
			홍보비 등	23,000	39,000	-	39,000	-	-	* 인터넷 중계 등 15,000,000원 × 2회 = 30,000,000 * 현 수 막 등 9,000,000원 × 1식 = 9,000,000	100 0
		시 상 비		8,500	5,640	-	5,640	-	-		100 0
			시상품 등	8,500	5,640	-	5,640	-	-	* 트 로 피 180,000원 × 3개 = 540,000	100 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메 달 12,000원 × 400개 = 4,800,000		
										* 금 형 비 150,000원 × 2회 = 300,000		
		일 반 수 용 비		3,450	3,240	-	3,240	-	-		100	0
			인 쇄 비 등	3,450	1,200	-	1,200	-	-	* 프 로 그 램 책 자 8,000원 × 150개 = 1,200,000	100	0
			예 비 비 등	-	2,040	-	2,040	-	-	* 예 비 비 2,040,000원 × 1회 = 2,040,000	100	0
		여 비		16,040	9,820	-	9,820	-	-		100	0
			국 내 여 비	16,040	9,820	-	9,820	-	-	* 대 회 . 임 직 원 숙 박 비 70,000원 × 12실 × 7일 = 5,880,000 * 대 회 . 임 직 원 식 비 21,000원 × 20명 × 7일 = 2,940,000 * 간 식 비 (물 포 함) 4,000원 × 50명 × 5일 = 1,000,000	100	0
	제 44 회 전 국 근 대 5 종 선 수 권 대 회 (4월 / 강원, 홍천)			119,750	124,320	28,000	86,320	-	10,000		92	8
		인 건 비		42,860	27,300	-	27,300	-	-		100	0
			담 당 이 사 . 심 판 수 당 (인 건 비 등)	42,860	27,300	-	27,300	-	-	* 경 기 임 원 직 무 비 20,000원 × 13명 × 30시간 = 7,800,000 * 심 판 . 운 영 요 원 등 30,000원 × 50명 × 13시간 = 19,500,000	100	0
		공 공 요 금 및 제 세		1,500	3,000	-	3,000	-	-		100	0
			주 최 자 배 상 책 임 보 험	1,500	3,000	-	3,000	-	-	* 주 최 자 배 상 보 험 3,000,000원 × 1회 = 3,000,000	100	0
		경 기 장 준 비 비		21,400	33,500	-	33,500	-	-		100	0
			경 기 장 준 비 비 등	21,400	33,500	-	33,500	-	-	* 경 기 용 장 비 임 차 시.도연맹 장비 임차 등 = 3,500,000 * 경 기 장 설 치 . 철 거 . 운 송 . 상 . 하 차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 각 종 시 설 물 임 차 등 10,000,000원 × 1식 = 10,000,000	100	0
		홍 보 비		26,000	38,000	28,000	-	-	10,000		74	26
			홍 보 비 등	26,000	38,000	28,000	-	-	10,000	* 인 터 넷 중 계 등 14,000,000원 × 2회 = 28,000,000 * 현 수 막 등 10,000,000원 × 1식 = 10,000,000	74	26
		시 상 비		8,500	8,140	-	8,140	-	-		100	0
			시 상 품 등	8,500	8,140	-	8,140	-	-	* 트 로 피 180,000원 × 22개 = 3,960,000 * 메 달 10,000원 × 400개 = 4,000,000 * 금 형 비 180,000원 × 1회 = 180,000	100	0
		일 반 수 용 비		3,450	4,560	-	4,560	-	-		100	0
			인 쇄 비 등	3,450	2,250	-	2,250	-	-	* 프 로 그 램 책 자 15,000원 × 150개 = 2,250,000	100	0
			예 비 비 등	-	2,310	-	2,310	-	-	* 예 비 비 2,310,000원 × 1회 = 2,310,000	100	0
		여 비		16,040	9,820	-	9,820	-	-		100	0
			국 내 여 비	16,040	9,820	-	9,820	-	-	* 대 회 . 임 직 원 숙 박 비 70,000원 × 12실 × 7일 = 5,880,000 * 대 회 . 임 직 원 식 비 21,000원 × 20명 × 7일 = 2,940,000 * 간 식 비 (물 포 함) 4,000원 × 50명 × 5일 = 1,000,000	100	0
	제 3 회 대 한 체 육 회 장 배 전 국 근 대 5 종 경 기 대 회 (6월 / 강원 . 인 제)			119,750	125,440	28,000	90,000	-	7,440		94	6
		인 건 비		42,860	27,300	-	27,300	-	-		100	0
			담 당 이 사 . 심 판 수 당 (인 건 비 등)	42,860	27,300	-	27,300	-	-	* 경 기 임 원 직 무 비 20,000원 × 13명 × 30시간 = 7,800,000 * 심 판 . 운 영 요 원 등 30,000원 × 50명 × 13시간 = 19,500,000	100	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공공요금 및 제세		1,500	4,270	-	4,270	-	-		100	0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500	4,270	-	4,270	-	-	* 주최자배상보험 4,270,000원 × 1회 = 4,270,000	100	0
		경기장준비비		21,400	33,500	-	30,000	-	3,500		90	10
		경기장준비비등		21,400	33,500	-	30,000	-	3,500	* 경기용장비임차 시.도연맹 장비임차 등 = 3,500,000 * 경기장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 각종시설물임차 등 10,000,000원 × 1식 = 10,000,000	90	10
		홍보비		26,000	36,000	28,000	8,000	-	-		100	0
		홍보비등		26,000	36,000	28,000	8,000	-	-	* 인터넷중계 등 14,000,000원 × 2회 = 28,000,000 * 현수막 등 8,000,000원 × 1식 = 8,000,000	100	0
		시상비		8,500	12,300	-	12,300	-	-		100	0
		시상품등		8,500	12,300	-	12,300	-	-	* 트로피 255,000원 × 20개 = 5,100,000 * 메달 18,000원 × 400개 = 7,200,000	100	0
		일반수용비		3,450	2,250	-	2,250	-	-		100	0
		인쇄비등		3,450	2,250	-	2,250	-	-	* 프로그램책자 15,000원 × 150개 = 2,250,000	100	0
		여비		16,040	9,820	-	5,880	-	3,940		60	40
		국내여비		16,040	9,820	-	5,880	-	3,940	* 대회.임직원숙박비 70,000원 × 12실 × 7일 = 5,880,000 * 대회.임직원식비 21,000원 × 20명 × 7일 = 2,940,000 * 간식비(물포함) 4,000원 × 50명 × 5일 = 1,000,000	60	40
	제 105 회 전국 체육 대회 (10월 / 부산광역시)			61,830	91,170	20,000	62,700	-	8,470		91	9
		인건비		14,730	13,200	-	10,000	-	3,200		76	24
		담당이사.심판수당 (인건비등)		14,730	13,200	-	10,000	-	3,200	* 경기임원직무비 20,000원 × 13명 × 30시간 = 7,800,000 * 심판.운영요원 등 60,000원 × 40명 × 5일 = 5,400,000	76	24
		경기장준비비		4,000	23,500	-	23,500	-	-		100	0
		경기장준비비등		4,000	23,500	-	23,500	-	-	* 경기용장비임차 시.도연맹 장비임차 등 = 3,500,000 * 경기장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100	0
		홍보비		16,400	28,000	20,000	8,000	-	-		100	0
		홍보비등		16,400	28,000	20,000	8,000	-	-	* 인터넷중계 등 10,000,000원 × 2회 = 20,000,000 * 현수막 등 8,000,000원 × 1식 = 8,000,000	100	0
		일반수용비		2,000	1,200	-	1,200	-	-		100	0
		인쇄비등		2,000	1,200	-	1,200	-	-	* 프로그램책자 8,000원 × 150개 = 1,200,000	100	0
		여비		24,700	25,270	-	20,000	-	5,270		79	21
		국내여비		24,700	25,270	-	20,000	-	5,270	* 대회.임직원숙박비 70,000원 × 12실 × 7일 = 5,880,000 * 대회.임직원식비 21,000원 × 20명 × 7일 = 2,940,000 * 간식비(물포함) 4,000원 × 50명 × 5일 = 1,000,000 * 심판.운영요원식비 25,000원 × 30명 × 5일 = 3,750,000 * 심판.운영요원숙박비 70,000원 × 30명 × 5일 = 10,500,000 * 심판.운영요원교통비 40,000원 × 30명 × 1회 = 1,200,000	79	21
	제 1 회			213,750	0	-	-	-	-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오른전국근대5총경기대회	인 건 비			42,860	0	-	-	-	-			
		담당이사.심판수당 (기타인건비)		27,420	0	-	-	-	-			
		장비설치.운영요원수당 (기타인건비)		15,440	0	-	-	-	-			
		장비설치.운영요원수당 (기타인건비)		-	0	-	-	-	-			
	일 반 수 용 비			126,250	0	-	-	-	-			
		인 쇄 비		3,450	0	-	-	-	-			
		홍보물등제작비		14,500	0	-	-	-	-			
		운송및상하차		3,000	0	-	-	-	-			
		심판회의비		900	0	-	-	-	-			
		행사지원비		10,400	0	-	-	-	-			
		상 금		94,000	0	-	-	-	-			
	공공요금및제세			1,500	0	-	-	-	-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500	0	-	-	-	-			
	임 차 료			8,000	0	-	-	-	-			
		경기용기구임차료		8,000	0	-	-	-	-			
	일 반 용 역 비			20,000	0	-	-	-	-			
		인터넷방송중계		20,000	0	-	-	-	-			
	여 비			15,140	0	-	-	-	-			
		국내여비		15,140	0	-	-	-	-			
	대회운영비				20,000	20,000	-	-	-	20,000		0
일 반 수 용 비				20,000	20,000	-	-	-	20,000		0	100
물 품 구 입 비				20,000	20,000	-	-	-	20,000	* 심 판 복 구 입 비 400,000원 × 50벌 = 20,000,000	0	100
학교.생활체육사업비				60,100	92,900	-	77,400	10,000	5,500		94	6
생활체육대회개최 (대회명미정)				-	59,400	-	59,400	-	-		100	0
인 건 비				-	17,640	-	17,640	-	-		100	0
심 판 수 당 (기타인건비)				-	9,000	-	9,000	-	-	* 레 이 저 런 20,000원 × 15명 × 18시간 = 5,400,000	100	0
장비설치.운영요원수당 (기타인건비)				-	8,640	-	8,640	-	-	* 장 애 물 설 치 . 철 거 비 200,000원 × 5명 × 2회 = 1,000,000 * 사 격 . 육 상 장 설 치 . 철 거 비 200,000원 × 8명 × 2회 = 3,200,000 * 운 영 요 원 비 130,000원 × 4명 × 2일 = 1,040,000	100	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내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내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청소 용역비 100,000원 × 5명 × 2일 = 1,000,000		
										* 주차요원비 100,000원 × 3명 × 2일 = 600,000		
										* 장내아나운서 50,000원 × 2명 × 18시간 = 1,800,000		
		일반수용비		-	26,300	-	26,300	-	-		100	0
			인쇄비	-	3,200	-	3,200	-	-	* 리플렛 3,000원 × 300부 = 900,000	100	0
										* 기록증(참가증) 및 카바 5,000원 × 300장 = 1,500,000		
										* 선수용배번 2,000원 × 300장 = 600,000		
										* AD카드 4,000원 × 50장 = 200,000		
			홍보물등제작비	-	17,000	-	17,000	-	-	* 사이니지(현수막) 100,000원 × 60장 = 6,000,000	100	0
										* 기념품제작 20,000원 × 300개 = 6,000,000		
										* 시상비		
										- 상금 500,000원 × 2종목 × 2부(남,여) = 2,000,000		
										- 완주기념메달 10,000원 × 300개 = 3,000,000		
			운송 및 상하차	-	2,000	-	2,000	-	-	* 운송 및 상.하차 경비 = 2,000,000	100	0
			심판회의비	-	900	-	900	-	-	* 심판회의비 30,000원 × 30명 = 900,000	100	0
			행사지원비	-	3,200	-	3,200	-	-	* 응급구급차량운영비 200,000원 × 2일 × 3대 = 1,200,000	100	0
										* 운영비(도로,유류비, 기타등) = 2,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	1,500	-	1,500	-	-		100	0
			주최자배상책임보험	-	1,500	-	1,500	-	-	* 주최자배상보험 = 1,500,000	100	0
		임차료		-	8,000	-	8,000	-	-		100	0
			경기용기구임차료	-	8,000	-	8,000	-	-	* 경기장장비 = 3,000,000	100	0
										* 몽골텐트 및 시설물등 = 5,000,000		
		여비		-	5,960	-	5,960	-	-		100	0
			국내여비	-	5,960	-	5,960	-	-	* 대회.임직원숙박비 50,000원 × 5실 × 2박 = 500,000	100	0
										* 심판숙박비 50,000원 × 15실 × 2박 = 1,500,000		
										* 심판식비 40,000원 × 30명 × 3일 = 3,600,000		
										* 간식비(물포함) 4,000원 × 30명 × 3일 = 360,000		
	여학생스포츠교실			60,100	33,500	-	18,000	10,000	5,500		84	16
		일반수용비		59,100	33,500	-	18,000	10,000	5,500		84	16
			강사료	25,600	0	-	-	-	-	* 강사료 = -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장 비 비	28,000	28,000	-	18,000	10,000	-	* 장 비 비 700,000원 × 2set × 20 개 = 28,000,000	100	0
			강 습 회 개 최 비	5,500	5,500	-	-	-	5,500	* 식 비 40,000원 × 30명 × 2일 = 2,400,000 * 숙 박 비 40,000원 × 30명 × 1박 = 1,200,000 * 전 문 강 사 초 빙 300,000원 × 3명 = 900,000 * 장 소 대 여 비 1,000,000원 × 1일 = 1,000,000	0	10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0	-	-	-	-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000	0	-	-	-	-	* 주최자배상보험 = -		
	훈 련 비			2,161,161	1,707,646	1,487,062	0	0	220,584		87	13
	국 가 대 표 훈 련 비			1,752,447	1,331,354	1,223,640	0	0	107,714		92	8
		인 건 비		986,913	953,854	926,140	-	-	27,714		97	3
			국 가 대 표 지 도 자 수 당	459,000	594,960	594,960	-	-	-	○ 공 단 지 원 금 * 강 독 수 당 6,780,000원 × 1명 × 12개월 = 81,360,000 * 코 치 수 당 6,780,000원 × 5명 × 12개월 = 406,800,000 * 체 력 트 레 이 너 수 당 3,050,000원 × 2명 × 12개월 = 73,200,000 * 전 당 팀 2,800,000원 × 1명 × 12개월 = 33,600,000	100	0
			수 당 보 조	10,200	0	-	-	-	-			
			승 마 장 인 건 비	190,213	27,714	-	-	-	27,714	* 회 망 퇴 직 수 당 4,618,961원 × 1명 × 6개월 = 27,713,766	0	100
			선 수 수 당	281,600	281,600	281,600	-	-	-	* 선 수 수 당 80,000원 × 16명 × 220일 = 281,600,000	100	0
			국가대표지도자퇴직금	45,900	49,580	49,580	-	-	-	* 국가대표지도자퇴직금 = 49,580,000	100	0
		복 리 후 생 비		78,600	51,500	51,500	-	-	-		100	0
			중 식 보 조 비	9,600	0	-	-	-	-			
			4 대 보 험 비	69,000	51,500	51,500	-	-	-	* 국 가 대 표 지 도 자 (51,500,000원) - 국 민 연 금 = 21,500,000 - 건 강 보 험 = 20,000,000 - 산 재 보 험 = 4,000,000 - 고 용 보 험 = 6,000,000	100	0
		여 비		557,000	175,000	175,000	-	-	-		100	0
			국 가 대 표 국 내 여 비	557,000	175,000	175,000	-	-	-	○ 공 단 지 원 비 (285,000,000원) * 식 비 50,000원 × 25명 × 60일 = 75,000,000 * 숙 박 비 80,000원 × 25명 × 50일 = 100,000,000	100	0
		일 반 수 용 비		110,900	131,966	51,966	-	-	80,000		39	61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국가대표훈련용품비	80,900	121,966	51,966	-	-	70,000	○	43	57
										* 훈련용품비 (91,966,000원)		
										- 육상복 200,000원 × 16명 × 2벌 = 6,400,000		
										- 육상경기화 300,000원 × 16명 × 2족 = 9,600,000		
										- 코치화 200,000원 × 9명 × 2족 = 9,600,000		
										- 수영품 600,000원 × 16명 = 3,600,000		
										- 유니폼, 언더셔츠 400,000원 × 25명 × 2족 = 20,000,000		
										- 반바지, T셔츠 200,000원 × 25명 × 2족 = 10,000,000		
										- 펜싱브레이드 250,000원 × 16명 × 3정 = 12,000,000		
										- 펜싱레슨장비세트 1,000,000원 × 2세트 = 2,000,000		
										- 의료용품 700,000원 × 12개월 = 8,400,000		
										- 기타용품(가방,모자 등) = 10,366,000		
										* 장애물경기시설구축 10,000,000원 × 3식 = 30,000,000		
			국가대표운영비	30,000	10,000	-	-	-	10,000	* 국가대표운영비 (국내,외전지훈련,선발전,홍보,용품,기타) = 10,000,000	0	100
		임차비		19,034	19,034	19,034	-	-	0		100	0
			국가대표차량임차비	19,034	19,034	19,034	-	-	0	* 국가대표차량렌트비 793,100원 × 2대 × 12월 = 19,034,400	100	0
	골드프로젝트사업			150,000	0	-	-	-	-			
		인건비		90,000	0	-	-	-	-			
			훈련지원트레이너수당	90,000	0	-	-	-	-			
		일반수용비		60,000	0	-	-	-	-			
			연구용역	60,000	0	-	-	-	-			
	국가대표선발전			-	97,320	-	-	-	97,320		0	100
		인건비		-	29,700	-	-	-	29,700		0	100
			담당이사,심판수당 (인건비등)	-	29,700	-	-	-	29,700	* 경기임원직무비 20,000원 × 13명 × 15시간 × 3회 = 11,700,000 * 심판,운영요원 등 20,000원 × 20명 × 15시간 × 3회 = 18,000,000	0	100
		공공요금및제세		-	4,500	-	-	-	4,500		0	100
			주최자배상책임보험	-	4,500	-	-	-	4,500	* 주최자배상보험 1,500,000원 × 3회 = 4,500,000	0	100
		경기장준비비		-	30,000	-	-	-	30,000		0	100
			경기장준비비등	-	30,000	-	-	-	30,000	* 경기장설치,철거,운송,상하차 등 7,000,000원 × 3회 = 21,000,000 * 각종시설물임차 등 3,000,000원 × 1식 × 3회 = 9,000,000	0	100
		일반수용비		-	1,500	-	-	-	1,500		0	100
			인쇄비등	-	1,500	-	-	-	1,500	* 현수막 등 500,000원 × 1식 × 3회 = 1,500,000	0	100
		여비		-	31,620	-	-	-	31,620		0	100
			국내여비	-	31,620	-	-	-	31,620	* 대회,임직원숙박비 70,000원 × 12실 × 6일 × 3회 = 15,120,000 * 대회,임직원식비 30,000원 × 25명 × 6일 × 3회 = 13,500,000	0	10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간 식 비 (물 포 함) 4,000원 × 50명 × 5일 × 3회 = 3,000,000		
	후보선수훈련비			112,008	98,560	93,040	-	-	5,520		94	6
		인건비		44,000	14,000	14,000	-	-	-		100	0
			전임지도자수당보조	30,000	0	-	-	-	-			
			전문지도자수당	5,600	5,600	5,600	-	-	-	* 전문지도자수당 100,000원 × 2명 × 14일 × 2회 = 5,600,000	100	0
			선수수당	8,400	8,400	8,400	-	-	-	* 선수수당 20,000원 × 15명 × 14일 × 2회 = 8,400,000	100	0
		여비		42,840	59,472	59,472	-	-	-		100	0
			후보선수국내여비	42,840	59,472	59,472	-	-	-	* 숙박비 64,000원 × 18명 × 14일 × 2회 = 32,256,000 * 식비 54,000원 × 18명 × 14일 × 2회 = 27,216,000	100	0
		일반수용비		18,448	20,048	17,048	-	-	3,000		85	15
			훈련복구입비	5,100	9,360	9,360	-	-	-	* 훈련복 160,000원 × 18명 × 2회 = 5,760,000 * 동계피복 200,000원 × 18명 × 1회 = 3,600,000	100	0
			훈련용품구입비	9,000	4,500	4,500	-	-	-	* 훈련장비 150,000원 × 15명 × 2회 = 4,500,000	100	0
			현수막제작비	400	400	400	-	-	-	* 현수막 100,000원 × 2개 × 2회 = 400,000	100	0
			약품구입비	288	288	288	-	-	-	* 약품구입비 8,000원 × 18명 × 2회 = 288,000	100	0
			지도자활동(발굴사업등)비	160	2,000	2,000	-	-	-	* 지도자활동비 = 2,000,000	100	0
			보험·방역비등	500	500	500	-	-	-	* 보험·방역비등 = 500,000	100	0
			후보선수운영비	3,000	3,000	-	-	-	3,000	* 운영비 (복장, 차량유류대, 기타등) = 3,000,000	0	100
		임차비		6,720	5,040	2,520	-	-	2,520		50	50
			차량임차비	6,720	5,040	2,520	-	-	2,520	* 차량임차비 5,000원 × 2대 × 14일 × 2회 × 18명 = 5,040,000	50	50
			시설사용료	-	0	-	-	-	-	* 시설사용료 = -		
	청소년대표훈련비			55,430	72,512	67,232	-	-	5,280		93	7
		인건비		12,500	15,100	15,100	-	-	-		100	0
			전담지도자연구비	4,500	5,500	5,500	-	-	-	* 전담지도자연구비 500,000원 × 11개월 = 5,500,000	100	0
			전문지도자수당	8,000	9,600	9,600	-	-	-	* 지도자(의무포함)수당 100,000원 × 4명 × 24일 = 9,600,000	100	0
		여비		30,210	40,594	40,594	-	-	-1		100	0
			청소년대표국내여비	30,210	40,594	40,594	-	-	0.50	* 숙박비 41,500원 × 19명 × 23박 = 18,135,500 * 식비 48,000원 × 19명 × 24일 = 21,888,000 * 교통비 30,000원 × 19명 × 1회 = 570,000	100	0
		일반수용비		8,920	12,258	9,258	-	-	3,000		76	24
			훈련복구입비	2,850	6,080	6,080	-	-	-	* 훈련복구입비 320,000원 × 19명 = 6,080,000	100	0
			훈련용품구입비	2,250	2,250	2,250	-	-	-	* 훈련용품구입비 150,000원 × 15명 = 2,250,000	100	0
			현수막제작비	200	200	200	-	-	-	* 현수막 100,000원 × 2개 = 200,000	100	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LH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약 품 구 입 비	120	152	152	-	-	-	* 약 품 구 입 비 8,000원 × 19명 = 152,000	100	0
			상 해 보 험 비	380	456	456	-	-	-	* 상 해 보 험 비 1,000원 × 19명 × 24일 = 456,000	100	0
			지 도 자 회 의 비	120	120	120	-	-	-	* 지 도 자 회 의 비 30,000원 × 4명 = 120,000	100	0
			청 소 년 대 표 운 영 비	3,000	3,000	-	-	-	3,000	* 운 영 비 (복장, 차량 유류대, 기타 등) = 3,000,000	0	100
		임 차 비		3,800	4,560	2,280	-	-	2,280		50	50
			차 량 임 차 비	3,800	4,560	2,280	-	-	2,280	* 차 량 임 차 비 5,000원 × 19명 × 24일 × 2대 = 4,560,000	50	50
			시 설 사 용 료	-	0	-	-	-	-	* 시 설 사 용 료		
	꿈 나무 선 수 훈 련 비			91,276	107,900	103,150	-	-	4,750		96	4
		인 건 비		15,700	19,000	19,000	-	-	-		100	0
			전 담 지 도 자 연 구 비	4,500	5,000	5,000	-	-	-	* 전 담 지 도 자 연 구 비 500,000원 × 10개월 = 5,000,000	100	0
			전 문 지 도 자 수 당	11,200	14,000	14,000	-	-	-	* 지 도 자 수 당 100,000원 × 5명 × 14일 × 2회 = 14,000,000	100	0
		여 비		53,280	61,700	61,700	-	-	-		100	0
			꿈 나무 선 수 국 내 여 비	53,280	61,700	61,700	-	-	-	* 숙 박 비 42,000원 × 25명 × 13박 × 2회 = 27,300,000 * 식 비 47,000원 × 25명 × 14일 × 2회 = 32,900,000 * 교 통 비 30,000원 × 25명 × 2회 = 1,500,000	100	0
		일 반 수 용 비		18,936	23,700	20,700	-	-	3,000		87	13
			훈 련 복 구 입 비	7,680	13,000	13,000	-	-	-	* 훈 련 복 구 입 비 160,000원 × 25명 × 2회 = 8,000,000 * 동 계 파 카 구 입 비 200,000원 × 25명 × 1회 = 5,000,000	100	0
			훈 련 용 품 구 입 비	6,000	6,000	6,000	-	-	-	* 훈 련 용 구 비 150,000원 × 20명 × 2회 = 6,000,000	100	0
			현 수 막 제 작 비	400	400	400	-	-	-	* 현 수 막 100,000원 × 2개 × 2회 = 400,000	100	0
			약 품 구 입 비	384	400	400	-	-	-	* 약 품 구 입 비 8,000원 × 25명 × 2회 = 400,000	100	0
			보 험 가 입 비	672	700	700	-	-	-	* 보 험 가 입 비 1,000원 × 25명 × 14일 × 2회 = 700,000	100	0
			교 육 비	800	200	200	-	-	-	* 교 육 비 200,000원 × 1회 = 200,000	100	0
			후 보 선 수 운 영 비	3,000	3,000	-	-	-	3,000	* 운 영 비 (복장, 차량 유류대, 기타 등) = 3,000,000	0	100
		임 차 비		3,360	3,500	1,750	-	-	1,750		50	50
			차 량 임 차 비	3,360	3,500	1,750	-	-	1,750	* 차 량 임 차 비 5,000원 × 25명 × 14일 × 2대 = 3,500,000	50	50
			시 설 사 용 료	-	0	-	-	-	-	* 시 설 사 용 료		
	훈 련 장 관 리 비			174,812	19,432	0	0	0	19,432			
	마 필 관 리 비			155,380	0	-	-	-	-			
		일 반 수 용 비		155,380	0	-	-	-	-			
			사 료 비	83,220	0	-	-	-	-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LH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소 금	1,200	0	-	-	-	-			
			장 제 비	24,960	0	-	-	-	-			
			톱 밥	33,600	0	-	-	-	-			
			마필진료.접종.약품비	4,000	0	-	-	-	-			
			마 분 처 리 비	4,800	0	-	-	-	-			
			용 구 구 입 비	3,000	0	-	-	-	-			
			관 리 원 복 장 비	600	0	-	-	-	-			
	훈 련 차 량 운 영 비			19,432	19,432	-	-	-	19,432		0	100
		차 량 비 등		19,432	19,432	-	-	-	19,432		0	100
			유 류 대	18,432	18,432	-	-	-	18,432	* 유류대(렌탈2대포함) 1,600원 × 120/7.5 × 240일 × 3대 = 18,432,000	0	100
			차 량 수 리 비	1,000	1,000	-	-	-	1,000	* 수 리 비 1,000,000원 × 1대 = 1,000,000	0	100
	회 의 및 교 육 비			95,600	107,280	-	-	-	107,280		0	100
	회 의 비			56,400	56,400	-	-	-	56,400		0	100
		일 반 수 용 비		29,600	29,600	-	-	-	29,600		0	100
			총 회 회 의 비	3,600	3,600	-	-	-	3,600	* 총 회 참 석 비 100,000원 × 18명 × 2회 = 3,600,000	0	100
			이 사 회 회 의 비	6,000	6,000	-	-	-	6,000	* 이 사 회 참 석 비 100,000원 × 20명 × 3회 = 6,000,000	0	100
			각 종 위 원 회 회 의 비	20,000	20,000	-	-	-	20,000	* 각 종 위 원 회 참 석 비 100,000원 × 10명 × 20회 = 20,000,000	0	100
		여 비		26,800	26,800	-	-	-	26,800		0	100
			정 기 총 회 여 비	1,800	1,800	-	-	-	1,800	* 대 의 원 여 비 50,000원 × 18명 × 2회 = 1,800,000	0	100
			이 사 회 여 비	3,000	3,000	-	-	-	3,000	* 이 사 회 여 비 50,000원 × 20명 × 3회 = 3,000,000	0	100
			각 종 위 원 회 여 비	10,000	10,000	-	-	-	10,000	* 위 원 회 여 비 50,000원 × 10명 × 20회 = 10,000,000	0	100
			회 의 식 비	12,000	12,000	-	-	-	12,000	* 각 종 회 의 식 비 30,000원 × 20명 × 20회 = 12,000,000	0	100
	교 육 비			39,200	50,880	-	-	-	50,880		0	100
	(지도자.심판강습 등)	일 반 수 용 비		13,200	13,480	-	-	-	13,480		0	100
			강 사 료	7,200	2,600	-	-	-	2,600	* 국 내 강 사 료 300,000원 × 2명 = 600,000 * 외 부 전 문 강 사 료 1,000,000원 × 2명 = 2,000,000	0	100
			해 외 강 사 료	-	4,200	-	-	-	4,200	* 해 외 강 사 료 USD 500 × 1,400원 × 3명 × 2일 = 4,200,000	0	100
			해 외 강 사 출 장 료	-	1,680	-	-	-	1,680	* 출 장 료 USD 200 × 1,400원 × 3명 × 2일 = 1,680,000	0	100
			임 차 료	6,000	2,000	-	-	-	2,000	* 연 회 장 임 차 료 500,000원 × 4일 = 2,000,000	0	100
			교 육 자 료 제 작	-	3,000	-	-	-	3,000	* 지 도 서 제 작 배 포 15,000원 × 200부 = 3,000,000	0	10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내역 (금액단위 : 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복 리 후 생 비		2,000	2,000	-	-	-	2,000		0	100
			임 . 직 원 교 육 지 원 비	2,000	2,000	-	-	-	2,000	* 임 . 직 원 직 무 교 육 비 = 2,000,000	0	100
		여 비		24,000	35,400	0	0	0	35,400		0	100
			강 습 회 여 비	24,000	35,400	-	-	-	35,400	* 식 대 15,000원 × 70명 × 10식 = 10,500,000 * 숙 박 비 170,000원 × 40실 × 3일 = 20,400,000 * 향 공 료 1,500,000원 × 3명 = 4,500,000	0	100
		육 성 및 포 상 비		185,000	242,800	-	-	-	242,800		0	100
		육 성 지 원 금		107,000	164,800	-	-	-	164,800		0	100
			일 반 수 용 비	32,000	68,800	0	0	0	68,800		0	100
			대 회 출 전 비 지 원	32,000	40,000	-	-	-	40,000	* 대 회 출 전 비 지 원 400,000원 × 25개팀 × 4개 대회 = 40,000,000	0	100
			전 국 소 년 체 전 출 전 비 지 원		28,800	-	-	-	28,800	* 소 년 체 전 출 전 비 지 원 300,000원 × 6명 × 16개 시.도 = 28,800,000	0	100
			민 간 위 탁 사 업 비	75,000	96,000	-	-	-	96,000		0	100
			시 . 도 연 맹 지 원 비	67,000	68,000	-	-	-	68,000	* 시 . 도 연 맹 지 원 4,000,000원 × 16개 시.도연맹 = 64,000,000 * 도 서 지 역 (제 주) 연 맹 추 가 지 원 = 4,000,000	0	100
			산 하 단 체 등 지 원 비	8,000	28,000	-	-	-	28,000	* 산 하 단 체 지 원 4,000,000원 × 2개 학생.실업연맹 = 8,000,000 * 국 군 체 육 부 대 지 원 = 20,000,000	0	100
		포 상 비		78,000	78,000	-	-	-	78,000		0	100
			일 반 수 용 비	4,000	4,000	-	-	-	4,000		0	100
			상 패 제 작 비	4,000	4,000	-	-	-	4,000	* 시 상 비 (상 패 . 상 장) = 4,000,000	0	100
			포 상 금 등	74,000	74,000	-	-	-	74,000		0	100
			공 로 포 상 비	24,000	24,000	-	-	-	24,000	* 최 우 수 선 수 상 1,000,000원 × 1명 = 1,000,000 * 우 수 선 수 상 500,000원 × 6명 = 3,000,000 * 최 우 수 단 체 상 2,000,000원 × 1팀 = 2,000,000 * 우 수 단 체 상 1,000,000원 × 6팀 = 6,000,000 * 발 전 상 1,000,000원 × 3팀 = 3,000,000 * 지 도 자 상 500,000원 × 4명 = 2,000,000 * 심 판 상 500,000원 × 3명 = 1,500,000 * 체 육 장 학 생 500,000원 × 6명 = 3,000,000 * 특 별 상 = 2,000,000 * 우 수 직 원 포 상 비 500,000원 × 1명 = 500,000	0	100
			국 제 대 회 포 상 비	50,000	50,000	-	-	-	50,000	* 국 제 대 회 입 상 포 상 비 = 50,000,000	0	10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홍보 및 전산비			88,000	111,000	-	20,000	-	91,000		18	82
	홍보비			42,000	65,000	-	-	-	65,000		0	100
		일반수용비		32,000	55,000	-	-	-	55,000		0	100
			광고선전비	22,000	45,000	-	-	-	45,000	* 후원물품 및 후원금 수료 (2024년 미지급 15,000천원 포함) = 45,000,000	0	100
			홍보행사비	10,000	10,000	-	-	-	10,000	* 종목홍보행사 = 10,000,000	0	100
			간담회개최비	-	0	-	-	-	-	* 언론.미디어 간담회 =		
		업무추진비		10,000	10,000	-	-	-	10,000		0	100
			사업추진비	10,000	10,000	-	-	-	10,000	* 언론홍보사업추진비 = 10,000,000	0	100
	전산운영			46,000	46,000	-	20,000	-	26,000		43	57
		관리용역비		46,000	46,000	-	20,000	-	26,000		43	57
			홈페이지.경기프로그램관리	40,000	40,000	-	20,000	-	20,000	* 홈페이지 및 경기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 10,000,000 * 경기운영프로그램개선 및 보수 = 30,000,000	50	50
			서버관리비	6,000	6,000	-	-	-	6,000	* 서버관리비(씨엔노마드) 500,000원 × 12월 = 6,000,000	0	100
	비품렌탈			36,400	69,400	-	-	-	69,400		0	100
	비품구입및렌탈			36,400	69,400	-	-	-	69,400		0	100
		일반수용비		3,400	33,400	0	0	0	33,400		0	100
			보안프로그램구매	1,000	1,000	-	-	-	1,000	* 소프트웨어(V3, Adobe Acorobet) = 1,000,000	0	100
			소모성비품구매	2,400	2,400	-	-	-	2,400	* 소모성비품구매 200,000원 × 12개월 = 2,400,000	0	100
			사무실환경개선		30,000	-	-	-	30,000	* 사무처 사무실 이전비 = 30,000,000	0	100
		자산취득비		3,000	6,000	-	-	-	6,000		0	100
			컴퓨터및노트북구입	3,000	6,000	-	-	-	6,000	* 컴퓨터 등 2,000,000원 × 3대 = 6,000,000	0	100
		임차료		30,000	30,000	-	-	-	30,000		0	100
			업무용차량렌탈	18,000	18,000	-	-	-	18,000	* 업무용차량임차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	0	100
			사무기기렌탈	12,000	12,000	-	-	-	12,000	* 사무기기임차비 1,000,000원 × 12개월 = 12,000,000	0	100
국제사업				753,942	734,367	524,670	72,744	-	136,954		81	19
	국제대회비			652,426	576,723	421,528	72,744	0	82,452		86	14
	제1차월드컵 (이집트, 카이로) (2.25. ~ 3.1.)			66,936	0	-	-	-	-			
		일반수용비		2,690	0	-	-	-	-			
			총무비	1,000	0	-	-	-	-			
			간식비	1,690	0	-	-	-	-			
		여비		64,246	0	-	-	-	-			
			항공료	33,150	0	-	-	-	-			
			체재비	31,096	0	-	-	-	-			

과 목				'25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LH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제 2 차 월 드 컵 (헝가리, 부다페스트) (4. 22. - 26.)			70,186	63,426	55,666	5,070	0	2,690		96	4
		일 반 수 용 비		2,690	2,690	-	-	-	2,690		0	100
			총 무 비	1,000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690	1,690	-	-	-	1,690	* 간 식 비 \$ 10 × 13명 × 10일 × 1,300원 = 1,690,000	0	100
		여 비		67,496	60,736	55,666	5,070	0	0		100	0
			항 공 료	36,400	36,400	36,400	-	-	-	* 항 공 료 2,800,000원 × 13명 = 36,400,000	100	0
			체 재 비	31,096	24,336	19,266	5,070	-	-	* 체 재 비 \$ 114 × 13명 × 10일 × 1,300원 = 19,266,000 부 족 분 총 당 \$ 30 × 13명 × 10일 × 1,300원 = 5,070,000	100	0
	제 3 차 월 드 컵 (불가리아, 소피아) (5. 7. - 11.)			66,936	73,566	62,426	8,450	-	2,690		96	4
		일 반 수 용 비		2,690	2,690	-	-	-	2,690		0	100
			총 무 비	1,000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690	1,690	-	-	-	1,690	* 간 식 비 \$ 10 × 13명 × 10일 × 1,300원 = 1,690,000	0	100
		여 비		64,246	70,876	62,426	8,450	-	-		100	0
			항 공 료	33,150	36,400	36,400	-	-	-	* 항 공 료 2,800,000원 × 13명 = 36,400,000	100	0
			체 재 비	31,096	34,476	26,026	8,450	-	-	* 체 재 비 \$ 154 × 13명 × 10일 × 1,300원 = 26,026,000 부 족 분 총 당 \$ 50 × 13명 × 10일 × 1,300원 = 8,450,000	100	0
	제 4 차 월 드 컵			67,456	0	-	-	-	-			
		일 반 수 용 비		2,690	0	-	-	-	-			
			총 무 비	1,000	0	-	-	-	-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		
			간 식 비	1,690	0	-	-	-	-	* 간 식 비 \$ 10 × 13명 × 10일 × 1,300원 = -		
		여 비		64,766	0	-	-	-	-			
			항 공 료	37,050	0	-	-	-	-	* 항 공 료 2,800,000원 × 13명 = -		
			체 재 비	27,716	0	-	-	-	-	* 체 재 비 \$ 114 × 13명 × 10일 × 1,300원 = - * 부 족 분 총 당 \$ 30 × 13명 × 10일 × 1,300원 = -		
	월 드 컵 결 승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7. 4 - 6)			36,467	66,806	55,666	8,450	-	2,690		96	4
		일 반 수 용 비		1,728	2,690	-	-	-	2,690		0	100
			총 무 비	1,000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728	1,690	-	-	-	1,690	* 간 식 비 \$ 10 × 13명 × 10일 × 1,300원 = 1,690,000	0	100
		여 비		34,739	64,116	55,666	8,450	-	-		100	0
			항 공 료	22,800	36,400	36,400	-	-	-	* 항 공 료 2,800,000원 × 13명 = 36,400,000	100	0
			체 재 비	11,939	27,716	19,266	8,450	-	-	* 체 재 비 \$ 154 × 13명 × 10일 × 1,300원 = 19,266,000 부 족 분 총 당 \$ 50 × 13명 × 10일 × 1,300원 = 8,450,000	100	0
	릴레이 세계선수권대회			-	40,579	35,211	3,640	-	1,728		96	4

과 목				'25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LH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7. 8. - 13.)	일 반 수 용 비			-	1,728	-	-	-	1,728		0	100
		총 무 비		-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	728	-	-	-	728	* 간 식 비 \$ 10 × 8명 × 7일 × 1,300원 = 728,000	0	100
	여 비			-	38,851	35,211	3,640	-	0		100	0
		항 공 료		-	24,000	24,000	-	-	-	* 항 공 료 3,000,000원 × 8명 = 24,000,000	100	0
		체 재 비		-	14,851	11,211	3,640	-	0	* 체 재 비 \$154 × 8명 × 7일 × 1,300원 = 11,211,200 부 족 분 총 당 \$ 50 × 8명 × 7일 × 1,300원 = 3,640,000	100	0
2025 세계선수권대회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8. 27. - 31.)			43,796	75,636	68,266	-	-	7,370		90	10	
일 반 수 용 비			2,300	2,300	-	-	-	2,300		0	100	
	총 무 비		1,000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300	1,300	-	-	-	1,300	* 간 식 비 \$ 10 × 10명 × 10일 × 1,300원 = 1,300,000	0	100	
	여 비			41,496	73,336	68,266	-	-	5,070		93	7
		항 공 료		10,400	49,000	49,000	-	-	-	* 항 공 료 3,500,000원 × 14명 = 49,000,000	100	0
체 재 비			31,096	24,336	19,266	-	-	5,070	* 체 재 비 \$114 × 13명 × 10일 × 1,300원 = 19,266,000 * 부 족 분 총 당 \$ 30 × 13명 × 10일 × 1,300원 = 5,070,000	79	21	
2024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 (8. 9. ~ 8.11.)			98,483	0	-	-	-	-				
일 반 수 용 비			2,265	0	-	-	-	-				
	총 무 비		1,000	0	-	-	-	-				
	간 식 비		1,265	0	-	-	-	-				
	여 비			96,218	0	-	-	-	-			
		항 공 료		60,000	0	-	-	-	-			
체 재 비			36,218	0	-	-	-	-				
2025 세계청소년 (U21) 선수권대회 (헝가리, 세케스케헤르바) (6.25 - 29)			50,940	58,970	16,800	15,740	-	26,430		55	45	
일 반 수 용 비			2,040	2,430	-	-	-	2,430		0	100	
	총 무 비		1,000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040	1,430	-	-	-	1,430	* 간 식 비 \$ 10 × 11명 × 10일 × 1,300원 = 1,430,000	0	100	
	여 비			48,900	56,540	16,800	15,740	-	24,000		58	42
		항 공 료		25,500	30,800	16,800	-	-	14,000	* 항공료 (공단지원비) 2,800,000원 × 6명 = 16,800,000 항공료 (자체지원비) 2,800,000원 × 5명 = 14,000,000	55	45
체 재 비			23,400	25,740	-	15,740	-	10,000	* 체 재 비 \$180 × 11명 × 10일 × 1,300원 = 25,740,000	61	39	
2025 세계청소년 (U19) 선수권대회 (리투아니아, 드루스키닌카이) (8.21. ~ 8.24.)			52,340	69,535	45,508	-	-	24,028		65	35	
일 반 수 용 비			3,300	4,535	508	-	-	4,028		11	89	
	총 무 비		2,000	2,000	254	-	-	1,746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2,000,000	13	87	
	간 식 비		1,300	2,535	254	-	-	2,282	* 간 식 비 \$ 15 × 11명 × 13일 × 1,300원 = 2,788,500	10	90	

과 목				'25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 고 보 조 금 등			LH	내 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여	비	49,040	65,000	45,000	-	-	20,000		69	31
			항 공 료	28,500	33,000	25,000	-	-	8,000	* 항 공 료 3,000,000원 × 11명 = 33,000,000	76	24
			체 재 비	20,540	32,000	20,000	-	-	12,000	* 체 재 비 (후 보) = 32,000,000	63	38
	2025 세 계 청 소 년 (U17) 선 수 권 대 회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7.17. ~ 7.20.)			55,270	66,000	55,566	-	-	10,434		84	16
		일	반 수 용 비	4,600	5,000	2,366	-	-	2,634		47	53
			총 무 비	2,000	2,000	-	-	-	2,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2,000,000	0	100
			간 식 비	2,600	3,000	2,366	-	-	634	* 간 식 비 = 3,000,000	79	21
		여	비	50,670	61,000	53,200	-	-	7,800		87	13
			항 공 료	30,000	36,000	30,000	-	-	6,000	* 항 공 료 3,000,000원 × 12명 = 36,000,000	83	17
			체 재 비	20,670	25,000	23,200	-	-	1,800	* 체 재 비 (청 대) = 25,000,000	93	7
	2025 아사아선수권대회 (일본, 안조) (11.9. - 11.16.)				32,411	26,419	3,744	-	2,248		93	7
		일	반 수 용 비		2,248	-	-	-	2,248		0	100
			총 무 비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248	-	-	-	1,248	* 간 식 비 \$ 10 × 12명 × 8일 × 1,300원 = 1,248,000	0	100
		여	비		30,163	26,419	3,744	-	0		100	0
			항 공 료		7,200	7,200	-	-	-	* 항 공 료 (공 단 지 원 비) 600,000원 × 12명 = 7,200,000	100	0
			체 재 비		22,963	19,219	3,744	-	0	* 체 재 비 \$154 × 12명 × 8일 × 1,300원 = 19,219,200 체 제 비 (부 족 분 총 당) \$ 30 × 12명 × 8일 × 1,300원 = 3,744,000	100	0
	2025 U19 아사아선수권 대회 (일본, 안조) (11.9. - 11.16.)				29,794	-	27,650	-	2,144		93	7
		일	반 수 용 비		2,144	-	-	-	2,144		0	100
			총 무 비		1,000	-	-	-	1,000	* 총 무 비 (여권발급, 보험, 공항세, 격려비 등) = 1,000,000	0	100
			간 식 비		1,144	-	-	-	1,144	* 간 식 비 \$ 10 × 11명 × 8일 × 1,300원 = 1,144,000	0	100
		여	비		27,650	-	27,650	-	-0		100	0
			항 공 료		6,600	-	6,600	-	-	* 항 공 료 (공 단 지 원 비) 600,000원 × 11명 = 6,600,000	100	0
			체 재 비		21,050	-	21,050	-	0	* 체 재 비 \$154 × 11명 × 8일 × 1,300원 = 21,049,600	100	0
	2025 세 계 비 아 틀 트라이애슬선수권대회			43,616	0	-	-	-	-			
		일	반 수 용 비	4,600	0	-	-	-	-			
			총 무 비	2,000	0	-	-	-	-			
			간 식 비	2,600	0	-	-	-	-			
		여	비	39,016	0	-	-	-	-			
			항 공 료	20,400	0	-	-	-	-			
			체 재 비	18,616	0	-	-	-	-			
	국 외 훈 련 비			54,600	54,600	36,400	-	-	18,200		67	33
		여	비	54,600	54,600	36,400	-	-	18,200		67	33
			항 공 료	0	0	-	-	-	-	1. 공 단 지 원 (44,000천원)	0	0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항목 공 료 2,000,000원 × 22명 = -		
			체 재 비	54,600	54,600	36,400	-	-	18,200	* 체 재 비 (국 가 대 표) \$ 140 × 10명 × 20일 × 1,300원 = 36,400,000	67	33
										2. L H		
										* 체 재 비 \$ 140 × 10일 × 10명 × 1,300원 = 18,200,000		
	개도국 초청 사업			-	53,788	53,788	-	-	-			
		영 비		-	8,788	8,788	-	-	-			
			일 반 수 용 비	-	1,320	1,320	-	-	-	* 통 역 수 당 120,000원×11일 = 1,320,000		
			임 차 료	-	7,468	7,468	-	-	-	* 버 스 및 차 량 임 차 서울-해남, 서울시내, 공항이동 = 7,468,000		
		여 비		-	45,000	45,000	-	-	-			
			항 공 료	-	26,000	26,000	-	-	-	* 항 공 료 1,300,000원 × 20명 = 26,000,000		
			체 재 비	-	19,000	19,000	-	-	-	* 체 재 비 95,000원 × 20명 × 10일 = 19,000,000		
			환 송 비	-	600	-	-	-	600	* 환 송 비 30,000원 × 20명 = 600,000		
	국 제 활 동 비			46,916	49,256	12,954	0	0	36,302	공단지원비 12,954천원	26	74
		여 비		41,916	44,256	12,954	0	0	31,302	1.체육기금(국제업무전문인력), U17 세계선수권대회(4,806,600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9	71
			항 공 료	27,000	21,050	9,100	0	0	11,950	* 항 공 료 3,100,000원 × 1명 = 3,100,000	43	57
			숙 박 비	9,079	13,286	2,110	0	0	11,176	* 숙 박 비 \$ 137 × 5일 × 1명 × 1,400원 = 959,000	16	84
			식 비	4,147	7,232	1,156	0	0	6,076	* 식 비 \$ 59 × 6일 × 1명 × 1,400원 = 495,600	16	84
			일 비	1,690	2,688	588	0	0	2,100	* 일 비 \$ 30 × 6일 × 1명 × 1,400원 = 252,000	22	78
										1.체육기금(국제업무전문인력), 국제연맹총회(4,073,800원) <프랑스, 니스>		
										* 항 공 료 3,000,000원 × 1명 = 3,000,000		
										* 숙 박 비 \$ 137 × 3일 × 1명 × 1,400원 = 575,400		
										* 식 비 \$ 59 × 4일 × 1명 × 1,400원 = 330,400		
										* 일 비 \$ 30 × 4일 × 1명 × 1,400원 = 168,000		
										1.체육기금(국제회의참가), 국제연맹총회(4,073,800원) <프랑스, 니스>		
										* 항 공 료 3,000,000원 × 1명 = 3,000,000		
										* 숙 박 비 \$ 137 × 3일 × 1명 × 1,400원 = 575,400		
										* 식 비 \$ 59 × 4일 × 1명 × 1,400원 = 330,400		
										* 일 비 \$ 30 × 4일 × 1명 × 1,400원 = 168,000		
										2. L H (12,261,700원)		
										△ 회 장 - 집행위원회 (11,931,300원)_프랑스, 니스		
										* 항 공 료 8,350,000원 × 1회 = 8,350,000		
										* 숙 박 비 \$389 × 4일 × 1명 × 1,400원 × 1회 = 2,178,400		
										* 식 비 \$117 × 6일 × 1명 × 1,400원 × 1회 = 982,800		
										* 일 비 \$ 50 × 6일 × 1명 × 1,400원 × 1회 = 420,000		
										△ 임.직 원 - 집행위원회 (771,400원)_프랑스, 니스		

과 목				'25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부	세 목	24년예산	계	국고보조금등			LH	내역 (금액단위 : 원)	국고	LH
						체육기금	기타수익금	자체기금				
										* 항공료 3,000,000원 × 1회 - 국고 3,000,000원 = -		
										* 숙박비 \$160 × 4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575,400원 = 320,600		
										* 식비 \$ 78 × 6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330,400원 = 324,800		
										* 일반비 \$ 35 × 6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168,000원 = 126,000		
										3. L H (12,261,700원)		
										△ 회 장 - 아시아연맹 집행위원회 (11,931,300원)_일본		
										* 항공료 1,500,000원 × 1회 = 1,500,000		
										* 숙박비 \$389 × 4일 × 1명 × 1,400원 × 1회 = 2,178,400		
										* 식비 \$160 × 5일 × 1명 × 1,400원 × 1회 = 1,120,000		
										* 일반비 \$ 50 × 5일 × 1명 × 1,400원 × 1회 = 350,000		
										△ 임원 - 아시아연맹 집행위원회 (771,400원)_프랑스, 니스		
										* 항공료 700,000원 × 1회 = 700,000		
										* 숙박비 \$282 × 6일 × 1명 × 1,400원 × 1회 = 2,368,800		
										* 식비 \$133 × 7일 × 1명 × 1,400원 × 1회 = 1,303,400		
										* 일반비 \$ 40 × 7일 × 1명 × 1,400원 × 1회 = 392,000		
										△ 임.직원 - 집행위원회 (441,000원)_일본		
										* 항공료 700,000원 × 2명 = 1,400,000		
										* 숙박비 \$223 × 6일 × 2명 × 1,400원 × 1회 = 3,746,400		
										* 식비 \$107 × 7일 × 2명 × 1,400원 × 1회 = 2,097,200		
										* 일반비 \$ 35 × 7일 × 2명 × 1,400원 × 1회 = 686,000		
										△ 직원 - U17 세계선수권대회 (757,400원)_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항공료 3,100,000원 × 1회 - 국고 3,100,000원 = -		
										* 숙박비 \$137 × 5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575,400원 = 383,600		
										* 식비 \$ 59 × 7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330,400원 = 247,800		
										* 일반비 \$ 30 × 7일 × 1명 × 1,400원 × 1회 - 국고 168,000원 = 126,000		
			일반수용비	5,000	5,000	0	0	0	5,000		0	100
			홍보물제작등	5,000	5,000	0	0	0	5,000	* 기념품 = 5,000,000	0	10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국외정보수집비	0	0	0	0	0	0	* 국외정보수집비 =		
아시아연맹지원금	운영.지원비			50,000	50,000	-	-	-	50,000		0	100
		운영비		25,000	25,000	-	-	-	25,000		0	100
		아시아연맹활동비		25,000	25,000	-	-	-	25,000	* 아시아연맹활동비 = 25,000,000	0	100
		지원비		25,000	25,000	-	-	-	25,000		0	100
		아시아연맹발전기금		25,000	25,000	-	-	-	25,000	* 아시아연맹발전기금 = 25,000,000	0	100
예비비	운영비			20,000	20,000	-	-	20,000	-		100	0
		운영비		20,000	20,000	0	0	20,000	0		100	0
		운영비		20,000	20,000	-	-	20,000	-	* 예비비 등 = 20,000,000	100	0

기 금 적 립 현 황

- ◆. 재정자립기금적립현황
- ◆. 연맹발전기금적립현황
- ◆. 퇴 직 적 립 금 현 황

재정자립기금적립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자	
재정자립 기금 적립금	체육기금	1,791,458,384	-	1,791,458,384	54,227,479	54,227,479	1,791,458,384
	법인기금	1,051,177,736	-	1,051,177,736	32,102,386	32,102,386	1,051,177,736
	계	2,842,636,120	0	2,842,636,120	86,329,865	86,329,865	2,842,636,120

- 적립실태

현재 재정자립기금 적립금은 체육기금 및 법인기금으로 수협 및 외환은행에 예치, 관리운영하고 있음.

연맹발전기금적립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 자	
연맹발전기금 적립	자체적립기금	220,000,000	- 219,999,925	75	220,049,448	49,448	75
	계	220,000,000	- 219,999,925	75	220,049,448	49,448	75

- 적립실태
기업자유예금으로 KEB하나에 예치운영하고 있음.

퇴직적립금현황

(2024. 12. 31일 현재)

(단위 : 원)

항 목	내 역	2023 이월적립금 (A)	2024 적립금				계 (A + B)
			계 (B)	적립 및 지출			
				적립	지출	이 자	
퇴직 적립금	자 체 적 립 금	572,314,890	- 59,369,772	20,734,830	96,619,114	16,514,512	512,945,118
	재정자립과실금	-	-	-	-	-	-
	체육기금적립금	-	-	-	-	-	-
	계	572,314,890	- 59,369,772	20,734,830	96,619,114	16,514,512	512,945,118

- 적립실태

하나은행 퇴직연금으로 예치, 운영하고있음.